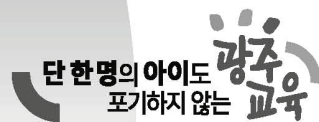


2024년도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목 차

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5
II. 2024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9
III.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5
1. 세입예산 편성 기준	17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20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28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41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48
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50
IV.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기준	53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55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56
3. 예산 편성지침 기준 경비	63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77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79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82
3.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168
VI. 예산의 성과계획서	199
VII.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5
VIII.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259
IX. 예산 편성 참고 자료	307



# I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1. 예산의 개념
2. 예산편성 근거
3. 예산의 주요 내용
4. 예산편성 절차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 1 예산의 개념

-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 2 예산편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3 예산의 주요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규정
- **(세입·세출예산)** 1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과 금액
-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의 내역과 금액
- **(명시이월비)**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 4 예산편성 절차

①	<b>교육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편성기준 시달 통보(8월)</li> <li>■ 「지방재정법」 제38조</li> </ul>
②	<b>시·도교육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편성(9월~10월)</li> <li>■ 「지방재정법」 제36조</li> </ul>
③	<b>시·도교육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11. 10.까지)</li> <li>■ 「지방자치법」 제142조</li> </ul>
④	<b>지방의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심의·의결(12. 15.까지)</li> <li>■ 예산 확정 이송(의결 후 3일 이내, 12. 18.까지)</li> <li>■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9조</li> </ul>
⑤	<b>시·도교육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예산확정 보고 및 고시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이후 지체없이)</li> <li>■ 「지방자치법」 제149조</li> </ul>



# II



## 2024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운용여건
2. 광주교육재정 여건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 방향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II

## 2024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 1 지방교육재정 운용여건

## □ 세입 여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22년~'23년간 세입 여건은 양호하였으나 경제 침체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우려

- (이전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은 지속 증가 전망이긴 하나, 2023년 상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 우려
- (자체수입) '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미할 전망
- (지방채) 그간 세입 여건 양호에 따른 기금 적립액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는 미발행이 예상되나 일시적인 세수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 차입 가능성도 상존
  - \* 교부금 부담 지방채는 학교 신설 사업에 한정하여 발행, 그 외 사업별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채를 발행·승인[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20.12.1)]
- (순세계잉여금) '22년 추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전년 대비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세출 여건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증가 전망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물건비)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 증가를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증가 전망
- (이전지출)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의 감소 요인은 있으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자본지출) 내진보강·석면제거, 급식실 안전 확보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과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환경개선 추진으로 증가 전망
- (상환지출)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였으나 그린스마트스쿨 BTL 임대료 지출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전출금 등)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교육소외계층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 지출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재난 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내부거래) 재정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기금 적립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 기금 전출금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한 내부거래가 향후 유지될 전망

## 2

## 광주교육재정 여건

### □ 세입 여건

- (이전수입)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전수입 감소 전망
- (자체수입) '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지방채)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조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 세출 여건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기본운영비)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설 사업비, 그린스마트스쿨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수요로 시설사업비 증가 전망
- (예비비 등)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 방향

#### □ 「2024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포용교육 추진)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 실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실현
- (미래교육 선도)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구축 및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입 확대 유도

#### □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계획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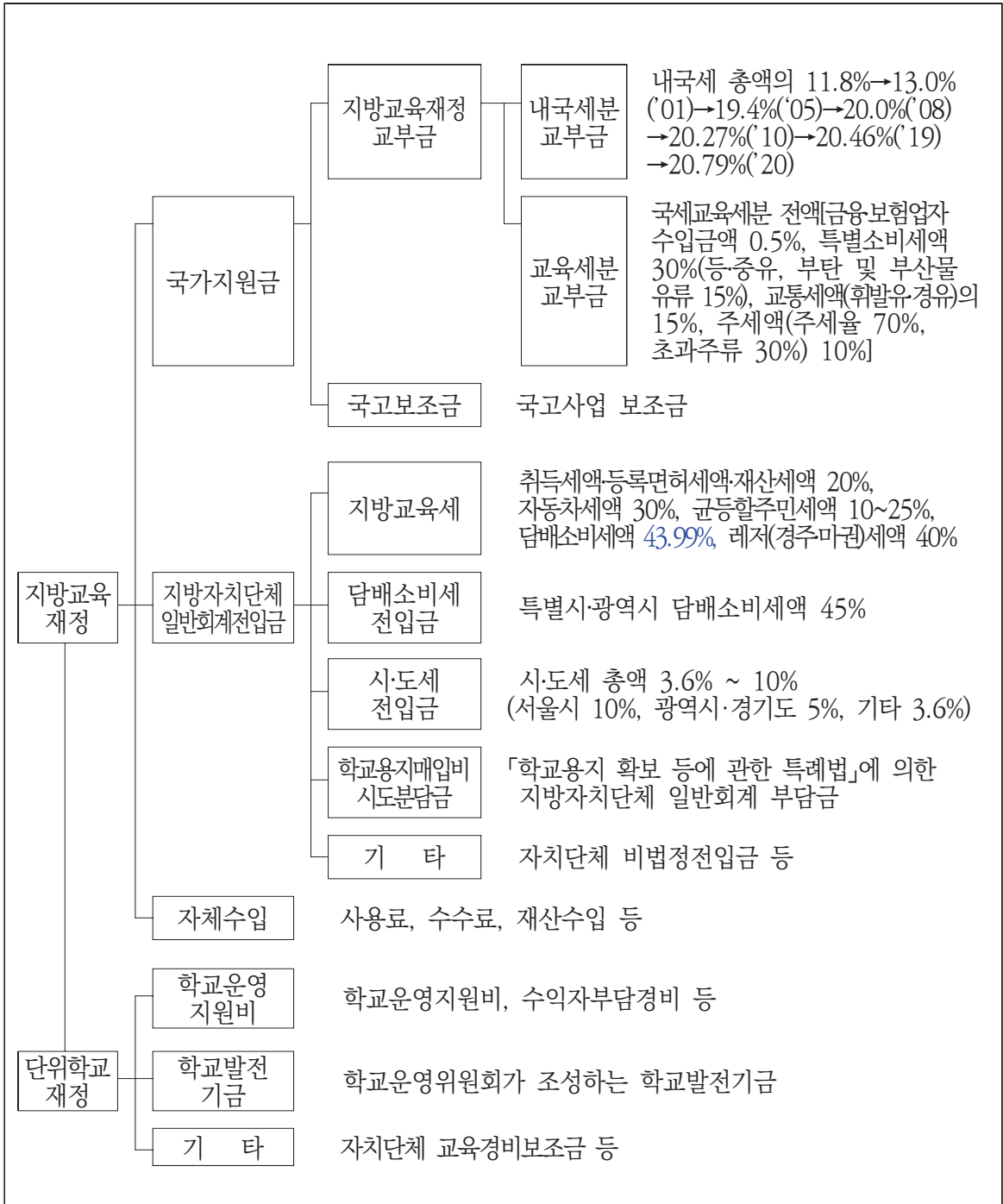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활용도 제고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화

#### □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참고**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 III



##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 세입예산 편성 기준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 III

##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 1

#### 세입예산 편성 기준

- ❖ 2024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반영
- ❖ 각종 자료에 의하여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지방재정법 제36조)

### 가

#### 중앙정부이전수입

- 재원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times 97\% + \text{교육세 일부}^*$ 
    - \* 국세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times 3\%$
  -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금액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편성: 국가에서 교육청에 내시 또는 교부한 금액

### 나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재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시·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 ※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제주도) 100분의 5, (세종, 도지역) 1,000분의 36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교육급여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비법정이전수입: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기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편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금액으로 편성

## 다 기타이전수입

- 재원: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 편성: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기부 또는 지원하는 금액
  - 민간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이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 라 자체수입

- 재원: 공유재산·물품 사용·임대료 및 매각대금, 이자 수입 등
- 편성
  - 사용·임대료: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연간 사용수익허가(임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빠짐없이 반영
  - 자산매각수입: 연간 공유재산·물품 처분계획에 따라 대상 자산에 대한 매각 금액을 합리적인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반영
  - 이자수입 등: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특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 마 지방채

- 편성: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 매년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바 순세계잉여금

- 편성: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하여 반영

## 사 내부거래

- 편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반영

##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 ❖ 「2024 광주교육」 계획과 연계한 정책 중심의 계획성 있는 자원 반영
- ❖ 관행주의·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 자원 반영
- ❖ 일회성·행사성·낭비성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편성
- ❖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한 적법한 예산 편성
  - 근거 없는 수당, 사업비 등 임의 편성 금지
  - 사전 절차 이행사항 준수
  -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예산과목 설정 준수
- ❖ 집행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관리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 가 경상사업비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편성
  - 사업추진업무추진비성 협의회비의 일반운영비(210) 편성 금지
- (특정업무경비)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되,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학교기본운영비) 제반여건, 수년간 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
  - 공공요금, 보험료 등 경직성경비는 필수 반영
  - 학교 전기요금 등은 우선 반영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기관(부서)별 자원 배분 범위 내 예산편성
- (채무상환) 2024년도에 상환해야 할 BTL 원리금 편성

### 나 교육사업비

- (신규사업)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출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 마련

- **(계속사업)** 원점(zero-base)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 재검토

## 다 학교회계전출금

- 학교로 교부될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재정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 편성
- 학교 공통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최대한 총액 교부(목적지정 경비 편성 최소화 강구)
  - ※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및 소액경비는 가능한 학교운영비로 편성

## 라 시설사업비

- **(계속비 편성)**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계속비 제도 적극 활용
  -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당해연도에는 집행 가능 금액만 편성
  -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 금지
-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 편성
  -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 최소화
  - 낙찰차액은 추경예산에 필요사업으로 반영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
- **(설계공모예산)** 자체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건축 관련 설계공모예산은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 필요 시 중앙투자심사 전에 편성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비용으로 심사수당, 운영비, 공모비용 보상금 등 편성
- **(사전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사전기획” 비용 편성 (※ 420-01목 기본조사설계비-사전조사비용 통계목 편성)

## 마 정보화사업비

### ○ (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 (일반 원칙)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의 적기 추진

-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보화예산은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 불가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나,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에 사용 가능

### ○ (편성)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총소요액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예산 편성

※ 총소요액: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3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

### ○ (검토 사항)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운영·유지관리비용 절감액 내에서 충당하도록 노력
-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바 지방보조금사업비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개념)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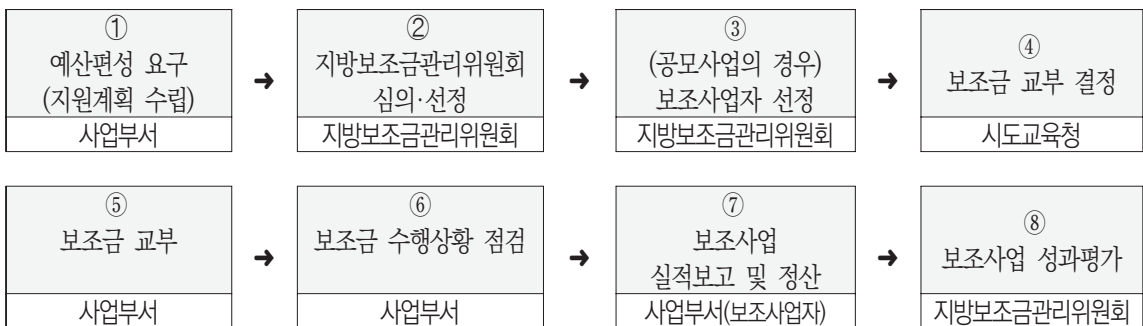
### ○ (분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구 분	내 용	세출목
민간보조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14)
자치단체보조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2)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법인·사학경영자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시설 사업 지원금	사립학교시설지원(620-11)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 ○ (보조금 업무 흐름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 **(보조금 지원 원칙)**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청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 예산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편성-집행-결산 전 단계)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등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모 등 사전 절차 준수 철저

\* 관행적·반복적 사업 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등

-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과 함께,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가능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삭감 또는 통폐합 추진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근절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24.1월 개통 예정) 운영 등을 통해 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운영

※ 지방보조금 관리는 「지방보조금법」, 우리 교육청의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우리 교육청의 「지방 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을 따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 사 민간위탁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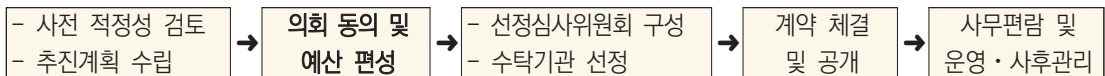
### ○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 (민간위탁의 기준) 교육감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 (절차) 신규위탁 또는 의회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된 민간위탁사무



### ○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 시 활용

#### [유사개념]

구분	민간위탁사업비	시도분담금
위탁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편성목	민간위탁금(320-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330-05)

## 아 의무지출

### ○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범위)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

- 국고보조사업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가지출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 재량지출: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의무지출 외의 지출
- **(편성)** 의무지출은 지출과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 전액을 편성

## 자 예비비

- **(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 **(편성)**
  -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불가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차 성과계획서 작성

-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화
- **(작성대상)**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 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사업비
- **(작성방법)** 재정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Ⅵ.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 카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44조의2제1항
  -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화
- (작성대상)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23~'27)\*,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부 장관이 정한 사업, 교육청 자체선정사업 등의 세부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 (작성방법)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작성서식 참조

## 타 국고보조사업비

- (근거) 「지방재정법」 제23조, 제45조
- 교육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세세부사업과 1:1(1개의 국고보조사업 : 1개의 세세부사업)로 맵핑하여 보조금 신청 및 관리
  - ※ 1. 국고보조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 및 국고보조 사업관리를 수행해야 함
  - 2.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세세부사업이 없거나, 이미 세세부사업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맵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세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국고보조사업과 맵핑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성립전 집행 가능

###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가. 법령 사항 반영 및 의회 등의 시정 요구사항 개선 추진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반영해야 할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또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 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설정 준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54호, 2023. 8. 31.)」 준수  
 - 고통회계 예산편성 과목 위배시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감점지표로 적용

#### 1) 세입예산 과목 구분 유의사항

##### ○ 금고약정사업비 등 일반재원 기타협력사업비(16103목) 편성

- (현황)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교육사랑카드 적립 협력사업비 등 일반 재원을 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정산재원 성격의 “기타지원금” 목에 편성
- (편성방안) 일반재원인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등은 “기타협력사업비 (16103)” 세입과목으로 편성

##### ○ 국고·지방보조금 등 정산재원에 대한 지난연도(결산 후 반납된 학교회계반납금 수입, 누리과정집행잔액 등) 정산분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목) 편성

- (현황) 결산서 반영 시점 이후, 학교회계 등 회계연도 차이에 따른 국고·지방 보조금 등 정산재원에 대한 반납금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반재원인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수입(27204)” 또는 “그외수입(27203)”으로 편성

※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유아특별회계, 공공단체 지원금 등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의 집행잔액은, 결산시 “보조금사용잔액(41200항)”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학교회계의 회계(3월~익년 2월)연도가 불일치하여, 결산 시점 경과 후 정산재원에 대한 반납금 수입이 다수 발생하여 잉여금 규모, 일반재원 산정 등 불합리한 결과 초래

- **(편성방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시점 경과 후 발생한 정산재원인 국고·지방보조금 등 지난연도 반납금 수입은 새로 신설된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 세입과목으로 편성

※ 사업담당자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유아특별회계, 공공단체 지원금 등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은 예산편성·집행시, 정산·결산시 일반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단, 반납금수입 내에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등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의 다소(多少) 등으로 판단하여 더 많은 재원이 포함돼 있는 세입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운영

### ○ 보조금사용잔액(41200항) 세입 관리 철저

- **(현황)** 세출의 ‘제지출금등 - 반환금 및 기타’(710-02)의 국가시도 등 정산반납금액을 세입의 ‘보조금사용잔액’(41200)과 맞추지 않고 ‘순세계잉여금’(41100)으로 편성
- **(편성방안)**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보조금반환금의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운영\*하고, 전전년도 등 지난년도 반환금의 경우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과 맞춰서 운영\*\*(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반환금 등은 제지출금등 세부사업 내에 별도로 편성)

\* 예) 세입(국고보조금사용잔액 41201목): A〇〇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000천원  
 세출(제지출금등 - 반환금및기타 710-02목): A〇〇국고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1,000천원

\*\* 예) 세입(보조금등반납금수입 27205목): B〇〇국고보조사업 〇〇년도 집행잔액 100천원  
 세출(제지출금등 - 반환금및기타 710-02목): B〇〇국고보조사업 〇〇년도 정산 반환금 100천원

### ○ 기부금 관리 철저

- **(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는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으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제5조제2항에 해당하면 접수 가능
- **(편성방안)**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법률에 예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부금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집행

## 2)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유의사항

### ○ 기금회계의 예치금은 재무활동(정책사업) 내 예치금(세부사업)으로 편성

- (현황) 기금회계를 위한 예치금 세부사업 설정예시가 없어 '예비비및기타' 하위에 예치금을 세부사업으로 설정·운영
- (편성방안) 기금회계의 예치금은 '예비비및기타'가 아닌 '보전지출'의 성격으로 재무활동(정책사업) 내 예치금(세부사업)으로 편성

### ○ 학교운영비지원(단위사업) 사업에 목적 지정 경비 편성 지양

- (현황) 공립학교에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기본경비 사업이나, 목적사업비(620-03) 또는 사업부서의 목적 지정 예산을 편성
  - (편성방안) 학교운영비지원에는 목적 지정 사업비를 지양하고,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 편성
- ※ 학교운영비지원 외 사업수행을 위해 편성된 학교운영비(620-02)는 목적사업비(620-03)로 편성
- ※ 인건비지원(62001)의 경우 성질별 분류 중 인건비 관리 참고

### ○ 운영비재정결함지원(세부사업)에 목적 지정 경비 편성 지양

- (현황) 사립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사업(공립학교 대상의 '학교운영비 지원'과 유사)이나, 목적 지정 사업을 편성
- (편성방안) 해당 사업에는 목적사업비(620-10) 또는 사업부서의 목적 지정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관련 사업 예산의 목적사업비로 편성

### ○ 기관운영(정책사업) 목적을 고려한 편성 필요

- (현황) 기관운영(정책사업)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시설유지 관리 경비임에도, 격려·조직운영·유관기관 협조·현안협의 등 통상적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기관운영(정책사업) 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
  - (편성방안)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사업 추진 부서의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 기관운영(정책)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를 편성하거나, 기관운영(정책) 외 사업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5002) 편성 오류 발생

○ 학교시설여건개선(정책사업) 및 시설사업관리(단위사업) 구분

- (현황) 학교시설여건개선에는 자산취득비,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는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편성
- (편성방안) 각종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모니터단 포함) 수당 등 당해 시설사업 추진시 직접 수반되는 경비는 학교시설여건개선(정책사업) 내 당해 시설사업에 편성(설계비·시설부대비 내에서 집행하는 경비 포함)하고, 각종 시설사업 관련 협의회(워크숍) 경비, 시설사업 절차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 등 경비, 연수 및 평가 경비 등은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시설사업관리(단위사업)에 편성·운영 원칙임. 단, 시설사업 예산편성 시 시설사업 추진에 부수되는 각종 제반 경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운영할 경우 자율적 편성 가능

○ 유아교육(단위사업) 내 사립유치원지원(세부사업) 구분

- (편성방안)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의 경우 사립유치원지원(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용 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 사업 편성 가능

○ 교육복지(정책사업) 내 학생복지비 편성

- (현황) '22년부터 교육복지지원(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개선\*하여 교육복지(정책사업)로 정비

\* 8개 단위사업/15개 세부사업 → 4개 단위사업/14개 세부사업

- (편성방안) 전국·공통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비의 경우는 학교급식운영(세부사업) 으로 편성하고, 그 외 특정 대상 또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비는 교육복지(정책사업)에 편성

※ 예) 수련활동·수학여행 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과 같이 특정 대상을 정하거나 1인당 단가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복지비는 교육복지 편성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일괄 편성을 위한 단일 세부사업 관리

- (현황)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21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운용 중
- (편성방안)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일괄 편성

※ 단,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단위사업) 예산 관련 세목 준수

- **(현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관련 세목\*으로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사학기관관리, 유아교육지원 등 타 사업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세목으로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다른 세목을 해당 사업에 편성

\*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01),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

- **(편성방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세목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만 편성(타 사업 편성 금지)

### ○ 총액 편성 지양

- **(현황)**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위한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외 목적 미지정 총액경비는 편성 불가하나, 일부 교육청에서 현안 또는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등을 총액으로 편성
- **(편성방안)**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없는 포괄적 총액(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유의사항

### 가) 교육운영비

#### ○ 교육운영비(210-12)에 교육회의·행사·대회출전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비변상 매식비, 교통·숙박비 등 편성

- **(현황)** 학생들의 기타 교육활동에 대한 매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경비를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전금(310목, 민간행사지원금)에서 편성
- **(편성방안)** 학생들의 기타 교육활동은 교육비특별회계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경비로 교육운영비(210-12세목, 기타교육운영비)로 분리하여 편성

### 나) 급량비

- **(기준)**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현황)**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나, 워크숍·연찬회·회의·연수 등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급량비로 집행



○ **(편성방안)** 아래의 경우에만 급량비로 편성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는 8,000원 이하 단가를, 숙박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편성(간식 미인정)

① 선박(원양어선 승선실습 등)에서의 단체급식

② 시험업무(임용·승진 시험, 수능, 검정고시 등) 추진에 따른 단체급식\*

\* 급식시설이 구비된 곳에서 시험업무 추진에 따른 단체급식을 제공할 경우를 의미하며, 급식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에는 특근매식비(210-05)로 편성

③ 교육훈련기관의 단체급식\*

\* 급식시설이 구비된 수련원·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제공하는 급식

④ ①~③의 경우에 따른 숙박비\*

\* 이를 제외한 연수·워크숍·연찬회 등 숙박이 불가피한 행사의 숙박비 경우, 행사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210-07) 내 시설임차료’로 편성·집행하거나 개인 여비로 지급

☞ (인정) ①시험업무(공무원공무직 임용, 승진시험, 기간제 인력풀교장공모·교장연수 교감연수대상수석교사영재학생 선발, 수능시험·검정고시·학력평가) 관련 급량비, ②연수원·교육원 연수 급량비 ③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 및 소모성 도구 구입비 ※ 단, 식비 및 숙박비만 인정

☞ (미인정) ①인사업무(전보 등), ②비상훈련, ③연수대상선정(학습연구년제, 파견교사), ④워크숍협의회, ⑤학생급량비, ⑥급량비(8,000원) 및 숙박비(여비규정 내 상한선 (70,000원)을 초과 편성한 경우 지적) 단가 초과, ⑦간식비

※ [참고1] '2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시 급량비 편성 오류 사례 및 검토의견

1) 인사업무를 위한 집중 작업(회의) 경비를 급량비로 편성

☞ 작업(회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

2) 을지태극연습 등의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를 급량비로 편성

☞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각종 훈련 참여 직원에 대한 매식비는 특근매식비 편성

3) 간식비 편성

☞ 급량비 편성 대상 업무라 할지라도 간식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편성

[참고2] 학생·학부모 대상 실비변상의 매식비, 교통비 및 숙박비 편성 사례

☞ (학생) 기타교육운영비(210-12세목) 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

☞ (학부모 등 민간인) 민간행사지원금(310-01세목) 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

## 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성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성 업무추진비로 구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50-02): ‘(단위사업)기본운영비’에만 편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단위사업)기본운영비’에만 편성
  -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 ‘(단위사업)기본운영비’ 이외의 사업에 편성
    - ※ 운영비(210목) 내 홍보용, 방문자(내빈 포함)용 또는 선물용품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업무추진비 총량제에 따라 편성 지양
    - ※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 홍보용 물품은 팸플릿, 홍보용 간판, 알림판을 의미하고, 행사 운용수용비는 행사 진행 상 필요한 물품(체험용품, 문구용품 등) 구입에 한함. 그 외 홍보용, 방문자(내빈 포함)용 기념품 또는 선물용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운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3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목에 포함돼 있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원가목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세목으로 분리·신설하여 ‘직원사기 진작 업무추진경비’로 사용

## 라) 보전금

-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철저
  - (편성방안)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절차 준수\*** 및 **예산편성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그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과목(사회보장적수혜금, 보상금, 전출금, 운영비 등)이 무엇이든 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협의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함

## 마) 전출금등

- **국립학교 학생을 지원할 경우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610-03)로 편성**
  - (현황) 관할 시도 내 소재하는 국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감염병예방 긴급지원, 수능시험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편성과목이 부재하여 일반회계전출금 등에서 편성

- (편성방안) 신설된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610-03)’로 편성

※ 시·도 내의 국립학교 학생을 시·도 내 형평성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임(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님을 유의)

○ 일반회계전출금(610-01), 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편성 철저

- (현황) 일반회계전출금 및 기타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설정 사례가 ‘전출하는 자금’으로 간단히 표현돼 있어 예산편성 시 혼란 초래

- (편성방안) ‘전출’의 의미는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에 따라 대가 없이 당연히 무상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설정하여 예산편성시 ‘전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려하도록 구체화

※ 사례) ①교육비특별회계 →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무상 전출 / ②교육비특별회계 → 국가 일반회계로 무상 전출 / ③A교육비특별회계 → B교육비특별회계로 무상 전출

바) 학교회계전출금

○ 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 편성

○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610-01)에 편성

○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등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는 ‘사립학교근로자 인건비지원(620-16)’에 편성

- 교과교실강사, 원어민교사, 상담강사 등 사립학교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비를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사) 위탁사업비

○ 교육청에서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사업비

예산과목	과 목 설 정
기타제세 (210-02)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등 -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 성격의 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특정한 시설 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및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관리용역비 (210-13-47)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비용

○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비

예산과목	과 목 설 정	
일반용역비 (210-13-48)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업무나 부수적인 일부 사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경비	
민간위탁금 (320-02)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비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30-05, 06)	(330-05) 경상적 위탁사업비 (330-06)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공기관에 위탁수행하는 시도분담금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성격에 따라 경상·자본을 구분하여 편성

아)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관리 철저

- (현황) 「지방출자출연법」 개정('20.6.3.시행)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고시 및 관리 추진
- (편성방안)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출연기관은 교육부를 통해 고시하고 출연금을 지원하며, 위탁사업비를 통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최근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 출연금 지원하였을 경우 교육부 고시 필요

자) 기타사항

- (강사수당) 공무원 및 민간인 신분의 외래강사 수당, 강사실비 경비는 운영수당 (210-06)에 통합 편성·집행
- (국외여비) 교육훈련 목적의 국외훈련이 아닌 국외 현장체험, 문화교류 등의 여비는 '국외여비(220-02)'로 편성(국외훈련여비(220-04)로 편성 불가)
- (교원연구비)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는 수당은 교원연구비 세목(240-04) 사용 금지
- (인건비) 반드시 직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 공무직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일괄 편성  
\* 단,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급식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급식비는 ‘급식지원’ 단위사업에 편성
  - \* 급식 지원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 경비는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
- (학교운영비성 사업) 목적 지정 경비 편성 지양
  - (세부사업)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620-02)’만 편성
  - (세부사업)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만 편성

※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에 학교회계 기본적교육활동비·목적사업비 비율 및 학교 회계 이월·불용률 지표 반영

- (반환금) ‘반환금 및 기타(710-02)’는 반드시 ‘(세부사업)제지출금등’에 편성
- 국가에 부담해야 할 경비, 교육감선거관리경비는 기타부담금 (330-08) 과목에 편성
- ‘문화재발굴경비’ 및 ‘시설안전진단및정밀점검경비’를 시설비(420-03) 내 원가목으로 각각 분리하여 시설사업 예산내역 구체화
- 시설부대비(420-05) 내 사례에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학부모 참여감독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하여 시설부대비 편성·집행 사례 확대
- 기금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치금(520-01)을 ‘예비비및기타’ 목그룹에서 보전지출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환지출’ 목그룹으로 이동
- 기금전출금(820-01) 사례에 ‘교육청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 표현하여 학교안전공제기금 등 다양한 기금운영 사례가 포함되도록 설정

#### 4) 기타

- 계획적인 중장기 교육재정 운용
  - 중장기·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 수요에 대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관리
    - \* (예시) 3개년 이상 중장기 재정 수요가 전망되고 일정 규모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리스트 별도 관리 및 검토
  - 중기계획에 대한 교육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의 구성·운영 내실화
- 국정과제 및 교육분야 국가시책사업 우선 투자

○ **개인명의 휴대폰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 지양**

- 공적업무수행을 이유로 개인명의 휴대폰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 지양. 부득이 하게 지원할 경우 사용목적, 업무내용, 지원사유, 지원대상 및 월지급액 등에 대해 교육감 지침 마련 후 편성

○ **다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철저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 편성 제도 적극 활용\***

\* '22. 7월 국회 예결위 결산 정보화사업비 관련 지적사항

**다. '세세부사업명' 설정 기준 준수**

- 세세부사업 설정 기준을 숙지하여 해당 사업에 맞는 기준 설정
- 세세부사업의 신규·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후 재설정  
※ 세세부사업이 잘못 설정될 경우 예산서 편제의 통일성 저해

**라. 세입·세출예산 단위와 수량 등 산출기초 계상 철저**

- **(편성 단위)**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 계상  
※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는 서식 임의 수정 금지
- **(계량 단위)**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 적용
- **(금액 단위)** 1,000원 미만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함
- **(산출 기초)** 산출기초 순서, 기준단가에 따라 정확하게 계상  
- 교원퇴직수당 부담금은 반드시 정년·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 2개로 구분하여 예산서에 산출기초와 금액을 표기

**마. 세출예산 학교급·기관급 구분 철저**

- 세출예산 편성 시 반드시 학교급·기관급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학교급·기관급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지정하면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에 문제 발생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 등으로 구분
- 세출예산의 학교(기관)급 구분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수혜를 받는 학교(기관)를 기준으로 구분

- (예시) 본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지출할 경우 학교급 구분은 ‘초등학교’로 지정

#### 바.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최소화

-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 각종 행사 후 내부직원 간 관계적인 간담회비 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관리(예산 규모의 0.12%) 대상
  - 업무추진비 한도를 줄이기 위해 예산과목 위반 시 교육부 주관 ‘재정분석’에서 감점 처리
  - ‘21년부터 교육부훈령 [별표 4]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변경에 따라 워크숍·연수 등에 따른 행사성 경비와 기관방문 기념품 등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의무편성
  - 불요불급한 행사, 기념품제작 등을 제한하며, 과목을 위반하는 행위 일체 금지

#### 사.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 아. BTL 신설학교 정부지급금 관리

- BTL 사업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의 청구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무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정하고, 임대료 지급 내역 등 누적관리 철저
- 기본운영비를 학교회계로 배정 시 BTL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운영비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업무 철저

#### 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월 관리

- **(편성방안)** 장기계속사업 또는 명시이월이 아닌 계속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 감축 필요

#### 차. 교육청 집행사업 확대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예정인 사업 중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청의 집행사업 확대 추진

-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예시) : 공기질 측정, 저수조 청소, 방역 소독, 작업환경 측정,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무상교과서 및 도서지원, 저소득층자녀 PC지원 사업 등

- (감사원 지적사항) 아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일선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닌 해당 사업 예산에 편성·집행

〈감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20. 5월) 中〉

앞으로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학교시설비 사업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전출한 학교로부터 세입·세출외 계좌로 학교시설비를 되돌려받아 지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 가 예산 배정

-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개 념) 일정기간(월별·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배정단위)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은 예산부서, 목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 나 예산 변경

- (원 칙)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함.

#### 예산집행 원칙

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집행 잔액의 타 용도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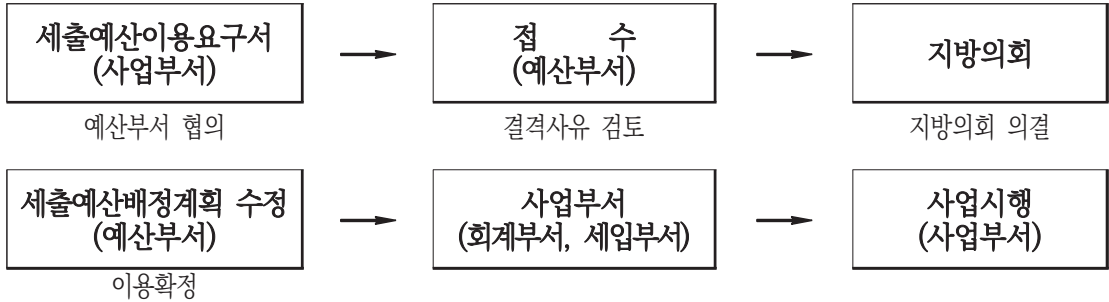
- (문제점)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 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발생
- (예 외)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 확보

#### 1) 예산의 이용

- (개 념)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방 법)**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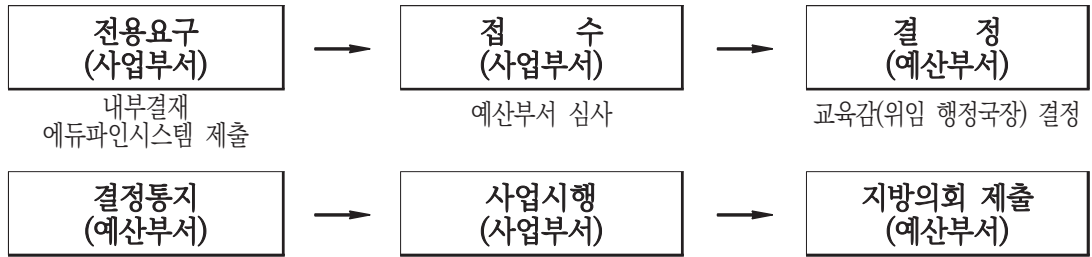


이용절차 설명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단위: 정책사업 간</li> <li>- 이용방법: 사업부서가 정책사업 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li> <li>- 이용요구: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li> <li>- 이용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li> </ul>	

2) 예산의 전용

- **(개 념)**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범 위)** 기관별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방 법)**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의회 제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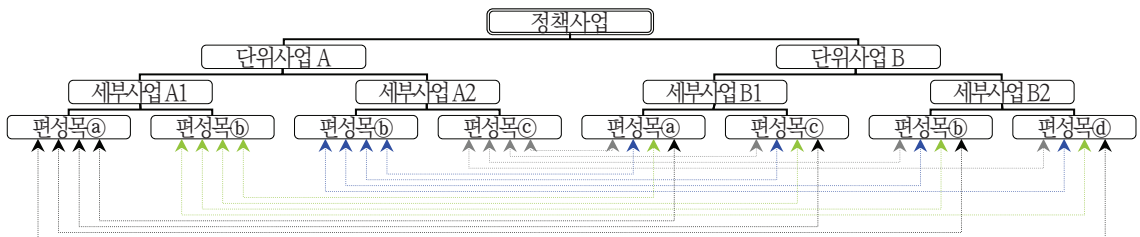
**전용 제한**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용제한 목
  -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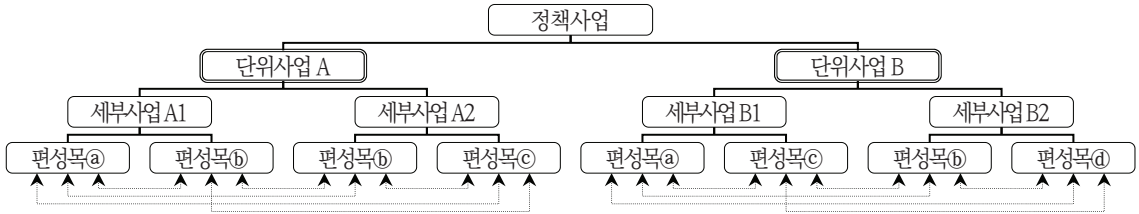
▶ 인건비(총액인건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420)  
 ▶ 상환금(510) ※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230)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을 할 수 없음
- 운용기준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의 전용과 세부사업 신설을 통한 전용은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20)의 경우 동일 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원가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간 전용(편성목=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간 전용(편성목=목)



3) 예산의 변경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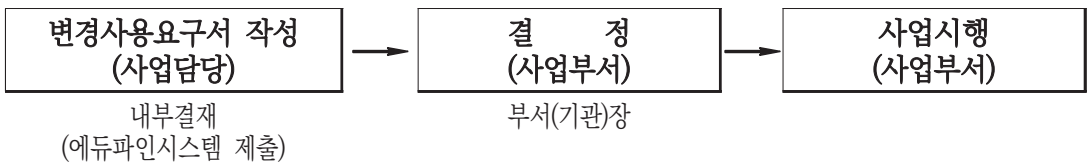
○ (개 념)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 간 예산을 부서(기관)장 책임하에 상호용통하여 사용하는 것

※ 동일 세부사업 내 목을 달리하여 변경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변경사용 제한	<b>[교육부]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후 재변경 사용 불가, 전용 제한 목은 변경사용 또한 제한</li> </ul>	

○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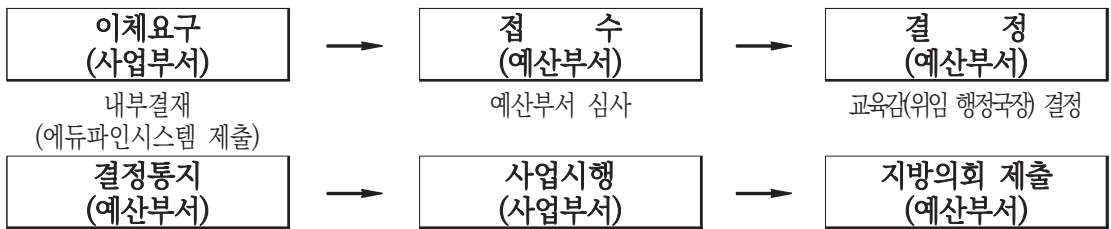
- 사업담당자는 변경요구서를 작성, 부서(기관)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 에듀파인시스템의 변경사용요구서를 작성·확정 후 집행
- ⇒ 변경사용 절차 없이 품의 시 원가통계목 변경 처리 금지



4) 예산의 이체

- (개 념)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원칙)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체 제외) 기관(부서) 명칭만 변경, 본청 동일 부서 내 담당(팀) 간, 지원청·직속기관 내 부서 간 통합, 폐지, 신설 및 업무 이관은 이체 대상 아님
- (유의 사항)
  - 이체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 및 감액이 가능(감액시 재이체 처리)
    - ※ 단, 이체받은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시에는 이체한 부서에서 감액처리를 해야 하므로 감액 지양
  - 이체는 예산을 직무 권한의 변동에 따라 소관만 옮겨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예산과목을 임의로 신설 또는 삭제할 수 없음
- (의회 제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 (절차)



**【세출예산 구조별 예산변경 구분】**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명	원가통계목			산출기초	예산액
							목	세목	통계목		
예산 구조	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 및운영	1.000사업 가.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210	01	01	0000원×0회=	000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처리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 [참고]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성격	과목간 과부족의 융통 (예산의 목적외 집행)		세목간 과부족의 융통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조례·제정·개폐시
범위	정책사업 간	목 간	세목간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은 범위
요구권자	교육감	부서(기관)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교육감 (위임 행정국장)	부서(기관)의 장	교육감 (위임 행정국장)
	사전승인	분기별 제출		분기별 제출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다 예산의 이월

- **(개 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관 리)**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1) 명시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개 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요 건)**
  -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 원인행위 당시 완료 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 2) 사고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요 건)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3) 계속비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개 념)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 (요 건)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 연장 가능

### 【 예산의 이월 구분 】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의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이월 가능
사업진행 기간	2년, 사고이월시 3년	2년	5년, 사고이월시 6년
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전용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라 이·불용액 최소화

- (관리목표 설정) 매 회계연도마다 이·불용액 목표 자체 설정하여 관리
- (관행 개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을 확대하여 이·불용액 감축 추진
  - 명시이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감축
  - 사고이월: 긴급입찰 및 선금제도를 활용하여 사고이월 최소화
- (집행 중간점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및 향후 지출계획 등을 점검하여 이·불용 예산액을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여 재정운용 효율화
- (집행 관리) 수시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재정집행점검단 운영 등으로 집행상황 점검·지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 추진

##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 가. 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설정 개편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경비 설명을 각급 학교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교직원 복지비 항목에 “교직원(교장 포함)에 대한 생일기념 소액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정비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학교장 학급가산금을 인상하고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하도록 기준 정비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주기 단축

### 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개편

- 명예사서 삭제, 디지털 용어 정비 등 세부사업 설명 정비



#### 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개편

- 교원학술연구지원비 원가목을 “교직원학술연구지원비”로 변경
- 보상금 세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으로 변경하고 설정 일부 삭제
- 보전금 목에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세목·원가목·설정 신설
- 사회복지무요원보수 원가목을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세목 신설
- 민간행사지원금 원가목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및학자금”, “민간인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원가목을 포괄하는 “기타보전금” 세목 신설
- 기타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원가목의 설정 “급량비”를 “매식비”로 변경하고 “매식비 단가 적용” 삭제
- 민간경상보조 세목,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보조” 원가목 분리·신설
- 민간자본보조 세목,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보조” 원가목 분리·신설
- 자치단체간부담금 세목 “조례, 협약 등의” 설명 추가
-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세목, “국립학교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원가목 분리·신설
- 목적사업비 세목,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원가목 분리·신설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세목, “사립학교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원가목 분리·신설

#### 라. 예산 편제 개편

-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정책분야·정책과제명 반영

## 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항 목	구 분	현행('23년도)	개정('24년도)	
기타직무 수행경비 (추가)	관재활동비	세부기준 부재	·관재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원 ※ <b>특정업무경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b>	
	감사활동비	세부기준 부재	·감사담당공무원 (일)10,000원	
특정업무 경비	회계	·사도교육청 복식부기, 사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 (5급 이하) 60,000원	·시교육청 복식부기, 시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과장 80,000원 ·시교육청 복식부기, 시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 (5급 이하) 60,000원	
	여론 동향	·사도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5급 이하) 100,000원	·시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4급 이하) 100,000원	
일반 강의 강사수당		5. 교육연수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로 할증 자체 기준을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5.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생해양 수련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체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로 할증 자체 기 준을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숙박비	숙박비	·50,000원	·70,000원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 이하		



항 목	구 분	현행('23년도)				개정('24년도)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40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6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기타	버스(대형)	일	85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p>※ 화물차, 승용차는 삭제(거래실례가 적음)</p>																						
	시설임대	<table border="1"> <tr> <td>교실</td> <td>실</td> <td>30,000</td> <td colspan="2"></td> </tr> <tr> <td>시청각실</td> <td>실</td> <td>100,000</td> <td colspan="2"></td> </tr> <tr> <td>체육관 강당 운동장</td> <td>일</td> <td>100,000</td> <td colspan="2"></td> </tr> </table>				교실	실	30,000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p>삭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1] 사용료에 시설별, 시간별 사용료 단가가 명시)</p>	
교실	실	30,000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4 19,000원</li> <li>·B4 3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4 23,000원</li> <li>·B4 37,000원</li> </ul>																
원고료	도서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한도액 300,000원 (권당, 1인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한도액 500,000원 (권당, 1인 기준)</li> </ul>																
기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수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수당</li> <li>·4)위원회 참석 수당 뒤에 배치</li> </ul>																
보상금 및 포상금	포상금 세부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 삭제</li> </ul>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카메라 500,000원</li> <li>·실물화상기 1,10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삭제</li> </ul>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비 단가 조정</li> </ul>																



# IV



##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기준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3. 예산 편성지침 기준 경비



# IV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기준

##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 가 인건비

구분	지급 근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2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 나 여비

구분	지급 근거
국내여비 (220-0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5, 별표 8 등
국외여비 (220-0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2 등

##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훈령 제411호, 2022.8.11. 일부개정]
- ❖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2020.12.1. 일부개정]

### 가 예비비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 나 일시차입금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총액의 10%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 다 지방채

한도액	비 고
자율발행 가능지수 × 경상일반재원 × 100/100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적용

※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 ((\text{일반채무}^* + \text{BTL임대료} + \text{우발채무 총액의 50\%}) / \text{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이자제외)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 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 기준

※ 경상일반재원 = 교부금 + 법정이전수입 + 자체수입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



## 라 업무추진비

###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

#### □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 □ 기준액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서울·경기	예산규모의 0.09%이내
기타 시도	예산규모의 0.12%이내
제주	예산규모의 0.31%이내

###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01)

□ 경비성격: 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기준액**

(단위: 천원)

구 분	본 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비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 장	감사관	교육장	국 장	기관장	
기준액	96,800	43,500	10,800	5,400	24,000	4,000	5,000	연간
인 원	1명	1명	3명	1명	2명	4명	12명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03)

□ **경비성격**: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단합행사·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기준액** (1인당 연간 금액)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주 1) 기준액: 훈령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 적용

2) 적용대상: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 단,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30의3제6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의 교직원복지비 항목에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소액경비(소액의 생일기념 케이크, 상품권 등)”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적용기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 10. 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4) 부서운영경비 (210-15-02)

□ 경비성격: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 부서 간담회·협의회 등 식대·간식비, 회의비, 접대용품 등 부서운영 제잡비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운영경비(210-15-02)에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210) 예산 변경사용 금지

□ 기준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 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 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000원 추가

※ 교육감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 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5)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50-02)

□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900 (1,025)	10,800 (12,300)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서울특별시부교육감)	700 (900)	8,400 (10,800)	
	1 급	기 관 장	750	9,000
		보 조 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 조 기관	600	7,200
	4 급	기 관 장	400	4,800
		보 조 기관	350	4,200
복 수 직		150	1,800	
5 급	시·도교육청(본청)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 조 기관	100	1,200	
6·7급	기 관 장	100	1,200	
	보 조 기관	5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 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 1. 가산금: 각급 학교의 학교장은 학급가산금을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4,000원 가산(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2. 시·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3급 이상 실·국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 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 마 특정업무경비

- **근 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
-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기준액**
  - 지역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전년도 포함 최근 3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
  -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외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업무경비 상호 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이므로 ‘(단위사업)기본운영비’ 등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경비성격:**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편성·집행기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편성 최소화

기준액(비율)	비 고
본예산액의 0.1% 이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

- 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구분·집행(경상비는 10% 초과 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및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집행 불가
-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해당 사업에 예산편성 후 집행

※ 감사원 지적사항 :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 과다 등

### 3 예산 편성지침 기준 경비

- ❖ 본 기준 경비는 예산편성 단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포괄적 기준임
-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기준 준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2023. 1. 1. 시행)
  -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2023. 1. 3.)

#### 가 인건비

##### □ 공무원 인건비

- 정·현원, 호봉승급, 처우개선을 및 부담금 인상률 등에 대한 예측도를 제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 ※ 지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편성
- 명예퇴직수당을 적극 반영하여 인건비 절감 노력

##### □ 계약제 교원 인건비

-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는 지난 연도 채용실적 및 증가추세 등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을 예측하여 예산 편성

#####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노동정책과’ 등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 6개월 이상 채용 예정자: 교육공무직원 정수에 반영된 자에 한함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 처우개선 계획 등에 근거하여 직종별 인건비 단가를 산출하되, 기본급·각종 수당 등 산출기초 작성 시 임의기준 적용 금지
- 일상적인 행정정보조원 일용직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양

## 나 기관운영비

### □ 기관운영비 총액 산정

- 산정기준: 각 기관(부서)별 최근 자료 재원 분석 결과, 기관별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기관운영비 구성
  -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특근매식비, 특별실 경비
  - 기관공통운영비: 기관 공통운영비(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예산편성: 기관(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예산 편성

### □ 세부항목별 편성 기준

#### ○ 일반수용비

- 각 기관(부서)별 3년간 재원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1인당 편성 기준액 적용

구 분	1인당 연간 기준액	편성액
본청 각 부서	750,000원	기관(부서)별 정원 × 1인당 기준액
교육지원청	750,000원	
직속기관	650,000원	

#### ○ 특별실 경비: 기관 부속실 운영 경비

구 분	연간 기준액	편성부서
본청	교육감실	총무과
	부교육감실	
	국장실	
교육지원청	교육장실	미래교육기획과, 유초등교육과, 행정예산과 행정지원과 (국장실: 통합 운영)
	국장실	
직속기관	기관장실	500,000원

#### ○ 여비 및 특근매식비

- 여비 및 특근매식비는 기관(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되, 기타 세부사업에 별도 편성 금지
  - ▶ 장기 파견·연수 관련 등 사업성 경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도 근거가 없을 경우 별도 임의 편성 금지



○ 기관공통운영비

- 편성기관: 본청(공보담당관, 총무과),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직속기관
- 경비성격: 단위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 기본경비

※ 기관공통운영비 편성 범위

-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의 운영비(210목)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 피복비(210-03), 운영수당(210-06), 임차료(210-07), 연료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차량선박비(210-10), 용역사업비(210-13), 기타일반수용비(210-15)
- 본청 운영비(210) 중 직원수첩, 일람표, 의전행사, 친선체육대회, 동호회 및 연구회 모임, 행사지원비 등
  - 일반수용비(210-01)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시설장비유지비(210-09), 용역사업비(210-13) 등 편성 금지

**다** 특정업무경비

(단위: 월, 원)

구 분	지급 대상	지급액
감사	· 시교육청 감사담당관	100,000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80,000
학생수용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00,000
예산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50,000
평생교육 (학원)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교원·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단체	· 시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80,000
	· 시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회계	· 시교육청 복식부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과장	80,000
	· 시교육청 복식부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 (5급 이하)	60,000
여론·동향	· 시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4급 이하)	100,000
법무	· 시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80,000
	· 시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 라 기타직무수행경비

구분	항목	단위	금액	비고
기타직무수행 경비	· 감사활동비 - 감사담당공무원	일	10,00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관재활동비 - 5급이하	월	60,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 특정업무경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마 주요 경비 단가

### 1) 일반수용비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원)	비 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23,000		
		B4	상자	37,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ℓ 까지)		14,687		
		초과료(100ℓ 당)		1,617		
	신문광고료	1단 1cm		77,000	VAT 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70,000	※ 예산편성목 - 급량비성: 숙박비(210-04) - 그외: 입차료(210-07)로 편성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회	8,000		
급량비	급량비	시험업무, 교육훈련기관 등의 단체급식성 급량비	식	8,000	※ 예산편성목 - 급량비(210-04)로 편성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로 편성	
입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40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6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기타	버스(대형)	일	85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2) 여비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
여비	관내	여비편성 기준	회	20,000원
	관외		회	130,000원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외빈초청 여비	항공임	회	초청 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야	주빈 250,000원 수행원 75,000원
		식비	식	주빈 50,000원 수행원 30,000원

3) 일·숙직 수당

- 경비성격: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기준액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일·숙직비	일직비	1일	60,000	운영수당
	숙직비	1야	60,000	

4) 위원회 참석 수당

-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 기준액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 · 초과: 50,000	초과는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5) 기타 수당 (심의·지도·편집수당 포함)

구분	단가(원)	비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 래 인	· 기본 80,000 · 초과 30,000	기본: 3시간 기준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의 경우 1일 2회 초과 가능
	교수 전문가		
	공무원, 교육공무직	· 기본 50,000 · 초과 20,000	

## 6) 일반 강의 강사수당

- 경비성격: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직무교육 등 강사수당
- 기준액

구분	대상	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 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5급 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 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 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 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 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 보조 제외)	기본 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 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그룹)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초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3. 강사수당 구분별 대상에 전·현직 직급·경력자 포함
  4.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5.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체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할증 자체 기준을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 7) 원고료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고료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시간당 4매 이내]	14,000
	파워포인트	○ 면당 [시간당 8면 이내]	7,000
	도서발행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지급한도액 500,000원(권당, 1인 기준)]	1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 매	40,000
		○ 표지	80,000

-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원고료 항목·구분 간 중복지급 불가

## 8) 제작료 및 출연료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녹음 제작	○ 10분 [40매]	100,000
콘텐츠 제작	○ 10분 [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영상 등 출연료	○ 편당 한도	30,000

- 주)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 9)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단가(원)
출제비	객관식	소속직원(채용 등)	문제당 10,000
		외부전문가(채용 등)	문제당 30,000
		기타(연수운영 등)	문제당 3,500
	주 관 식	과목당	50,000
채점비	객 관 식	10문제당	11
	주관식(기본)	10부까지	40,000
	주관식(초과)	부당	1,000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50,000
문제편집, 편찬비		일당	30,000
시험감독(관리)비 (일당)	평일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이상	80,000
		8시간 초과	100,000
	휴일	4시간 미만	80,000
		4시간 이상	100,000
		8시간 초과	120,000
면접·실기채점비(일당)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이상	80,000
합숙비(보안수행비)*		기준액	50,000

- 주) 1. 합숙비(보안수행비)는 연속 12시간 이상 감금상태에서 문제출제, 선정, 편집·편찬, 관리 등을 담당할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기준액에 곱하여 지급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별도 단가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예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3.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교육감 결재를 받은 경우 허용

## 10) 각종 연구모임 및 동호회 지원비 기준

구 분	단가(원)	비 고
연구 동아리	3,000,000	동아리 10명 기준
교직원 동호회	2,000,000	동호회 10명 기준
학생 동아리	1,500,000	동아리 20명 기준
학부모 동아리	1,000,000	동아리 10명 기준

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혼합 구성된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소요경비를 적절히 판단하여 제시된 기준 경비 중 선택 적용

## 11) 보상금 및 포상금

## - 지급단가

세 목	구 분	단 가	비 고
보상금 (310-01)	민간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8,000원	1박 2일 이상 워크숍 등은 10,000원 적용 가능
	민간행사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민간행사숙박비		
포상금 (310-03)	기타 포상금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학교 단위 포상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 포상금 세부 지급기준

-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급 가능
- 선심성·행사성·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음
- 격려금, 위문간담회 경비, 협의회 등 업무추진비용 경비의 보상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 금지
- 기관 포상은 계획수립 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비교육적 집행 지양

## 12) 통·번역료

구 분	지급 기준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13) 자산취득비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사무용책상	편수	개	225,000	TV	50~56" LED	대	1,950,000
	양수	개	300,000		32" LED	대	690,000
컴퓨터책상	800×600×720	개	25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회의용책상	1,200×800×720	개	125,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사무용의자	오피스	개	16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회의용의자	회의실용	개	50,000	플로터	914mm기준	대	5,0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모사전송기	사무용	대	500,000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캐비닛		개	34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이동형과일서랍		개	120,000	냉장고	250L이상	대	400,000
태블릿PC		대	700,000	청소기	건습식	대	28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문서세단기	280mm이상	대	800,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제본천공기	자동,1200매이상	대	1,000,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프린터	잉크젯A4	대	300,000				
	레이저A4, 흑백	대	420,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레이저A3	대	700,000				

※ 예시기준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바 시설비**

1)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단위: m<sup>2</sup>, 천원)

구 분	단위	단가	
보통교실(초등1학년)	m <sup>2</sup>	2,614	
보통교실	m <sup>2</sup>	2,108	
특별교실	m <sup>2</sup>	2,108	
시청각실	m <sup>2</sup>	2,108	
도 서 실	m <sup>2</sup>	2,507	
상 담 실	m <sup>2</sup>	2,108	
관 리 실	m <sup>2</sup>	2,108	
보건위생 및 편의실	m <sup>2</sup>	2,108	
교재연구실	m <sup>2</sup>	2,108	
화 장 실	m <sup>2</sup>	2,701	
문서고, 등사실	m <sup>2</sup>	2,108	
통 제 실	m <sup>2</sup>	2,108	
창 고	m <sup>2</sup>	2,108	
강 당	m <sup>2</sup>	2,433	
급식시설	식당	m <sup>2</sup>	1,970
	조리실	m <sup>2</sup>	3,656
수배전실	m <sup>2</sup>	2,108	
기계실 및 물탱크실	m <sup>2</sup>	2,108	
계 단 실	m <sup>2</sup>	1,297	
현관 및 필로티	m <sup>2</sup>	1,041	
기초파일	교	600,000	
토목공사비	m <sup>2</sup>	12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교	90,000	
LED조명시설	교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교	800,000	
조경시설	m <sup>2</sup>	25	
장애인용승강기(4층 이하)	개소	235,000	
장애인용승강기(5층 이상)	개소	280,000	
VE검토 용역비	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녹색건축 인증비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설계비			

## 2)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	150,000	포장 시설		㎡	150,000
이중창보수 (복도포함, 4개소)		실	20,600,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 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	목재마루 (전기포함)	실	20,300,000	우천로		㎡	510,000
	비닐바닥재 (쉬트, 타일)	실	11,200,000	운동장		㎡	65,000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전면리모델링, 공기순환기, 냉난방기 포함)		㎡	2,860,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90㎡)		실	54,00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90㎡)	최상층	실	9,200,000	조경석		㎡	470,000
	기준층	실	5,100,000	옹벽		㎡	430,000
	무석면텍스 철거 (천장틀 포함)	실	1,900,000	담장	신설	m	450,000
			철거 후 신설		m	590,000	
지붕방수 (90㎡, 도막방수 기준)		실	15,0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32,000,000
내부 도장(친환경, 90㎡)		실	1,5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외부 도장		㎡	20,000	교실 조도개선		실	2,500,000
외벽 교체(준불연단열재) 외단열시스템과 강판마감 2:8비율(90㎡, 단열재교체포함) -측벽 별도		실	19,500,000	교실 조도개선 (배관, 배선, 교체포함)		실	4,1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650,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		개소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물탱크 교체		톤	1,500,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폼칠 2회, 창호주위 실란트 교체)		실	1,30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7,300,000
석면텍스 철거 (90㎡, 청소/이사/폐석면처리/ 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급수배관 교체		m	221,000
교실안전간간 설치 (스텐, 복도포함)		실	1,3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300,000
※ 90㎡: 복도 포함 면적							

## 사 토 지

### 1)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 2022. 1. 21.)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0.8배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1.2배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0.8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0.8	69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0.8	1,14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0.8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0.8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0.8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0.8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0.8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1.2
1조원 초과	245,516,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0.8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1.2

## 아 기 타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종전 기준, 별도 단가 기준, 실거래가 등에 따른다.





---

##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3.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 V

##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8.1.] [교육부령 제275호, 2022.8.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 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 칙** 〈제275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8. 31.] [교육부훈령 제454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4호, 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제3조 관련)

###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①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단,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 ② 기준액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 서울·경기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제주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 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단합행사·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②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 단,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30의3제6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의 교직원복지비 항목에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소액경비(소액의 생일기념 케이크, 상품권 등)”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10.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기 관 장	900	10,800	
			(1,025)	(12,300)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서울특별시부교육감)	부 기 관 장	700	8,400	
			(900)	(10,800)	
		1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750	9,000
				700	8,400
		2·3급	기 관 장 보조기관	650	7,800
				600	7,200
		4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400	4,800
				350	4,200
		5 급	시·도교육청(본청) 과 장	350	4,200
				기 관 장	150
보조기관	100			1,200	
6·7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교장은 학급가산금을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4,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2) 시·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 4. 부서운영경비

-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 간담회·협의회 등 식대·간식비, 회의비, 접대용품 등 부서운영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10.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5. 특정업무경비

### 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② 기준액

-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전년도 포함 최근 3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 업무 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11103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증액교부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1400	특별회계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난연도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나"목에 의한 지방교육세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난연도담배소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난연도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1단계 재정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7호 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2단계 재정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 시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시도세 전입금)
12104	학교용지매입비시도 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지난연도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2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2106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초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107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무상교육경비 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기초자치단체무상교육경비 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급식비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기반시설부담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19호·제20호 및 제69조)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급식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경비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기반시설부담금	○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19호·제20호 및 제69조)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기타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민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기부금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정보화 촉진기금 등)
			16103 기타협력사업비	기타협력사업비		○ 시도교육청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 교육사랑카드 적립 협력사업비 등 민간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따른 수입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201 전입금	전입금		○ 자치단체 간 전입금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입학금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21102 수업료	수업료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21103 지난연도입학금	지난연도입학금		○ 지난연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연도수업료	지난연도수업료		○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
			21200 선택적교육수입			
			21201 기숙사및급식	급식비		○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기숙사비		○ 기숙사 사용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4 평생학습수입	수강료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입장료수입		○ 공연장, 과학관, 체험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 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검정수수료	○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 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수입
				증지판매수입	○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 독촉수수료 등
			22200 특별부과금및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분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 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폐교부지, 구외부지, 정착물 설치 위한 부지 등)
				건물임대수입	○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자판기·매점·복사기 설치 등을 위한 건물 임대)
				기타자산임대수입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 토지(임야 등)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 건물 매각수입
				구축물매각	○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계요소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화학 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실험장비, 기타잡기기 및 교육연구용 교구 매각수입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 전기통신기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및집기매각	○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및 기타집기비품매각수입
				도서매각	○ 도서 매각수입
				선박매각	○ 선박 매각수입
				항공기매각	○ 항공기 매각수입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매각수입
				박물관유물매각	○ 박물관유물 매각수입
				입목매각	○ 입목 매각수입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 기타의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 특허권 매각수입
				저작권매각	○ 저작권 매각수입
				소프트웨어매각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콘텐츠 매각수입
				실용신안권매각	○ 실용신안권 매각수입
				의장(디자인)권매각	○ 의장(디자인)권 매각수입
				상표권매각	○ 상표권 매각수입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상호권매각		○ 상호권 매각수입
				전신전화보증금회수		○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수입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치 시 이자 수입을 포함 ○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이자 수입
			24102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7000	기타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기타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기타연체료수입	○ 기타 연체료 수입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기타수입등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그외수입	그외수입	○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2720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 잔액 반납금 수입(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난 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
			2720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정산 반납금 수입(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전전년도 등 지난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 금액)
			27300	지난연도수입		
			27301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채		
			31100	지방채		
			31101	지방채증권	장기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지방채 증권 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보조금 등 사용잔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타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사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사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사고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계속비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43000 금융자산회수						
43100 용자금원금회수						
			43101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단기민간용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금융기관, 비통화 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빌려준 자금 회수 ○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장기민간용자금		
				학자 대여금		
43300 보증금 회수						
			43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임차보증금회수	○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51101 기금전입금	기금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000 예탁금및예수금			
			52100 예수금수입			
			52101 예수금수입	예수금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수금 수입
			52200 예탁금회수			
			522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2202 예탁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b>[050]교육</b>						
<b>[051]유아및초중등교육</b>						
<b>[01]인적자원운용</b>						
[03]교직원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등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경비</li> </ul>		
[01]교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li> <li>-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li> <li>○ 교원 장기 국외 유학연수 등 교원의 국외연수 경비</li> <li>○ 교원의 각종 연찬회 운영에 따른 제 경비(교장 및 전문직연찬회 등)</li> <li>○ 자율연수</li> <li>○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관련 제반 경비</li> <li>-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등</li> </ul>		○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li> <li>○ 관리자 장기국외연수 및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 등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경비</li> <li>○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li> <li>○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li> <li>○ 교육지원청 자체연수</li> <li>○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등</li> <li>○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경비</li> <li>-지방공무원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 등</li> </ul>		
[04]근로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무직원 등 공통연수 운영 경비</li> <li>○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자체 공통연수 및 워크숍</li> <li>○ 근로자 공통 위탁교육과정</li> <li>※ 급식위생교육 등 직종별 전문연수 경비는 해당 사업비로 편성</li> </ul>		
[05]교직원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li> </ul>		
[01]교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li> <li>-초·중등 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경비</li> <li>○ 사립교원 특별채용 및 인사교류 등 제반경비</li> <li>○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시험관리</li> <li>○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li> <li>○ 교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 관리 운영</li> <li>○ 교원초빙·공모제 운영비</li> <li>○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 경비</li> </ul>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li> <li>○ 교원 및 교육전문직 평정업무 운영</li> </ul>	
				[03]순회교사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교)사,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순회교사 등 순회여비 및 운영비</li> <li>○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li> </ul>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li> <li>-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승진시험 관리</li> <li>○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li> <li>○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li> <li>○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li> <li>○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운영</li> </ul>	
				[05]근로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제반 경비</li> <li>○ 근로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 관리 운영</li> <li>○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li> <li>○ 근로자 평정업무 운영</li> </ul>	
				[08]교직원복지	○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	
				[01]교직원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li> <li>○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 등) 관련 경비</li> <li>○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li> <li>○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위한 소요 경비</li> <li>○ 교직원 부조급여(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li> <li>○ 교직원(자녀 포함) 대여학자금 부담금</li> <li>○ 교직원 무이자·저리 대여사업 이차보전</li> <li>※ 공무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제외(공무원인건비에 편성)</li> </ul>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01]교육과정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연수, 홍보 및 각종 지원단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li> <li>○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li> <li>-각종 교과운영 제 경비</li> <li>-과학교과(과학교육운영,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조성 사업 등)</li> <li>-체육교과(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학교체육수업 운영 등)</li> <li>-예술교과(학교예술교육과정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li> <li>-외국어교과(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외국어 보조강사 운영, 캠프운영, 체험센터, 국제교류운영 등 학교외국어 교육 관련 운영경비 등)</li> <li>○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li> <li>○ 대학교육 선 이수과정 운영 경비</li> </ul>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학기(년)제 운영 경비</li> <li>○ 고교학점제 운영(공동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에듀테크 활용교육,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li> <li>○ 교과교실제 운영 경비(시설비 제외)</li> <li>○ 융합교육과정 운영 경비</li> <li>○ 창의인성체험교육 운영 등 제 경비</li> <li>※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비 등 시설비성 경비, 각종 기자재확충 경비는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세부사업에 편성</li> </ul>	
				[03]교육자료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도서개발 보급에 필요한 제 경비</li> <li>○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사회과 지역 교과서 개발 보급</li> <li>○ 무학년교과 수준별프로그램 개발</li> <li>○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경비</li> </ul>	
				[05]특색교육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자체 특색학교 및 지역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미래교육지구,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li> <li>○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li> <li>○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li> <li>○ 학교 1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li> </ul>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li> <li>-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학교 운동장 조성 포함)</li> <li>○ 고교학점제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li> <li>○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운영비 제외)</li> </ul>	
				[02]학력신장및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력신장 제반 경비</li> <li>○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개선지원비 등</li> <li>○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평가 제반 경비</li> </ul>	
				[01]교실수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수업개선 등을 위한 지원 경비</li> <li>○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및 학습지도연구대회 운영 경비</li> <li>○ 수업분석실 운영</li> <li>○ 우수교사인증제 운영</li> <li>○ 연구대회운영지원</li> <li>○ 수업선도교사 관리 운영</li> <li>○ 수업방법 개선 등 특별연구교사 관리 운영</li> </ul>	
				[02]학력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회복, 기초·기본학력 정착 위한 학습경비</li> <li>○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li> <li>○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경비</li> <li>○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li> <li>○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li> </ul>	○
				[03]학력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경비</li> </ul>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력진단평가 운영 경비</li> <li>○ 기타 학력인증평가 위한 운영 경비</li> </ul>	
				[03]장학및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등 장학활동 지원 및 교과교육 연구운영·지원 제반 경비</li> </ul>	
				[01]현장중심장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장학 관련 협의회 운영</li> <li>○ 각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li> <li>○ 학교 단위 장학활동 공모제 운영</li> <li>○ ICT 활용교육 장학지원제 운영</li> <li>○ 자율장학운영 및 컨설팅장학지원</li> <li>○ 수석교사제 운영</li> <li>-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수당 등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연찬회, 워크숍 경비 등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 제 경비</li> </ul>	○
				[03]연구시범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도·시·군 및 기타기관 연구시범학교 운영</li> <li>○ 각종 연구 실험 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 관련 제반 경비</li> </ul>	
				[04]교육연구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연구지 및 학습우수사례 발간</li> <li>○ 교육연구지 발간, 교육정보화 학술지 발간</li> <li>○ 교육연구회 자료 개발·보급</li> <li>○ 교사와 장학사 결연 활동</li> <li>○ 자생적 연구활동 지원,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li> </ul>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경비</li> <li>○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li> <li>○ 영상자료 제작 지원</li> <li>○ 교육포털시스템 운영</li> </ul>	
				[06]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 경비</li> </ul>	
				[01]유아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지원활동 지원</li> <li>○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li> <li>○ 유치원 학부모교실 운영</li> <li>○ 유치원 공동체험학습 운영, 지역별 유아교육네트워크 지원</li> <li>○ 교육자료 전시회 및 연찬회 운영</li> <li>○ 유치원 평가운영비 및 유치원 교원평가</li> <li>○ 유아교육활성화 추진</li> <li>○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li> <li>○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직속기관인 경우 기본운영비는 기관기본운영비에 편성)</li> <li>※ 사립유치원 제외</li> </ul>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설치 및 운영</li> <li>○ 유치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li> <li>○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li> <li>○ 유치원 돌봄 운영(아침·저녁)</li> </ul>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은 제외(누리과정지원에 편성) ※ 사립유치원 제외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유치원 CCTV 설치 ※ 사립유치원 제외	
				[04]사립유치원지원	○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 ○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 ○ 사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07]특수교육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01]특수교육운영	○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 경비 ○ 특수학급 증설(운영)비, 병원학교(급) 설치 운영 ○ 특수순회교육운영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 특수학교 수준별 교재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 특수교육 각종대회 운영 지원 ○ 장애인식개선 지원	○
				[03]특수교육복지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 공무원 외 특수교육 지원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등 ○ 장애재활센터 운영	○
				[04]특수교육여건개선	○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특수학급 신·증설 등(※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신·증설하는 리모델링비) ○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08]영재교육	○ 영재교육 기관운영 및 추진에 필요 제반 경비	
				[01]영재교육운영	○ 과학영재교실 및 영재학급(지역공동, 단위학교) 운영, 사이버 영재학급 추진 등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 개발·확충 등 ○ 영재교육 홍보 등 영재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경비 ○ 영재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 영재교육 협력사업 지원 ○ 영재교육원 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 등 지원 ○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9]독서교육		○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경비	
			[01]독서논술교육운영		○ 독서논술관련 자료집 발간 및 자료 제작, 독서 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 등 ○ 각종 독서 관련 행사 지원 ○ 전국 도서관대회 운영 등 ○ 독서 논술 활성화 지원	
			[02]학교도서관운영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비 지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학교도서관 학부모 <b>도우미</b> 운영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 독서관련 자료집 발간 및 대회운영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13]직업교육		○ 특성화고 운영 등 직업교육에 따른 제반 경비	
			[01]직업교육운영		○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 학생 기능신장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자영농수산물 운영 ○ 직업교육관련 각종 자료 발간 ○ 일반고직업교육과정 운영 ○ 마이스터고 육성 위한 제반 경비 ○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공동실습소 운영경비 ○ 직업교육 박람회 및 체험연수 등	○
			[04]취업역량강화		○ 직업계고 창업지원 사업, 학교기업 지원 ○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현장실습 운영지원 등 ○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지원, 산학협력 취업지원 센터 운영	○
			[05]직업교육환경개선		○ 직업계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경비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14]학교정보화		○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사업 제반 경비 ○ ICT 활용( <b>디지털</b> ) 교육 지원 제반경비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확충 ○ 정품소프트웨어 및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 어학실 및 방송실 장비 확충 ○ 멀티미디어실 설치 ○ 첨단 광학매체 보급 ○ 인터넷 학습환경 구축 ○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정비비 ○ 학내전산망 및 DB서버 구축 ○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 학교홈페이지 관리 ○ <b>디지털</b>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03]ICT 활용교육지원		○ ICT 활용( <b>디지털</b> )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ICT 활용( <b>디지털</b> ) 교육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 학생컴퓨터활용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사이버 마을공부방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닝 박람회 및 이러닝 고도화 지원</li> <li>○ 클라우드 기반조성 <b>디지털교육</b> 지원 등</li> </ul>	
				[17]특별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지원 제반 경비</li> </ul>	
				[01]문화예술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li> <li>○ 관현악단 및 국악연주단 운영학교 지원</li> <li>○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교육박람회 운영</li> <li>○ 각종 현장체험학습(도시체험활동 등) 운영</li> <li>○ 학생동아리 지원</li> <li>○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li> <li>○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03]각종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li> <li>○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li> <li>○ 생활체육 관련 지원 제 경비</li> <li>○ 체육선수 육성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li> <li>○ 전문 체육코치 운영</li> <li>○ 특별종목 지원</li> <li>○ 연계 육성팀 창단 지원</li> <li>○ 신인발굴 및 전지훈련, 선수훈련용 버스 운영</li> <li>○ 전국, 시·도·군 단위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li> </ul>	○
				[04]학생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 배양 과정 및 특성화 수련프로그램 등 학생수련활동 운영 경비</li> <li>○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 등의 학생교육 지원 경비</li> <li>○ 청소년단체활동 지원</li> <li>○ 청소년 선도, 학생봉사 자치활동 지도 등 청소년 활동 관련 제반 경비</li> </ul>	○
				[19]학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제반 경비</li> <li>○ 학생흡연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li> <li>○ 학생안전교육 제반 경비</li> </ul>	
				[01]학생생활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선도 등 학생생활 지도경비</li> <li>○ 흡연예방교실 운영</li> <li>○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관련 제반 경비</li> <li>○ 생활지도 관련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대회 운영 등 제반 경비</li> <li>○ 학생표창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 제 경비</li> </ul>	
				[02]성폭력예방교육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제 경비</li> <li>○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운영 관련 제 경비</li> </ul>	
				[03]학교폭력예방및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관련 제 경비</li> <li>○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li> <li>○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li> <li>○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li> <li>○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li> </ul>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4]학생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센터 운영</li> <li>○ Wee클래스 운영</li> <li>○ 학부모자원봉사자 운영</li> <li>○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li> </ul>	
				[05]학생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li> <li>○ 학생보호인력지원</li> <li>○ 학교안전공제회비</li> <li>○ 안전사고예방지도,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 시설운영, 스쿨존관리 등 학생안전관련 제 경비</li> </ul>	
			[20]대안교육	[01]대안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교육비 지원</li> <li>○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li> <li>○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li> <li>○ 학교박청소년 복교 지원 관련 제 경비</li> </ul>	
			[22]진로진학교육	[01]진로진학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학생 진로연계교육 관련 제 경비</li> <li>○ 진로지도 자료 개발, 연수 등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제 경비</li> <li>○ 진로상담실 운영</li> <li>○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li> </ul>	○
			[25]학생선발배정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능력시험 및 입시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경비</li> <li>○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련 제반 경비</li> <li>○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제반 경비</li> <li>○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 업무 경비</li> </ul>	
				[02]대학수능능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수능능력시험관리</li> <li>○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li> </ul>	
			<b>[03]교육복지</b>			
			[01]학비지원	[01]교육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경비</li> <li>○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 외 재학(원)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li> <li>○ 기타 교육비 지원</li> </ul>	
				[04]교육급여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02]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01]방과후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운영 제 경비</li> <li>○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li> </ul>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경비	
				[04]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운영 지원	○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우수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제반 경비</li> <li>○ 농어촌우수교 육성 지원 사업</li> <li>○ 농어촌 전원학교(돌봄학교 포함) 및 작은학교 육성 사업</li> </ul>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경비</li> <li>○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지원</li> <li>○ 소규모학교군 구성 운영 등</li> </ul>	
				[02]기숙형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형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비</li> <li>○ 기숙형학교 기숙사 운영 경비</li> </ul>	
				[09]교육복지지원	○ 정보화,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1]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경비	○
				[02]급식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가정자녀 중식비 지원 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li> <li>○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 지원</li> <li>○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li> <li>○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 등</li> </ul>	
				[03]정보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가정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사이트 차단경비 포함)</li> <li>○ 저소득층가정자녀 PC지원</li> <li>○ 저소득층가정자녀 IT교육 참가학생 경비 지원</li> </ul>	
				[04]누리과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반비 등)</li> <li>○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li> </ul>	
				[05]교과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 교과서 지급 경비</li> <li>○ 무상교육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비</li> <li>○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고등학부 과정) 교과서 지원비</li> <li>○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 구입</li> <li>○ 재량활동운영 교재 보급</li> </ul>	
				[06]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별반 운영 지원 경비</li> <li>○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 운영 경비</li> </ul>	
				[07]기타교육복지지원	○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4]보건급식		
				[01]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제반 경비</li> <li>○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 경비</li> </ul>	
				[01]학교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질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경비</li> <li>○ 학생 성인병 정밀 검사비</li> <li>○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사 연수</li> <li>○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여건개선 관련 제 경비</li> </ul>	
				[02]학교환경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보호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보호 관련 경비</li> <li>○ 학교환경위생 연수</li> <li>○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li> <li>○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li> <li>○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li> <li>○ 미세먼지 관리</li> </ul>	
				[03]산업안전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li> <li>○ 산업안전 보건 교육 운영</li> <li>○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 경비</li> </ul>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급식관리		○ 급식시설 개선, 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제반 경비		
			[01]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위생 지원 및 교육 경비 ○ 학교급식관련 자료 발간 ○ 학교급식관련 지도 및 점검 ○ 급식담당자 협의회 운영 ○ 학교급식 식품비, 운영비 및 관리비(무상급식비 포함) ○ 학교급식 운영차량 지원 및 관리비		
			[03]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b>[05]학교재정지원관리</b>				
			[01]학교운영비지원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교운영비지원		○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02]사학재정지원		○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경비		
			[01]인건비재정결합지원		○ 사학기관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맞춤형복지비 포함)		
			[02]운영비재정결합지원		○ 사학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		
			<b>[06]학교시설여건개선</b>				
			[01]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경비		
			[01]학교신증설		○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대안학교)의 신축 및 이전 경비 ○ 학급증설학교(유·초·중·고·특, 대안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 학교신증설 관련 자산취득비		
			[02]학교시설개선		○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01]학교시설확충		○ 학생배치시설 이외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 관련 제 경비(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02]학교시설환경개선		○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제 경비(자산취득비 포함)	○	
			<b>[053]평생교육</b>				
			<b>[01]평생교육</b>				
			[01]평생교육운영		○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경비 ○ 방송통신중고 및 검정고시 운영 경비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공익법인 관리 ○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		
			[02]평생학습운영		○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관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 교육아카데미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평생교육봉사단 운영</li> <li>○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li> </ul>	
				[03]방송통신중고운영	○ 방송통신중고 운영 경비	
				[04]검정고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li> <li>○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검정고시 경비</li> </ul>	
			[02]독서문화		○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01]도서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자료확충, 도서관 전산화 추진</li> <li>○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팀 순회운영</li> <li>○ 도서관 세미나, 야간개관 연장 운영</li> <li>○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li> </ul>	○
<b>[054]교육일반</b>						
<b>[01]교육행정일반</b>						
			[01]정책기획및비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계획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제반 경비</li> <li>○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제반 경비</li> </ul>	
			[01]교육정책기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 기획 및 보고 경비</li> <li>○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 운영</li> <li>○ 각종 기획관련 자료 발간</li> <li>○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li> <li>○ 교육발전협의회 운영</li> <li>○ 교육정책지원단 운영</li> </ul>	
			[03]교육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책 홍보활동 경비</li> <li>○ 공보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li> <li>○ 교육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li> <li>○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 등 경비</li> </ul>	
			[04]비상대비계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li> <li>○ 직장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 지원경비</li> <li>○ 읍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li> <li>○ 사회복지무원 운영(전산 및 특수교육 지원 사회복지무원은 해당사업에 편성)</li> </ul>	
			[03]감사법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감사활동지원 등 감사관리 제 경비</li> <li>○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 경비</li> </ul>	
			[01]감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감사활동 및 산하기관 감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li> <li>○ 국정감사 수감 관련 경비</li> <li>○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 경비</li> <li>○ 반부패청렴추진</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공직자재산등록 운영</li> </ul>	
			[02]법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li> <li>○ 법제 심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li> <li>○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반 경비</li> <li>○ 각종 배상금, 승소 포상금 및 사례금</li> <li>○ 고문 변호사 운영</li> <li>○ 교직원 법률상담 운영</li> </ul>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및 학교 평가 제반 경비</li> <li>○ 혁신종합계획 추진 등 교육행정혁신 제반 경비</li> </ul>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경비</li> <li>○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관련 경비</li> <li>○ 학교 평가 관련 경비</li> <li>○ 평가결과 지원금</li> </ul>	
			[02]조직및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및 산하기관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li> <li>○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제 경비</li> <li>○ 목표관리제 운영, 분권이양업무 추진</li> </ul>	
			[03]행정개선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제반경비</li> <li>○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 등 행정운영 개선을 위한 제반 경비</li> <li>○ 교육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li> </ul>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협력 지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제반 경비</li> </ul>	
			[01]의회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협력 지원 관련 제반 경비</li> </ul>	
			[02]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li> </ul>	
			[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li> <li>○ 교육통계연보 등 행정자료 관리 제반 경비</li> <li>○ 민원실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경비</li> </ul>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li> <li>○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구축 및 관리</li> <li>○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리</li> <li>○ 전산실 운영 경비</li> <li>○ 행정(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li> <li>○ 공무원 외 전산업무 지원 위한 사회복지무원 등</li> <li>○ PC정비소 운영 경비</li> </ul>	
			[02]정보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li>○ 정보보호교육 및 운영관리</li> <li>○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li> <li>○ 개인정보보호 관리</li> </ul>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 운영</li> <li>○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교육통계연보 발간 관련 제반 경비</li> <li>○ 교육행정자료 발간에 소요되는 제 경비</li> <li>○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 정보공시제 운영</li> </ul>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li> <li>○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경비</li> <li>○ 민원만족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포상</li> <li>○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li> <li>○ 민원실 운영 경비</li> </ul>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13]예결산관리		○ 예산편성 등 예결산관리 제반 경비	
				[01]예산관리	○ 예산편성, 배정, 자료 조사, 예산서 인쇄 등 예산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경비 ○ 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경비 ○ 학교회계 업무 추진 관련 제반 경비	
				[02]결산관리	○ 결산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	
			[14]재무관리		○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 제반 경비	
				[01]재무회계관리	○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업무 지원, 계약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추진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각종 회계업무 추진 경비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재산 등기, 측량,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 경비 ○ 자산취득·매각 관리, 각 부서 자산취득 경비 ○ 물품수급관리 등 제 경비	
			[15]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 추진 관련 제반 경비(※ 시설비 및 학교신증설 자산취득비는 학생배치시설에 편성)	
				[01]학생배치계획관리	○ 학생배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개발지구 학교신설 추진 경비 ○ 통학구역 관리	
				[02]적정규모학교육성	○ 초·중·고 이전 및 분교장 개편 업무 추진 ○ 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16]사학기관관리		○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사학기관지도 육성 제반 경비	
				[01]사학기관지도지원	○ 학교법인 지도·감독 경비 ○ 사학직원 연수 경비 ○ 사학기관 행정지도 및 시설지원사업 지도 감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17]교육협력		○ 학부모, 국제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비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반 경비 ○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지도·감독 경비 ○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활동 경비 지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 경비	○
				[02]교육협력관리	○ 시·도청 및 유관기관 교육협력 제반 경비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등 제 경비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 개발도상국 PC지원 및 초청 연수 등 ○ 국외단체와의 자매결연 경비 ○ 교육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8]시설사업관리		○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시설사업관리 제반 경비	
				[01]시설사업운영	○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시설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20]특별교육재정수요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b>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b>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21]교직원단체관리		○ 교원·지방공무원·근로자 단체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01]교직원단체관리		○ 교원,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교직원 노사관계 교육관련 경비 ○ 교원, 공무원, 근로자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경비	○
			<b>[02]기관운영</b>			
			[01]기본운영비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01]기관기본운영비		○ 본청 운영 관련 경비 ○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 포함) ○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	
			[02]교육행정기관시설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01]기관시설유지관리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시설유지보수, 환경 개선, 신설, 이전 및 증·개축비	
			<b>[03]재무활동</b>			
			[01]지방채상환및리스료		○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제반 경비	
			[01]지방채상환		○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02]민간투자사업상환		○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03]일시차입금관리		○ 일시차입금 이자	
			[04]내부거래지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02]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03]예탁금		○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하는 자금	
			[04]예수금원리금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가져온 자금의 원리금 상환	
			[05]예치금		○ 예치금	
			[01]예치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b>[160]예비비</b>			
			<b>[161]예비비</b>			
			<b>[01]예비비및기타</b>			
			[01]예비비및기타		○ 예비비 및 기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1]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02]제지출금등	○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3]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b>[900]기타</b>						
<b>[901]인건비</b>						
<b>[01]인건비</b>						
<b>[01]인건비</b>						
			[01]공무원인건비		○ 교원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01]교원인건비		○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등의 인건비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지방공무원인건비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 소속 일반직, 별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명예 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근로자인건비		○ 계약제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01]계약제교원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 계약제 및 시간제 교원 인건비, 퇴직수당 등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장애인고용부담금 ○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처우 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포함) ※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건비 포함 ※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li> <li>-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li> </ul>
			겸임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한 겸임수당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2)	
			교직수당가산금3)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5)	
			교직수당가산금6)	
			교직수당가산금7)	
			교직수당가산금8)	
			교직수당가산금9)	
			교직수당가산금10)	
			선박및합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 직위수당	
			직급보조비	○ 직급보조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1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110-04 공무직보수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110-05 계약직교원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물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품구입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li> <li>○ 비품·소규모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li> <li>- 기계·기구·잡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li> </ul> </li> <li>○ 간행물 등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li> </ul> </li> <li>※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li> <li>○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실·보건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li> <li>- 공상치료비 등</li> </ul> </li> <li>○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li> <li>※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무형자산(440-01)목에 계상</li> <li>○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li> </ul>
			각종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료 및 광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li> </ul> </li> <li>※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li> <li>○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li> <li>-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li> <li>-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li> <li>- 물품의 보관·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li> <li>※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화물 운송료는 210-02목에 계상</li> <li>-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입료 및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자문료</li> <li>-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소규모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li> <li>- 세입금 등 수납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시 교육청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li> </ul> </li> </ul>
			교육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위탁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li> <li>- 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li> </ul> </li> <li>○ 공로연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li> <li>-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li> </ul> </li> </ul>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요금	○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인터넷통신요금	○ 인터넷통신요금
			전기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 도시가스료
			기타공공요금	○ 우편요금 ○ 철도화물운송요금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li> <li>○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li> </ul>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자동차, 화재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공무원책임보험료 등)</li> </ul>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li> </ul>
			환경개선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개선부담금</li> </ul>
			기타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물수거료</li> <li>○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체당금</li> <li>○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li> <li>-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부담금</li> <li>- 소방기본법 제42조의 소방안전협회비</li> <li>○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li> <li>○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li> <li>○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li> </ul>
		210-03 피복비	피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li> <li>- 업무 성격상 제복 또는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렬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대상</li> <li>○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li> <li>○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li> </ul>
		210-04 급량비	급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li> <li>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li> <li>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박비를 포함</li> <li>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li> <li>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li> <li>⑦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li> <li>※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230목에 계상)</li> <li>○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상기 ①부터 ⑦까지의 경비</li> </ul>
		210-05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li> <li>-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li> <li>-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li> <li>-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li> <li>-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 하는 경우의 매식비</li> </ul>
		210-06 운영수당	위원회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참석수당</li> <li>-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li> <li>-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li> <li>-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li> </ul>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수당</li> <li>-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투자심사 등)</li> <li>-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일숙직비	○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관리비</li> <li>-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li> <li>- 출제 및 심사수당 등</li> </ul>
			강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료(원고료 포함)</li> <li>○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li> <li>※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는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li> </ul>
			기타운영수당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210-07 임차료		토지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li> <li>○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li> </ul>
			통학차량임차료	○ 통학차량임차료
			통학차량외임차료	○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기타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사무기기, 집기, 교구·기자재 등 임차료</li> <li>○ 기타 자산 임차료</li> </ul>
	210-08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용 LPG 및 유류</li> <li>※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에 계상</li> </ul>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비유지비</li> <li>-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li> <li>-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li> <li>-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li> <li>※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차량 선박비(210-10)목에 계상</li> <li>-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li> <li>※ 1년 이상의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사업비(210-13)목에 계상</li> <li>※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420-03) 목에 계상</li> </ul>
	210-10 차량선박비		차량선박유류대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유류대
			차량선박소규모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소규모 수선비(운반 건설 기계 포함)</li> <li>※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420-03) 목에 계상</li> <li>○ 차량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li> </ul>
	210-11 재료비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li> <li>-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li> </ul>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 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li> <li>○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성기구비품비로 구분)</li> <li>○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li> <li>○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li> <li>○ 사료구입비</li> <li>○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방역 재료비</li> </ul>
	210-12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 교과서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산하기관을 위한 교재교구 수선 비용 등</li> <li>○ 교육청(직속, 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생 대상 교육·세미나·회의·행사·대회 출전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매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경비</li> </ul>
	210-13	용역사업비	관리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li> <li>※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 단체가 시행해야 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탁금(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 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에 계상</li> </ul>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li> <li>※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 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li> </ul>
	210-14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 BTL운영비
	210-15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비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이전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 출장여비
	220-03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빈초청여비</li> <li>-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li> <li>※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li> </ul>
	220-04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li> <li>-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li> </ul>
	220-05	국내훈련여비	국내훈련여비	○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위탁교육 등) 국내훈련여비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기관의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li> <li>○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li> </ul>
		230-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li> <li>- 정례회의 경비, 각종 행사경비</li> <li>-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li> <li>○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li> </ul>
			외빈초청경비	○ 외빈초청경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접대경비
			기타업무추진비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230-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가산금</li> <li>-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li> </ul>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복리후생비	교직원학술연구지원비	○ 교직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회지원비	○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 교직원 능력 개발비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 교사 수당
			기타복리후생비	○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240-02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근로자 포함)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14)
			근로자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담임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기타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기타수당
		240-04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2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4 기타직무수행경비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관재활동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 관재활동비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교육청 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 <삭제>
		전산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이나 국가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학생 등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보철구 제작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 교육급여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교육비 지원(정보화지원비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2 배상금등	배상금등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10-03 포상금등	포상금등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등 업무관련 해외 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예산 성과금 ○ 기타 포상금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310-04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310-05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병역법 제31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10-06 기타보전금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재반사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 회의, 세미나, 행사에 참가하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매식비 및 교통 실비 ○ 국가, 시도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참석을 위해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문화제행사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사립 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620목에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상보조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20-02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제사업비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 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 공무원 부담금(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 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5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320-06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회비(교육부장관이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단가)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320-08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li> <li>○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li> </ul>
		320-09 기타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자금
			장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
			학자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단기임차보증금	○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	○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320-10 연금부담금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 교직원 재난부조금
		320-11 학생및학생 단체지원경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 아람단, 누리단 등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학생치료비	○ 학생치료비
		320-12 공무직법정 부담금	공무직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직에 대한 법정부담금</li> <li>-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li> <li>- 건강보험부담금</li> <li>- 고용보험료</li> <li>- 산업재해보험료</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li> <li>-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li> </ul>
		320-13 계약직교원 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대한 법정부담금</li> <li>-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li> <li>- 건강보험부담금</li> <li>- 고용보험료</li> <li>- 산업재해보험료</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li> <li>-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li> </ul>
		320-14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li> <li>※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li> <li>※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li> </ul>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자본보조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금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li> <li>○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li> <li>○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경비)</li> </ul>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li> <li>○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li> </ul>
		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대규모 수선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li> <li>○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li> </ul>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누리과정보육료보조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경비
		330-05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li> <li>※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li> </ul>
		330-06 공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li> <li>※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li> <li>○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li> </ul>
		330-07 자치단체간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또는 조례, <b>협약</b>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하는 경비</li> <li>○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b>협약</b>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li> <li>- 각종 법령·조례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부담금사업(교육청 간 예산의 이전) 경비</li> </ul>
		330-08 기타부담금	기타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에 따라 국가에 부담해야 할 경비</li> <li>○ 공직선거법 제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교육감선거관리경비(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제4호의 공통경비 포함)</li> </ul>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340-02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50	출연금		
		350-01 출연금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교육청의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li> </ul>
400	자본지출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토지매입수수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토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li> <li>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등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li> <li>재산권 변동에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li>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li> <li>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li> <li>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li> <li>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정지비 제외)</li> </ul>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기본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li> <li>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li> </ul>
		420-0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li> <li>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li> <li>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li> <li>※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li> </ul>
		420-03 시설비	건물시설비 토목시설비 전기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소방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건축물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대규모수선유지비 포함)</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통신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li> <li>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li> </ul>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선박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항공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도장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자산철거비	○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 철거비
			기타자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요 경비
			시설안전진단및정밀점검경비	○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경비
		420-04 감리비	감리비	○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구역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
		420-0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라. 광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사.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굴착시 인접 민간건물 손상, 공사현장 인접 농작물 피해, 공사 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등 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학부모참여감독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목에 편성 ※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사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 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건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건축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입목축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축 취득비	
		선박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항공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사무용기기및집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기계요소및공작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취득비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산업기계 취득비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취득비
			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기타잡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잡기기 취득비
			도서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문화유산자산취득비	○ 박물관유물 유상 취득비
			예술품취득비	○ 박물관 유물이 아닌 예술품 취득비
			기타유형자산취득비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 취득비
			교구용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기기 취득비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특허권	○ 무형자산 취득비 -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저작권	○ 저작권 취득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취득비
			의장(디자인)권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상표권	○ 상표권 취득비
			상호권	○ 상호권 취득비
			기타무형자산취득비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 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차입금상환	유동성장기지방채	○ 유동성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유동성장기지방채는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지방채 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지방채를 말함
			장기지방채	○ 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 장기지방채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황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을 말함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유동성대체하지 아니한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의 초기상환) ※ 장기금융차입금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상황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공공 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말함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 상황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금융리스채무	○ 금융리스 채무 차입금 상황
		510-02 차입금이자	유동성장기지방채증권 이자비용	○ 장기지방채 중 차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증권의 이자비용
			장기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이자비용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비용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금융리스채무이자비용	○ 금융리스채무 이자비용	
		일시차입금이자비용	○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510-03 민자사업자금	BTL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BTL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520 예치금			
		520-01 예치금	예치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610-01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li> <li>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국가의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li> </ul>
		610-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li> </ul>
		610-03 국립학교학생 지원경비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청 관할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li> <li>-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따라 국립학교로 지원되는 사업</li> <li>- 감염병 예방 등 시·도 내 전체 학교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li> <li>- 대학수능시험과 같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경비</li> <li>- 당해 시도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 학생선수로 출전할 경우의 출전비 등 실비변상적 경비</li> <li>-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공·사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학교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li> </ul> </li> <li>(※ 관련 법령 등에서 국립학교를 지원하도록 한 사업 등)</li> </ul>
			국립학교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으로 시·도교육청 관할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고·국립 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li> <li>(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li> <li>※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 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li> </ul>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1 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경비</li> </ul>
			공무직인건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경비</li> </ul>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립학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li> </ul>
		620-02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li> </ul>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제외]</li> </ul>
		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li> <li>(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li> <li>※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li> </ul>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 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학교에서 직접집행 가능한 경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 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공립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학교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예산 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사립학교시설지원	○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 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14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누리과정학비지원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620-16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사립학교계약제교원인건비 지원 사립학교공무직원인건비지원 사립학교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경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상용근로자(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경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사립학교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목구 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710-02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li> <li>○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정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li> </ul>
			광역시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타반환금	○ 기타 반환금
	710-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0 내부거래				
	8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10-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20	기금전출금		
		820-01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830	예탁금		
		830-01 예탁금	예탁금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탁금
	840	예수금원리금 상환		
		840-01 예수금원금 상환	예수금원금 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수금 원금
	840-02 예수금이자 상환	예수금이자 상환	○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 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제6조 관련)

### 1. 예산 편제

####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 I. 예산총칙
- II. 세입·세출예산
  1.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기능별)
    -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조직별)
    -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III. 계속비사업 조서
- IV. 채무부담행위 조서
- V. 명시이월사업 조서

#### 제2권. 첨부서류

#####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가. 재정자주도
  -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표
    - 다-1. 예비비 확보율
    - 다-2. 기금전출금 비율
- 3) 부채
  - 가. 부채 총괄
  - 나. 통합부채의 내역

- 다. 우발부채의 내역
  -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다-2. 채무부담행위
  -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다-4. 소송사건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 나. 의무지출 내역
-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사항 및 인센티브 현황
-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 5.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6. 성인지 예산서
- 7. 성과계획서
- 8.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 9. 명시이월 명세서
-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1. 공유재산 관련서류
12.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3.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14.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5.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7.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18. 민간투자사업 상황액 조서
19.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2.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3. 예산서 서식

- 1-1. 표지 및 예산총칙
-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1-8. 계속비사업 조서
-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 1-11. 지방채 조서
-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14. 성인지 예산서

(서식 1-1)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 시·(도)교육청

## 예산총칙(예시)

**제1조**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 ○○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 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서식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기타이전수입		%		%		%
	소계		%		%		%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		%		%
	행정활동수입		%		%		%
	자산수입		%		%		%
	이자수입		%		%		%
	기타수입		%		%		%
	소계		%		%		%
차 입	지방채		%		%		%
	소계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		%		%
	예치금회수		%		%		%
	금융자산회수		%		%		%
	소계		%		%		%
내부거래	전입금		%		%		%
	예탁금및예수금		%		%		%
	소계		%		%		%

(서식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의급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서식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공보담당관실		%		%		%
○○담당관실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직속기관		%		%		%
○○○연수원		%		%		%
○○○도서관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서식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00 인건비		%		%		%
110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10 운영비		%		%		%
220 여비		%		%		%
230 업무추진비		%		%		%
240 복리후생비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260 연구개발비		%		%		%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		%
300 이전지출		%		%		%
310 보전금		%		%		%
320 민간이전		%		%		%
330 자치단체등이전		%		%		%
340 해외이전		%		%		%
350 출연금		%		%		%
400 자본지출		%		%		%
410 토지매입비		%		%		%
420 건설비		%		%		%
430 유형자산		%		%		%
440 무형자산		%		%		%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500 상환지출		%		%		%
510 상환지출		%		%		%
520 예치금		%		%		%
600 전출금등		%		%		%
610 전출금등		%		%		%
620 학교회계전출금		%		%		%
700 예비비및기타		%		%		%
710 예비비및기타		%		%		%
800 내부거래		%		%		%
81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
820 기금전출금		%		%		%
830 예탁금		%		%		%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		%		%



(서식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장	이전수입
---	------

10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 예산액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비법정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국고지원전입금				%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기타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기부금				%
	기타지원금				%
	기타협력사업비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전입금				%

<b>관</b>	<b>중앙정부이전수입</b>
----------	-----------------

11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 예산액**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항	목				
합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b>항</b>	<b>지방교육재정교부금</b>
----------	------------------

111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

□ 예산액

(단위: 천원)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b>목</b>	<b>보통교부금</b>
----------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 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보통교부금	(소관)

**□ 예산액**

(단위: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장)이전수입 (관)중앙정부이전수입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보통교부금 (단위: 천원)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사·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b>정책사업</b>	<b>인적자원운용</b>
-------------	---------------

05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분야) 교육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단위사업 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직원역량강화				%
교직원인사				%
교직원복지				%

□ 경비성질별 내역

(단위: 천원)

성질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본지출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및기타				%
내부거래				%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

01 - 03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

□ 세부사업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원연수운영	계				%
	○○과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계				%
	○○과				%
근로자연수운영	계				%
	○○과				%

<b>세부사업</b>	<b>교원연수운영</b>
-------------	---------------

01 - 03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기능)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 ○○과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재원내역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교직원역량강화 (세부)교원연수운영 (단위: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8) 계속비사업 조서

###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과목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 사업개요 추가 작성·계획연도 추가 및 총사업비 변경·연도별 계획액 변경·변경사유 등 계속비 변경 사항 (기정·변경·증감)에 대한 표시는 시·도교육청 자율 표시

(서식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계 획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년	○○년	○○년	○○년	

(서식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서식 1-11) 지방채 조서

### 지방채 조서

(단위: 천원)

구분	기 간		이 율	기 채 선	기 채 액 (A)	기 상 환 액 (B)	전 년 도 상 환						당해연도상환			금 후 상 환 계 획 액 (E)	기 채 사유
	기 채 년도	상 환 완 료 예 정 년도					상 환 계 획			상 환 액			계 획 액				
							원금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원금 (D)	이자	계		

- 구분: 금융기관채, 지방채증권, 기타 차입금, 국외차입금 등
- 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 상환액(C)+당해연도 상환계획액(D)+금후 상환계획액(E)

(서식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상환기간		기상환액	상환 예정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시작	완료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이후	

- 총사업비: BTL 임대료를 말하며, 운영비는 제외
- Y년: 당해연도

(서식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시

###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

#### 가. 재정자주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	Y-1년	증감
재정자주도 $((B+C+D)/A \times 100)$			
세입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C) (목적성경비 제외)			
자체수입(D)			

####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입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11101), 특별교부금(11102), 증액교부금(11103)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세입 목 지방교육세전입금(12101), 담배소비세전입금(12102), 시도세전입금(12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2105), 단, 목적성경비 제외
  - ※ 목적성 경비 제외 내역: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12104), 교육급여보조금(121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12107)
- 자체수입: 자체수입(20000) (단,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27204),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는 제외), 기타이전수입(16000)

###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율	Y-1년(B)	비율	증감 (C=A-B)	비율(C/B)
세출예산총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출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공무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 다-1. 예비비 확보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예비비 예산액 (A)	세출예산 총액 (B)	예비비 확보율 (A/B*100)	비고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작성기준】

- 예비비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 일반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비비 편성한도 없음)

### 다-2. 기금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기금전출금 예산액 (A)	세출예산 총액 (B)	기금전출금 비율 (A/B*100)	전출 근거
A〇〇기금				〇〇법 〇조
B〇〇기금				〇〇조례 〇조
C〇〇기금				〇〇조례 〇조
계		세출예산 총액		

#### 【작성기준】

- 기금전출금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설치한 각종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 3. 부채

#### 가. 부채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Y-2년	비율 (B/A)	Y-3년	비율 (B/A)	증감	비율 (다/나)
	(가)		(나)		(다=가-나)	
세입결산 총액(A)						
부채 계(B=C+D)						
통합부채(C)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우발부채(D)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						

#### 【작성기준】

- Y-2년은 전전년도, Y-3년은 Y-2년의 직전년도 결산기준
-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세외예수금)
-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한 부채로서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금, 장기세외예수금(임대보증금)
- 우발부채: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

## 나. 통합부채의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내 역	금 액	비 고
통합부채 계(D=A+B+C)			
유동부채(A)			
장기차입부채(B)			
기타비유동부채(C)			

###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과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계정과목 3레벨 수준(예: 미지급금, 선수금)

## 다. 우발부채의 내역

###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계						

###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다-2.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상액
계					

####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약정내용)	계약상대자	약정금액	부채계상액
계					

####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매입계약, 손실부담계약,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등의 약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 반영

### 다-4. 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유형	건수	소송가액	소송충당 부채계상금액	비 고
계				

####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유형: 처분취소, 손해배상, 지위확인, 반환청구, 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소송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중	Y-1년(B)	비중	증감	
					(C=A-B)	비율(C/B)
세출총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본예산액 기준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

##### 나. 의무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금액	관련 근거	비고
합계			
△△△사업			
○○○사업			
...			

##### 【작성기준】

- 당해연도 본예산액 기준

####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부처
-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주요내용	교부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 지출 및 징수 태만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따른 교육재정 1,000백만원 손실 초래	△1,000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불용률)	00년 이·불용률 목표치 미달성 ※ 목표치 2퍼센트 포인트 초과	△10,000
증액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00년 상반기 예산집행비율 목표치 달성	10,000

###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확정된 교부금 대상(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의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2항 [별표2] 측정항목 7.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이월률 및 불용률) 등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교부 시 감액된 내용으로 작성
-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2항 [별표2] 측정항목 7. 재정집행효율화 지원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교부시 증액된 내용으로 작성

##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매년 10월경(예산안 제출 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결과 서식 첨부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지방채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자체 재원	
		교부금 부담	자체 부담					

### 【작성기준】

- 작성일 현재기준, 원금만 작성
- 교부금부담: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 자체부담: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 총사업비 = 지방채+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자체재원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의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학교신설사업: 학교별(○○초)로 작성
    - 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별(예 : ○○초 외 10개교 상호교체사업)로 작성
- ※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 기 간: ○ 위 치: ○ 규 모:							
<input type="checkbox"/>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백만원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div>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Y-2년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방채	교부금부담						
	자체부담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 집행액: 지방채 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 발행예정액 포함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 ○							
<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기간
			전년도까지 (Y-1까지)	당해연도 (Y)	향후예정액 (Y+1이후)	

**【작성기준】**

- 총사업비: 민간투자사업(BTL) 심의 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전년도까지는 BTL임대료 등의 집행액(결산기준), 당해연도 이후는 추정액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input type="checkbox"/> <b>사업목적 및 필요성</b> ○					
<input type="checkbox"/> <b>사업개요</b> ○ 기간:                                  ○ 위치:                                  ○ 민간사업자: ○ 총사업비:                                  ○ 사업규모:					
<input type="checkbox"/> <b>재정부담 현황</b>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Y-2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방채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b>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b> ○ ○					
<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 ○ ○					
<input type="checkbox"/> <b>사업변경 내역(해당시)</b>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가. 표지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 시·(도)교육청

나.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00년 성인지 예산은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

2. ‘00년 성인지 예산 개요

- ‘0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00개 기관의 00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000천원 수준임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성별영향평가 사업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 시·도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 ‘00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교육청별 특성에 맞게 수록)
  - ‘00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00년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기반 마련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3.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 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 I. 성 평등 목표

○

### I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III.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규모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의급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기관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기관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		%		%
						%		%		%
						%		%		%
						%		%		%
직 속 기 관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정책분야 :                    】

**정책과제명**

- 년도 성 평등 목표
  - 
  -

- 대상사업의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부문					%
정책사업1					%
단위사업1					%
세부사업1					%
사업1					%
사업2					%
세부사업2					%
사업1					%
					%
					%

- 기관별 성별수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본 청				%
				%
				%
				%
				%
직 속 기 관				%
				%
				%
교육지원청				%
				%
				%



다.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기 관 명(○ ○실·과)

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II. 성인지 예산의 규모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의급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합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과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명	명	명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합 계	계			
	여성(비율) (D/B)	( %)	( %)	( %)
	남성(비율) (F/B)	( %)	( %)	( %)
○○과	계			
	여성(비율) (D/B)	( %)	( %)	( %)
	남성(비율) (F/B)	( %)	( %)	( %)
...	계			
	여성(비율) (D/B)	( %)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달성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 분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전 체			
○○과			
○○과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사. 사업별 설명자료(사업담당자)

[ 세부사업명 : ]

사 업 명	○ ○ ○ ○
-------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예산구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성 인 지 향 목	(정책분야)	(정책과제)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선정사업

※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 원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
일 반 재 원				%
국 고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금				%
자 치 단 체 보 조 금				%
지 방 채 수 입				%
기 부 금 및 기 타				%
교 육 급 여 보 조 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 입 금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계			
여성(비율) (D/B)	( %)	( %)	( %)
남성(비율) (F/B)	( %)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3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인적자원운용				
03교직원역량강화				
01교원연수운영				
		01유치원교원연수지원	유치원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2초등교원연수지원	초등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3중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4특수교원연수지원	특수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5초등전문직연수지원	초등전문직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6중등전문직연수지원	중등전문직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7유치원교원역량강화	유치원교원 및 학부모연수비	
		08특수교원역량강화	특수교원연수비, 특수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 특수교육우수사례연구대회 등	
		09외국어교원연수	외국어교원연수	
		10특성화고교원연수지원	특성화고교원연수지원, 영농학생우수교사 해외연수, 특성화학과장장기파견연수, 전문계고국제화교육비	
		11체육교과교원연수운영	체육교사, 체육코치, 체육강사 연수비	
		12통합연수지원	유·초·중등교원 각종 통합교육지원	
		13교원연수운영지원	교원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4교원자격연수운영	교원자격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5교원직무연수운영	교원직무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6교원사이버연수운영	교원사이버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01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여비, 연수부담금 직원능력개발비,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지방공무원연찬회 등	
		02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경비	
		03지방공무원직무연수운영	지방공무원직무연수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운영	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경비
		04근로자연수운영		
			01근로자연수운영	교육공무직원 연수운영경비, 연수및워크숍
		<b>05교직원인사</b>		
		01교원인사관리		
			01교원임용시험관리	초중등신규교사임용시험관리비, 수석교사 등 선발시험관리비, 자격연수대상자 시험관리비, 기간제교사인력풀시험관리비(추가)
			02전문직임용시험관리	초중등전문직임용시험관리비
			03교원인사관리	초중등인사관리, 인사업무공청회비 등
			04교장초빙공모제운영	교장초빙공모제운영비
			05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06교원행사관리	스승의날행사지원, 광주교육상운영, 퇴직교원훈포장전수 등
		03순회교사제운영		
			01순회교사제운영	순회교사제운영비
			02농촌지역순회교원수당	농촌지역순회교원수당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01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비
			02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비
		05근로자인사관리		
			01근로자업무관리	근로자 인사·업무 관련 경비
			02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b>08교직원복지</b>		
		01교직원복지지원		
			01사망조위금및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및재난부조금
			02학교안전공제회지원	학교안전공제회지원비
			03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경비
			04영유아보육수당	영유아보육수당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5셋째아이상유치원학비지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 학비지원
			06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교직원예술제, 체육대회 등 지원비
			07교직원동호회활동지원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08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09장애인공무원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비
			10교원복지대여	교원 무이자·저리 대여 이차보전경비, 교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지방공무원복지대여	지방공무원 무이자·저리대여이차보전경비, 지방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
			12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운영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운영비
<b>02교수학습활동지원</b>				
	<b>01교육과정운영</b>			
		01교육과정운영지원		
		01교육과정편성운영		교육과정편성지침, 교육과정심의, 개정교육과정교원연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교과심의위원회운영,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지도,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경비
		02자율학교지정및운영지원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지원
		03돌아오는도심학교운영		프로그램운영비지원
		04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운영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운영
		05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운영
		06수준별이동수업내실화		수준별이동수업장학활동, 연수 및 홍보 활동비 등
		07창의인성교육지원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 창의인성모델 학교지원, 창의적발문 지도연수 등
		08사교육비경감대책운영		사교육비 경감대책 운영비
		09사교육없는학교인턴교사지원		인턴교사지원비
		10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예술교육과정 및 강사운영, 예술교육학습 보조인턴교사 등 지원
		11원어민교사운영		원어민보조교사지원, 해외원어민채용, 화상교사 워크숍
		12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여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13영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활동지원, 영어듣기능력평가비, 영어교사연수 등
			14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개발보급, 영어교사워크숍, 영어교육우수사례보고서 심사 등
			15영어체험캠프운영	영어체험캠프운영
			16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고교생영어한마당, 영어글쓰기대회, 생활영어인증제, 영어논술 대회 등
			17거점영어센터운영	거점영어센터프로그램운영비
			18영어친화적환경구축운영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비,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영어전용교실구축운영비, 거점영어 체험센터운영비, 전용교실우수사례공모전, 우수학교지원, 워크숍 등
			19제2외국어교육지원	제2외국어 위탁교육운영, 제2외국어교육지원
			20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개발보급, 부장회의, 각종세미나, 관련단체지원 등
			21과학실험연수운영	과학실험연수운영
			22과학분야연수운영	과학과개정교육과정연수, 발명관련연수, 과학과특수분야연수
			23과학인턴교사지원	인턴교사인건비
			24과학교실운영	초, 중과학교실, 상설과학실험교실,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운영, 과학탐구교실 등 운영
			25광주과학문화축제운영	광주과학문화축제운영비
			26과학전람회운영	과학전람회대회운영비
			27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비
			28과학경시대회운영	대회 관련 경비
			29과학탐구대회운영	학생동아리발표대회 등 탐구대회 관련 경비
			30과학의달행사	대회 관련 경비
			31기후환경교육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경비
			32과학교육체험관운영	체험관 운영비·재료비, 프로그램개발비 관련 경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33생물학습자료지원센터운영	생물학습자료지원 관련 경비
			34천체관측회운영	천체관측실운영비
			35광주과학축전운영	광주과학축전운영비
			36융합교육활성화지원	융합교육사업추진
			37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개발보급, 체육연구논문심사 등
			38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39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40학생건강체력평가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장비구입 등
			41초등학생수영체험학습지원	수영체험학습비
			42체육체험학습지원	체육체험학습지원 등
			43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	운영학교 워크숍, 교과교실지정경비, 컨설팅비
			44고교학점제운영	고교학점제운영지원
		03교육자료개발보급		
			01인정도서심의	인정도서심의경비
			02창의적체험활동교재개발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개발
			03지역교과과정교과서개발보급	지역교과과정 교과서개발보급비
			04보건교과서보급	보건교과서보급
			05중등인정도서개발	중등인정도서개발지원
		05특색교육과정운영		
			01평화통일교육운영	통일교재발간, 통일교육워크숍, 통일자문 위원회운영, 통일교육 여비, 탈북학생지원
			02역사교육강화	역사교육 관련 경비
			03혁신학교운영지원	혁신학교운영비지원
			04작은학교살리기	작은학교 살리기
			05학교문화혁신	학교문화혁신운영
			06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지원
			07어린이놀이권리보장	관련 위원회,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01	과학교육여건개선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2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학교운동장 조성 포함)
		03	고교학점제운영여건개선	고교학점제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4	교과교실운영여건개선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구축 (운영비 제외)
		05	기타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기타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b>02학력신장및평가</b>		
		01교실수업개선		
		01	수업연구내실화지원	수업개선, 수업나눔운동 등 수업연구지원사업비
		02학력향상지원		
		01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보충학습 경비, 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경비, 기초학력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경비 등
		02	행복한수학교육지원	행복한수학교육지원
		03학력평가관리		
		01	초등학생교과학습진단평가	자체진단평가
		02	중학생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중학생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03	고등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생전국연합고사비용
		04	내신성적관리및평가방법개선	내신성적관리및평가방법개선지원
		05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지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보정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학교 표창, 학력향상 중점학교 컨설팅 등
		06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비
		<b>03장학및연구</b>		
		01현장중심장학지원		
		01	찾아가는장학컨설팅제운영	장학위원제운영, 중등교과별 장학위원제운영, 대학연계장학자문위원제 운영, 시민 장학자문 위원제운영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초등장학활동지원	장학계획수립, 설명회, 장학지도, 고마우신 선생님제운영, 수업스타선생님연수
			03중등장학활동지원	장학계획설명회, 장학지도, 감동수업 우리 선생님, i-사랑 선생님 워크숍
			04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 수당,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운영비지원, 연찬회, 워크숍경비 등
		03연구시범학교운영		
			01연구시범학교운영	시범학교지정운영관련행정경비, 현장연구지원 컨설팅단운영
			02유치원시범학교지원	유치원시범학교지원비
			03초등교육시범학교지원	초등교육시범학교지원비
			04중등교육시범학교지원	중등교육시범학교지원비
		04교육연구운영지원		
			01교수학습자료개발	교수학습자료개발
			02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03광주교육자료관운영	자료관운영비
			04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자생적연구동아리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지원, 광주교대-광주부설초공동연구지원, 초등교과 아카데미활동지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01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경비, 자료 제작 지원,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등
		<b>06유아교육</b>		
			01유아교육운영	※사립유치원 제외
			01유치원장학활동지원	모니터링,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선정, 장학위원 수당, 유치원 운영계획설명회 등
			02유아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자료개발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운영
			03종합컨설팅단운영지원	종합컨설팅단운영지원
			04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발달지원, 다문화유아지원
			05유초연계멘토운영	유초연계멘토운영비
			06유아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교재교구개발전시회, 동화구연대회 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7유치원평가	운영비, 보상금
			08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유아교육체험영역 운영
			09유아교육지원	교재교구대여, 멀티미디어 제작, 도서관운영
			10교류체험지원	교류체험지원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 제외
		01돌봄유치원운영지원		돌봄유치원운영지원비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립유치원 제외
		01유치원교재교구확충지원		교재교구비, 교사도우미로봇활용교육
		02유치원환경개선지원		실내외종합놀이기구지원, 유치원CCTV설치, 유치원환경개선지원 (단설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편성)
		04사립유치원지원		
		01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02사립유치원운영비보조		사립유치원운영비보조
		03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04사립유치원유아교육과정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편성운영, 교육자료 개발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05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등
		06사립유치원교재교구확충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
		07사립유치원환경개선지원		사립유치원환경개선지원 등
		07특수교육		
		01특수교육운영		
		01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장학협의회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 특수학급자율장학협의회운영비
		02특수교육과정운영지원		특수교육자료개발, 운영계획수립, 홍보리플릿, 특수학교 1인1악기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지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통합교육활동 지원 등
		03특수학교종일반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특수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전국장애학생 직업경진대회, 장애인의날 행사비
			05특수학교(급)직업교육지원	직업교육비
			06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07특수교육센터운영	운영요원(사회복지사, 순회강사, 인턴교사등) 인건비, 운영물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
			08특수교육대상자선정및배치	특수교육대상자심사, 평가, 심사위원회운영
			09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비
		03특수교육복지		
			01특수교육대상자치료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02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통학비 지원
			03특수교육보조원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연수비, 사회복지무요원(장애학생활동지원)인건비 등
			04특수학교방과후교육지원	특수학교(급)방과후교육활동지원
		04특수교육여건개선		
			01특수교육여건개선	특수학교(급)환경개선지원
	<b>08영재교육</b>			
		01영재교육운영		
			01영재교육운영지원	영재판별도구개발, 장학자료개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운영
			02영재교원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 워크숍비용
			03초등학생영재학급운영	초등학생영재학급운영
			04중학생영재학급운영	중학생영재학급운영
			05고등학생영재학급운영	고등학생영재학급운영
			06초등학생영재교육원운영	교재개발비, 영재교육대상자선발비, 지도교사수당
			07중학생영재교육원운영	일반 운영비, 교재 개발비, 영재교육대상자선발비, 지도교사수당, 외부강사수당 등
			08IT영재교육원운영	대상자선발비, 교재개발비, 프로그램구입 등
			09문화예술교육원운영	대상자선발비, 강사수당, 발표대회경비 등
			10광주과학영재학교운영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관련 경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b>09독서교육</b>			
		01독서논술교육운영		
		01독서교육활성화지원		독서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02독서교육관련대회운영		독서논술 경시대회, 독서 토론대회, 빛고을사이버독후감대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운문산문쓰기대회, 양성평등 글짓기, 독서퀴즈대회, 국어사랑실천대회
		03토론논술교육활성화지원		토론논술교육활성화지원
		04e-NIE활용학교지원		e-NIE활용학교지원
		02학교도서관운영		
		01학교도서관리모델링지원		리모델링비, 환경개선비
		02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서연수비, 도서관활용수업방법일반교사연수, 학교도서관활용체험교실, 학교도서관축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연수
	<b>13직업교육</b>			
		01 직업교육운영		
		01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건설팅지원, 인정도서개발 등 ※ 특성화고 장학금은 '(세부)특성화고장학금 지원'에 편성
		02특성화고해외인턴십지원		특성화고학생해외인턴십지원
		03특성화고교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실무형실습 교재개발, 교수-학습연구대회운영, 직업교육유공교원 발표대회, 직업교육종합 실천발표대회
		04기능경기대회지원		훈련비, 출전경비
		05전국FFK전진대회지원		전국FFK전진대회지원비
		06기술가정경진대회지원		기술가정경진대회 운영비 등
		07기타행사지원		기능영재반육성지원, 전문계고교생사장되기 창업대회,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 등
		08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09특성화고개편지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10마이스터고교육과정운영지원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관련 경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11마이스터고교육환경지원	기숙사 비품비, 기타교육환경개선비 등
			12일반계및자율고교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초중고 진로연계교육, 일반계고직업과정운영지원, 직업교육체험학습, 광주직업교육넷 운영 등
		04취업역량강화		
			01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지원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 광주직업교육발전위원회운영
			02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	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
			03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	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비
			04특성화고창업지원사업	전문계고 창업동아리지원비
			05특성화고학교기업지원	전문계고 학교기업지원비
			06특성화고취업지원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05직업교육환경개선		
			01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체제개편 지원 및 기자재 확충비 지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b>14학교정보화</b>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01학교정보화기기보급	증설학급컴퓨터보급, 증설학급프로젝션TV보급, 증원교사노트북보급, 노후정보화기기보급
			02교육기자재수리정비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비
			03학교인터넷망고도화	IPTV설치비
			04학내전산망구축지원	신설및증설학교 학내전산망구축비
			05전산망유지보수비	전산망유지보수비
		03ICT활용교육지원		
			01건전한정보문화조성추진	빛고을넷사랑운동, 사이버실천대회운영비
			02정보역기능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저작권침해예방교육
			03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비
			04교실수업강화교원연수운영	ICT활용수업기본과정, 수업심화과정, 소양과정, 학교관리자 교육정보화리더십연수, 우수교원 인턴십연수 등
			05원어민화상클센터운영	운영비, 원어민화상수업지원 등
			06ICT활용수업연구교사제운영	자문단운영, 세미나 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7교육정보화경진대회운영	광주교육정보대상, ICT활용경진대회
			08광주교육포털시스템운영	광주교육포털시스템운영
			09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10소프트웨어교육지원	소프트웨어교육지원
			11ICT연계교육운영	맞춤형ICT교육운영
			12사이버가정학습빛고을샘운영	사이버가정교사수당, 연수비, 사이버 가정학습콘텐츠개발비, 유지보수비, 사이버가정학습홍보비 등
			13영상자료제작지원	학교인터넷방송 웹호스팅운영, 현장지원 영상자료제작, 학교방송지원, UCC 동영상 공모전
			14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운영	온라인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15IPTV활용교육서비스	IPTV활용교육서비스지원
			16스마트교육경비	클라우드 기반조성 등 스마트교육 관련 경비
			17SW교육장학활동지원	SW교육장학활동지원
		<b>17특별활동지원</b>		
		01문화예술교육활동		
			01문화예술교육장학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연수비, 문화예술 교육실천사례발표회, 학생종합예술제 유공교원실천사례발표, 장학자료개발비
			02문화예술특성화학교지원	특성화학교부서 선정비, 특성화학교지원, 특성화부서지원, 문화예술 자기표현활동 지원, 소규모학교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등
			03문화교실구축및운영지원	문화교실구축비, 선도학교지원비
			04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학생동아리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05문화예술동아리활동지원	고등학교문화예술동아리축제추진운영비
			06장학금지원	문화예술영재장학금
			07교직원예술제추진	교직원예술제추진
			08문화예술교육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연수 운영
			09광주교육문화벨트조성	광주학생예술누리터 1관 운영 및 2관 건립 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 각종체육활동		
		01	팀창단비지원	초,중,고 팀창단비지원비
		02	육성종목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3	꿈나무선수육성지원	꿈나무선발비, 훈련비
		04	전국소년체전대표선수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5	전국체전대표선수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동계체전포함
		06	전국장애학생체전대표선수 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7	체육코치인건비	체육코치인건비
		08	체육특기자선발	체육특기자선발, 관련 위원회 운영 등
		09	전국규모대회출전지원	전국규모대회출전지원
		10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즐거운학교 만들기동아리클럽운영지원
		11	각종체육대회지원	교육감배체육대회운영비, 각종대회 보조
		12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체육대회출전비
		13	전국체육대회출전우수자지원	선수장학금, 지도자 입상포상금, 체험연수 등
		14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출전지원
		15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비
		16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우수자지원	선수장학금, 지도자 입상포상금, 체험연수 등
		04 학생단체활동		
		01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지원
		02	학생수련요원인건비지원	수련지도사인건비, 근로자(조리원)인건비, 수련 활동보조원 인건비
		03	학생수련시설관리및유지보수비	수련시설관리비, 수련시설유지보수비
		04	현장체험학습운영지원	현장체험학습운영지원
		05	리더십배양과정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6	학생수련활동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7	특성화수련프로그램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8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연수 운영 등
		09	학생봉사활동지원	학생봉사활동지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b>19학생생활지도</b>		
		01학생생활지도지원		
		01인권교육운영		우수사례발간, 심사비, 인성인권교육비
		02준법정신강화교육운영		기초질서지킴이우수교지원, 바른생활습관 길잡이자료개발보급, 교통안전교육비
		03자랑스런광주학생상제운영		자랑스런광주학생상제운영
		04애국애향정신계승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지원비 등
		05학생자치활동지원		학생의회설치운영
		06민주시민교육운영		민주학교 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
		07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		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 선도학교운영
		02성폭력예방교육등		
		01양성평등교육지원		학생성인지감수성교육, 성교육담당교사연수, 성인지감수성향상교직원연수, 성교육및정책 전문가협의체운영 등
		03학교폭력예방및교육		
		01학생생활지도관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교외지도증인쇄, 각종회의비, 각종우수사례집발간, 교외지도여비, 학교폭력예방협의체운영
		02생활지도교원연수지원		생활지도교원연찬회,교감연찬회, 폭력예방 집중연수, 전문상담교사연수, 학부모연수 등
		03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04학교안전망구축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운영
		05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비, 인건비
		04학생상담활동		
		01학교생활지원센터(Weecenter)운영		학교생활지원센터(Weecenter)운영비
		02Wee클래스운영		Wee클래스운영비 지원
		03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지원
		04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5주간보호형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운영	주간보호형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센터운영, 위탁기관 운영 및 지원비
		05학생안전관리		
		01학생안전교육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및평가
		02학생보호인력지원		학생보호인력 지원
		03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비
		04안전사고예방지도		안전사고예방지도
		05안전시설설치및운영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시설운영, 스쿨존관리 등
	<b>20대안교육</b>			
		01대안교육운영		
		01금란교실운영비지원		금란교실운영비지원
		02Wee스쿨운영비지원		Wee스쿨운영비지원
		03대안위탁교육기관운영		대안위탁교육기관운영
		04미취학및무단결석학생지원		미취학 및 무단결석학생지원
	<b>22진로진학교육</b>			
		01진로진학교육운영		
		0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02진로교육활성화		진로교육활성화
	<b>25학생선발배정</b>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01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02고교입시관리		전형요강인쇄, 각종심사수당, 업무보조원인건비, 전산처리용역비 등
		02대학수학능력시험		
		01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b>03교육복지</b>			
		01학비지원		
		01교육비지원		
		01교육비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024대교육비시스템운영비지원		4대교육비시스템운영비 지원
		03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지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05장애유아무상교육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04교육급여지원		
			01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b>02방과후과정및돌봄교실</b>		
		01방과후학교운영		
			01방과후학교사업지원	방과후학교전담인력인건비, 방과후학교운영비
			02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운영비,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비, 인건비등
			03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 워크숍, 농촌지역방과후학교지원
			04대학생멘토링제운영	멘토선발 및 연수비, 멘토비 지원
			05엄마품멘토링운영	엄마품멘토링운영비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01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경비
		04돌봄교실운영		
			01돌봄교실운영	보육강사수당, 운영비,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제작비
			02돌봄교실성평등교육지원	돌봄교실성평등교육지원 운영 등
		<b>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b>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01소규모학교학생지원	소규모학교학생지원비
		02기숙형학교운영		
			01기숙형학교지원	기숙형학교지원비
		<b>09교육복지지원</b>		
		01교육복지우선지원		
			01교육복지추진지원	관계자 연수,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등 교육복지지원사업 추진 경비
			02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민간단체지원비
			03희망교실운영지원	희망교실운영지원
			04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지원	장학금, 심사비, 운영비 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급식비지원		
		01무상급식지원		무상급식지원비, 친환경우수식재료지원 등
		02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지원		재단법인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출연금지원
		03토공휴일급식비지원		토·공휴일 급식비
		03정보화지원		
		01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컴퓨터, 통신비지원 등
		04누리과정지원		
		01만3~5세아무상교육비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반비 등)
		02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05교과서지원		
		01국정교과용도서대금		국정교과용도서대금
		02의무(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지원		의무(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비
		06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01다문화가정장학활동지원		다문화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다문화연수비 등
		02다문화가정자녀지원		다문화가정캠프, 단체지원, 멘토링지원 등
		03탈북청소년지원		탈북청소년지원
		07기타교육복지지원		
		01기타교육복지지원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b>04보건급식</b>				
	<b>01보건관리</b>			
		01학교보건관리		
		01학교보건장학활동지원		각종지침, 장학자료개발보급, 워크숍비용, 보건협의회운영, 유공자표창 등
		02학교보건실현대화지원		학교보건실현대화지원
		03학생건강검사지원		건강검사표본학교지원
		04학생건강프로그램운영지원		건강캠프, 구강교실, 아토피피부염완화교실, 파랑새희망교실운영 등
		05학교흡연예방사업		흡연예방교육사업, 금연학교 운영 등을 위한 관련 경비
		06학생전염병관리		학생전염병관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학교환경위생관리		
			01교사내환경위생관리	미세먼지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방역 등 교사내환경위생관리 사업을 위한 관련 경비
			02학교먹는물시설개선지원	학교먹는물시설개선지원비
			03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비
		03산업안전보건관리		
			01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 산업안전 보건교육 운영,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경비 등
		<b>02급식관리</b>		
		01학교급식운영		
			01학교급식위생관리	급식학교검사경비, 점검단운영 등
			02학교급식운영지원	관계자 교육 및 설명회경비, 급식위원회경비, 학교급식전담직원대체 인건비 등
		03학교급식환경개선		
			0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노후급식기구 교체, 위생관리시스템 지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등
		<b>05학교재정지원관리</b>		
		<b>01학교운영비지원</b>		
			01학교운영비지원	
			01학교기본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b>02사학재정지원</b>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 인건비보조금
			02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03사립학교교직원성과상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04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01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지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6학교시설여건개선				
01학생배치시설				
01학교신증설				
			01유치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2초등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3중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4고등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5특수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6유치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7초등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8중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9고등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10특수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11학교이전신축재배치	학교이전신축재배치에 따른 제반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이전비품비 등
			12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13각종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b>02학교시설개선</b>		
		01학교시설확충		
			01유치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유치원시설 증개축비
			02초등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초등학교시설 증개축비
			03중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중학교시설 증개축비
			04고등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고등학교시설 증개축비
			05특수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특수학교시설 증개축비
			06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02학교시설환경개선		
			01유치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2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3중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4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5특수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6각종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7초등학교화장실개선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비
			08중학교화장실개선	중학교 화장실 개선비
			09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11학교시설물긴급복구	재해발생학교 추가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공사비
			12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운용을 위한 기금
			13그린스마트스쿨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14학교안전지원및운영	학교안전지원 시설비 및 운영 경비(수목관리 지원, 공사감독지원, 학교 안전점검추진 등)
	<b>01평생교육</b>			
	01평생교육운영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01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시설지도감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03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등		
			04학원관리	교습비조정위원회, 학원업무자료, 학원설립 등 경비, 학원연합회연수지원비 등		
			05학원지도	학원단속지도비, 각종위원회, 소송비용 등		
			06공익법인관리	공익법인 관리 및 지도비		
			07학력인정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학력인정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02평생학습운영		
				01평생교육활동지원	평생교육발전자문단 운영, 연수비, 평생교육관계자회의, 평생학습회비 등	
					02청소년및사회단체지원	청소년 및 사회단체 지원비
					03문화강좌운영	도서관 문화강좌
					04청소년강좌운영	방학중청소년강좌운영, 청소년특강 등
					05지역평생교육운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해교육 지원, 학부모아카데미운영, 장수대학 운영,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다문화 가정문화체험교실운영, 성인문해한글교실운영, 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운영, 희망사랑나눔독서 지원 등
					06평생학습박람회지원	평생학습박람회 지원비
				03방송통신중고운영		
					01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통신중고 운영경비
				04검정고시운영		
					01검정고시관리및운영	검정고시 관리 및 운영경비
				02독서문화		
					01도서관운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비, 각종 여비, 휴일대체인건비, 공익요원인건비 등
			02도서관관리지원	도서관관리비품, 자산취득비, 야간학습지도 특근매식비, 도서관보수, 전산용품 등
			03전산실및디지털자료실운영	홈페이지유지, 전산장비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04간행물관리	간행물관리비
			05도서관주간및독서의달행사	모범이용자, 다독자표창, 이용자간담회 등
			06독서의생활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별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비
			07자료확충비	자료확충비
<b>02교육행정일반</b>				
		<b>01정책기획및비상계획</b>		
		01교육정책기획관리		
			01주요업무수립및관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주요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평가
			02교육정책개발관리	교육정책개발관리 경비
			03교육정책추진	교육정책 추진 경비
			04교육감협의회의운영	교육감협의회의운영
		03교육정책홍보		
			01광주교육홍보물제작지원	영상물제작, 홍보간행물제작, 교육소식지발간 등
			02광주교육홍보활동지원	PCRM문자서비스, 홍보활동경비 등
			03광주교육만족도조사	광주교육 만족도조사 경비
			04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교육공보활동지원비
		04비상대비계획운영		
			01비상대비업무추진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02을지태극연습추진	을지태극연습추진
			03민방위업무관리	민방위관리업무비
			04재난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b>03감사법무관리</b>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감사관리		
			01자체감사활동지원	특별사안·종합·부분·퇴직전 감사경비
			02국정감사	국정감사 수감 경비
			03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경비
			04청렴시책추진	청렴시책 추진 경비
		02법무관리		
			01내부자치법규관리	규제개혁 및 내부규제 정비, 자치법규정비 등
			02소송관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
			03소청및행정심판관리	소청심사위, 행정심판 비용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01시도교육청평가	시도교육청평가운영비
			02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평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가운영비
			03학교평가준비지원	학교평가위원선정, 평가위원연수(워크숍), 평가편람인쇄비, 평가위원회협의회, 학교평가사업추진 시도분담금 등
		02조직및성과관리		
			01조직문화및업무개선지원	조직문화개선, 업무개선에 필요한 경비
			02성과관리시스템운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등
			03조직및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한 관련 경비
		03행정개선활동지원		
			01공무원제안제도운영	공무원 제안제도운영비
			02국민제안제도운영	국민 제안제도운영비
			03교직원업무경감	교직원업무경감
			04적극행정운영	적극행정 업무추진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등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01의회협력		
			01시의회업무지원	시의회 업무협력지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선거관리		
			01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 교육감 선거 필요경비
		<b>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b>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
			02교무업무시스템운영	교무업무시스템운영비
			03차세대나이스시스템구축	차세대나이스시스템구축비
			04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05맞춤형통계시스템운영	맞춤형통계시스템운영비
			06업무관리시스템운영	업무관리시스템운영비
			07업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	업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08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비
			09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유지보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유지보수비
			10기타시스템운영	기타시스템운영비
			11정품S/W관리및운영	정품S/W 관리및운영비
			12주전산실운영	주전산실운영비
			13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	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비
			14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관리비
			15교육정보서비스재해복구체계운영	교육정보서비스재해복구체계구축·운영비
		02정보보안관리		
			01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비
			02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01기록물관리	문서관리용품, 연수, 생활기록부D/B관리 등
			02학교정보공시제운영	학교정보공시제운영비
			03행정정보공개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비
			04행정자료실운영	행정자료실운영비
			05교육통계연보발간	교육통계연보발간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01민원실운영	민원실운영비
			02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b>13예결산관리</b>			
	01예산관리			
			01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02교육비특별회계예산관리	교특예산편성, 분석, 자료조사 등
			03교육재정효율화운영	교육재정효율화운영
			04성인지및성과주의예산	성인지 및 성과주의예산 관련 경비
			05학교회계제도운영	학교회계제도운영
			06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02결산관리			
			01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b>14재무관리</b>			
	01재무회계관리			
			01계약관리	계약관리
			02지출업무협의체운영	지출업무협의체운영
			03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01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02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03물품관리	물품관리
			04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05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b>15학생배치계획</b>			
	01학생배치계획관리			
			01학교배치계획추진	학교배치계획추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학교설립추진	학교설립추진
			02적정규모학교육성	
			01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추진
		<b>16사학기관관리</b>		
			01사학기관지도지원	
			01법인업무지원	법인지원, 사학기관평가포상금
			02사립학교재정관리	사립학교직원교육훈련 등
		<b>17교육협력</b>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01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 경비
			02학부모연수및홍보	학부모연수 및 홍보 경비
			03학부모및지역주민교육지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교육활동 경비
			02교육협력관리	
			01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 경비
			02교육기부활성화지원	교육기부 활성화사업비 등
			03공유촉진지원	공유촉진 관련 사업
			04대학교육협력지원	대학교육협력지원비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01국제교류학습지원	국제교류학습지원
			02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 추진사업비
		<b>18시설사업관리</b>		
			01시설사업운영	
			01시설사업추진지원	시설사업추진지원, 시설부대비
			02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민간투자사업 운영 경비
			03그린스마트스쿨운영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비
		<b>20특별교육재정수요</b>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b>21교직원단체관리</b>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교직원단체관리		
			01교직원단체업무추진	교직원단체 업무추진 관련 경비
			02공무원단체업무추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관련 경비
			03근로자노조업무추진	근로자노조 업무추진 관련 경비
<b>02기관운영</b>				
	<b>01기본운영비</b>			
		01기관기본운영비		
			01본청공통기타사업비	직원수첩,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각종 행사지원 등
			02본청기관운영비	본청기관운영비 ※ 각 기관(부서) 자산취득 경비는 '(세부)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편성
			03본청부서운영비	본청부서운영비
			04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05교육지원청부서운영비	교육지원청부서운영비
			06교육지원기관운영비	교육지원기관운영비
			07도서관기본운영비	도서관운영비
	<b>02교육행정기관시설</b>			
		01기관시설유지관리		
			01본청시설관리	본청시설관리
			02지역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03교육지원기관시설관리	교육지원기관시설관리
			04교육지원기관시설신축	교육지원기관시설신축
			05직속기관시설감리	직속기관시설관리
			06교육지원기관시설증축	교육지원기관 증축 관련 시설사업비
<b>03재무활동</b>				
	<b>01지방채상환및리스크</b>			
		01지방채상환		
			01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민간투자사업상환		
			01BTL사업운영비	민간투자사업운영비
			02BTL사업시설임대료	민간투자사업임대료
		03일시차입금관리		
			01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이자
		<b>04내부거래지출</b>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02기금전출금		
			01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03예탁금		
			01예탁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예탁하는 자금
		04예수금원리금상환		
			01예수금원리금상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상호간 자금의 원리금 상환
		<b>05예치금</b>		
		01예치금		
			01예치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b>01예비비및기타</b>		
		<b>01예비비및기타</b>		
		01예비비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예산총액의 1% 이내)
			02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편성한도 없음)
		02제지출금등		
			01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2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내부유보금		
			01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b>01인건비</b>				
<b>01공무원인건비</b>				
<b>01교원인건비</b>				
01보수				
02공무원법정부담금				
03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명예퇴직수당				
05맞춤형복지비				
<b>02지방공무원인건비</b>				
01보수				
02공무원법정부담금				
03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명예퇴직수당				
05맞춤형복지비				
<b>03교육전문직원인건비</b>				
01보수				
02공무원법정부담금				
03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명예퇴직수당				
05맞춤형복지비				
<b>02근로자인건비</b>				
<b>01계약제교원인건비</b>				
01계약제교원보수				
02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03계약제교원퇴직금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01	계약제근로자보수	지방공무원출산휴가 등 행정대체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등 포함)
		02	계약제근로자법정부담금	계약제근로자 법정부담금
		03	계약제근로자퇴직금	계약제근로자퇴직금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01	교육공무직보수	교육공무직보수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등 포함) ※ 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포함 ※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02	교육공무직법정부담금	교육공무직법정부담금
		03	교육공무직퇴직금	교육공무직퇴직금





---

## 예산의 성과계획서

---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1.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근거

- 「지방재정법」개정('14.5월)으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영 법제화
  -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법 제5조제2항)
  -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 의회 제출(법 제44조제1항)
  - 성과보고서를 결산서 구성 서류로 작성·제출(「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 '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작성('15.4~6월)

### 2 성과계획서의 개념

-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시도교육청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반영
  -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3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

- 성과계획서 총괄 작성 및 예산 사업구조와 연계 강화
  - 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 명칭을 모든 기관(부서)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총괄 작성
  - 성과관리 목표체계(성과목표-단위과제)와 예산 사업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두 체계가 일치되도록 노력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성과목표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 성과지표의 품질향상을 위해 성과목표-단위과제별로 성과지표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
  - 예산부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 ※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안)에 대하여 내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관리는 K-에듀파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성 추진

## 4 작성대상 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시도교육청 본청
- 대상업무: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지방채상환및리스크, 내부거래지출),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등, 내부유보금), 인건비,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의 행정운영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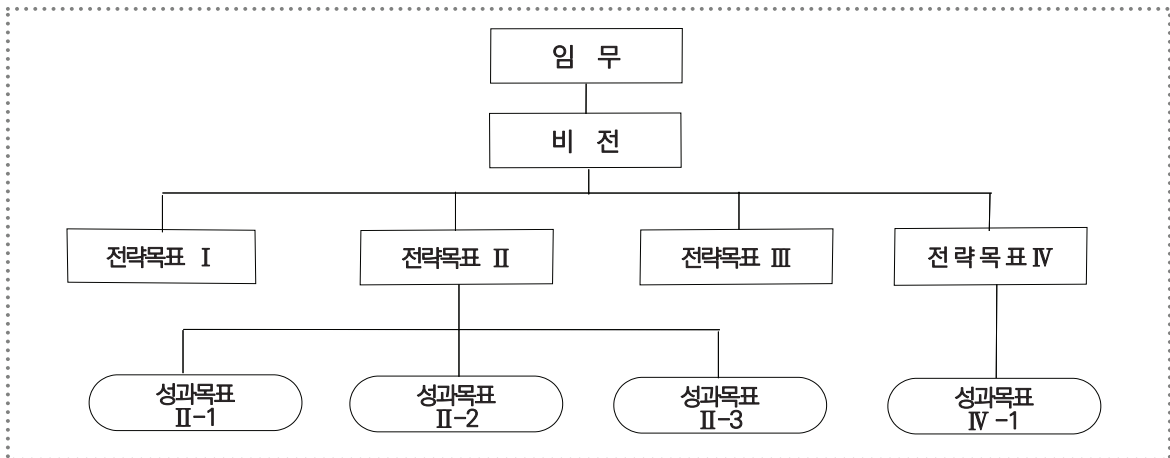
## 2.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1 기본방향

-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성과목표체계 제시
-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연계하여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

### 2 목표체계 수립방법

〈 성과계획 목표체계도(예시) 〉



#### 1. 임무 설정

- 임무는 시도교육청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시도교육청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시도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포괄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지향적 이어야 함

## 2. 비전 설정

- 비전은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
- 비전설정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 ※ 단순한 전략의 나열 또는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지양

## 3. 전략목표 설정

- 교육정책목표,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성은 명확해야 함
-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예)“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재정운용 성과 예측 또는 성과목표 설정이 곤란
    - (예)“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실국(부서)의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특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 시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내용을 반영
- 전략목표의 수는 시도교육청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 4. 성과목표 설정

-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또는 성과목표와 단위과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단기간(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성과목표는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불명확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성과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에 노력

#### 5. 단위과제 설정

-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단위과제는 예산체계상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

※ 예산체계상 세부사업의 일부가 단위과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부만 분리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단위과제와 세부사업간 1:1 또는 1:N의 내용 전부 일치하는 향후 예산사업 구조화를 통하여 개선

### 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지표수는 적정수로 하되, 향후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사업체계의 일치 노력을 통해 지표수를 3개 내외로 축소
  -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결과중심적 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예) 홍보사업: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①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text{○○○서비스 이용자 수} / \text{○○○서비스 이용자 목표치}) * 50 + (5\text{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 / 5) * 50$

②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명	성과지표명
① △△△ (100억)	■ △△△ 수혜인원 수
	■ △△△ 시스템 안정도
② ▲▲▲ (150억)	■ ▲▲▲ 이용자
	■ ▲▲▲ 프로그램 이용자 수

⇒ 단위과제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③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 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④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시) ○○○ 개선사업

지표명	측정산식
예산집행율(%)	$(\text{당해연도 집행액} / \text{당해연도 예산현액}) \times 100$

⇒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개선 후의 실적) 의미있는 산출지표로 ○○ 개선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 개선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⑤ 정량적 사업실적을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개별구간으로 재환산하여 최종 성과를 측정한 지표의 경우

(예시) ○○○ 회의 개최 횟수

1~15회 60점, ~20회 70점, ~30회 80점 : 목표치 80점 ⇒ 개선: 목표치 30회

⇒ 인위적으로 구간화할 필요 없이 원래의 측정 수치를 그대로 사용

## 2.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 ① 임무·비전 및 전략목표·성과목표 확인
  - 지표 개발에 앞서 시도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 ② 성과지표의 수집
  - 기존지표와 타 기관 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 다른 사업의 모범지표 사례가 없거나, 선진사례를 통한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른 적절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 사용은 지양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4 작성방법

- 다음의 작성모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 성과계획서 작성모델 〉

####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1. 임무와 비전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 제2장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2. 세부 성과계획

※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 양식 참조

### 3.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9월말, 해당 부서)
  - 소관 예산에 대한 '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예산 및 성과관리 부서)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10월, 예산부서 ↔ 각 부서)
  -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 지침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 ※ 전체적인 성과계획 목표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각 부서는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보완
- 성과계획서 검토 및 의회제출(안) 확정 (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지방의회 제출 (11월, 예산부서)
  - '24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 ('23.12월~'24.1월)
  -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 하여 「'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확정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 ('24.1월~12월)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성과보고서 작성 ('24.3월 ~ 5월, 시도교육청)
  - 결산서 작성과 연계하여 작성 ※ 지침 별도 통보

붙임 1. 성과계획서 작성서식 1부. 끝.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 ○ ○ 교 육 청

## 목 차

###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1. 임무와 비전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 제2장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2. 세부 성과계획

※ 붙임 1-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부.

1-2.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1부.

## 제1장

## 성과계획 목표체계

### 1. 임무와 비전

#### 임무와 비전

임무(Missio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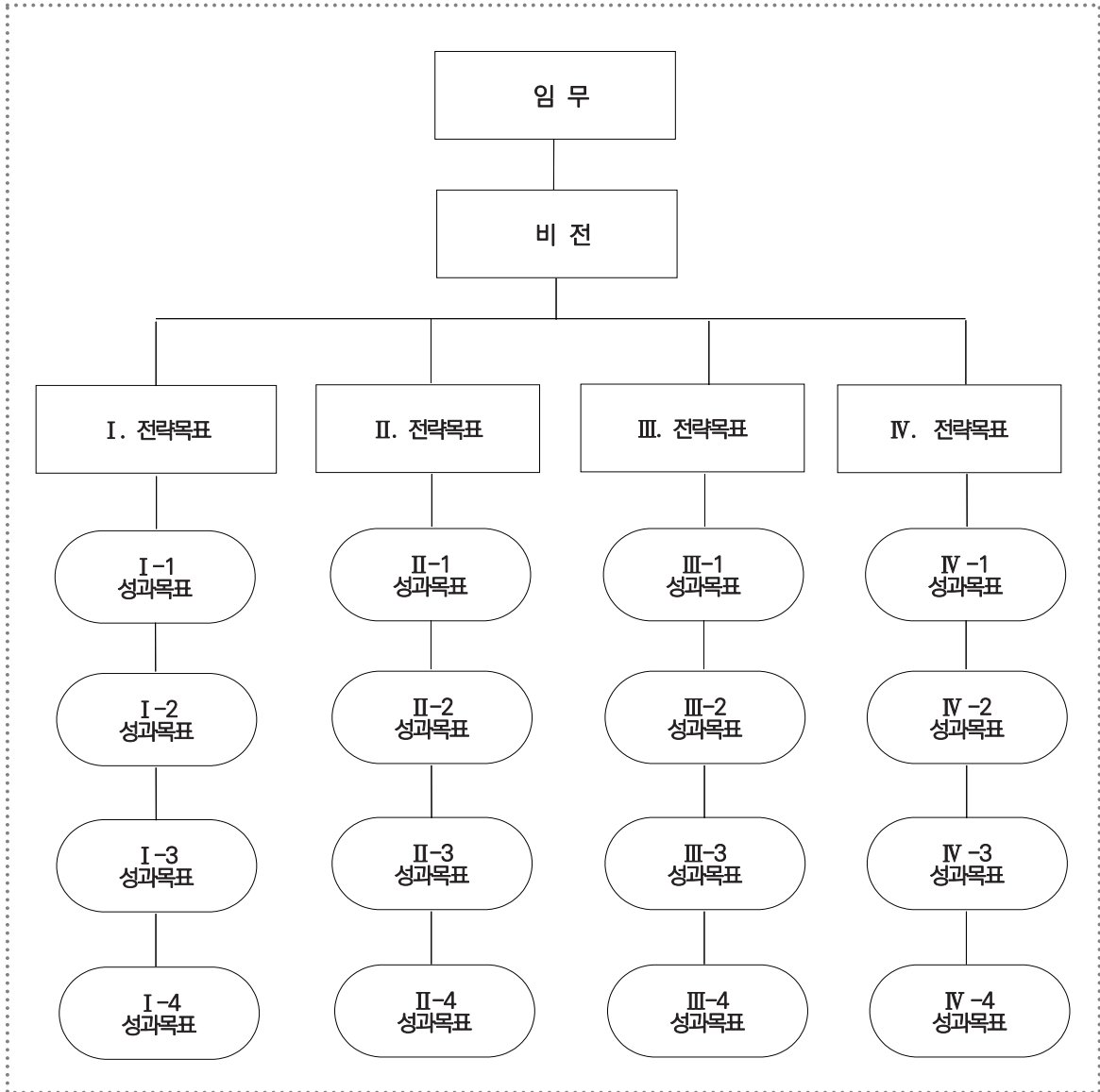
○

비전(Vision)

○

○

##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 해당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임무→비전→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체계도는 그림 또는 표형태로 구성)

###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 □ 조직

○

※ 실·국·과 현황 및 조직도 표기

#### □ 인원

○

※ 전체 인원 및 직급별 현원 표기

#### □ 교육재정 현황

○ 성과관리대상/ 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4년 예산 (C)	'23년 예산 (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E+J	E'+J'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				
	소계(A)	(E)	(E')	(F=E-E')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G)			
	기본경비	(H)			
	...				
	예비비	(I)			
	소계(B)	(J)	(J')		



## 제2장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 가. 재정여건

○

-

## 나. 재정전망

○

-

※ 해당 교육청의 2024년도 재정전망을 간략히 기재

##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

○

-

○

-

※ 해당 교육청의 2024년도 전체적인 재정운용방향을 기재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 : 개, 천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예산액		
			'24년	'23년	증감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단위 : 천원, %)

전략목표명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비중
I.	I-1.	①		
		②		
		:		
	I-2.	①		
		②		
		③		
:	:			
II.	II-1.	①		
		②		
		:		
	II-2.	①		
		②		
		③		
:	:			
III.	III-1.	①		
		②		
		:		
	III-2.	①		
		②		
		③		
:	:			
:	:			
합계				

※ 예산액은 성과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 사업의 예산액

## 2. 세부 성과계획

## 전략목표 I

## 기 본 방 향



- 
- 



- 
- 



- 
-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전략목표 수준에서 당해연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단, 주의할 점은 성과목표별로 기술한 세부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여 동 내용이 본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당해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성과목표들과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성과목표별 정책 우선순위 등 기재

## I-1. 성과목표

### ※ 성과목표명 기재

#### (1) 주요내용

□

○

-

-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① 성과지표명	0.6	목표	-	신규			측정산식만 간단하게 기재. 구체적 사항은 아래표에 자세히 기재 ○○○ = A / B	
		실적	-	-				
② 성과지표명	0.4	목표						
		실적						

- '22년은 실적치, '23년은 추정치, '24~'26년은 목표치 작성
- 성과지표별로 가중치를 두어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예,가중치합=0.6(지표1)+0.4(지표2)=1]
- 실적 및 목표치 : 빈칸의 경우에는 '-'표기, 신규일 경우 '신규'로 표기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① 성과지표명

○ 측정산식 : ○○○ = A / B (A와 B에 대한 설명)

#####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4.1.1~'24.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총 ○○개) 혹은 샘플 500개 조사 등

\* 만족도조사 지표의 경우, 조사대상, 조사항목, 평점부여 방식 등을 추가 작성

- 평점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 기재(예,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외부환경 대비
- 개선사항 대비

#### ② 성과지표명(하향지표)

## 〈 작성요령 〉

※ 성과목표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1개 이상 설정

## 1) '23년 실적은 추정치로 제시

- '24년 수정 성과계획서 제출시기('24년 1월)에 '23년 실적치로 변경 제시

## 2) '24~'26년 목표치는 다음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과의 비교

- 과거 추세치(과거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를 고려한 후, '24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개선 사항 반영

## 3) '24~'26년 목표치 설정근거는 과거 추세치 대비 ± 0% 조정, 유사사업·중장기계획 대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계획상 중장기 목표치에 대해 정량적 수치, 근거 및 달성 전략 기재

## 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또는 방법을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5) 목표치(및 실적치)의 수치가 작아질수록 성과가 개선되는 하향지표의 경우는 성과지표명 옆에 '(하향지표)'임을 기재

- 하향지표의 예 : 범죄예방사업의 '국민신고신속처리도(초)

- (참고)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text{실적치} - \text{목표치}) / \text{목표치} \}] * 100$

## 6) 성과지표 실적치 산정시 측정되는 자료의 측정대상기간 및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예정)을 명확하게 기재

## 7)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I-1-① 단위과제

※ 단위과제명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 단위과제명은 예산체계상 세부사업명과 1:1, 또는 1:N으로 연결하고 포괄하여 작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

○ 주요내용

-

-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 (c)	'23년 예산 (c')	증감 (c-c')
I-1-① 단위과제명	$a+b$	$a'+b'$	
■ ○○세부사업명	$a$	$a'$	
■ △△세부사업명	$b$	$b'$	

- ※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본 예산액으로 작성하고, '24년 예산 확정 이후 수정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최종 예산액으로 수정

## 붙임1-1

## 성과지표 현황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4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 (전략목표명)								
	I-1.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성과지표별로 달성치를 측정한 실제방법(산식) 제시		정성/ 정량	(투입,과정, 산출,결과) 중 선택		
		②성과지표명						
	I-2.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②성과지표명						
	I-3.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②성과지표명						
전략목표 II : (전략목표명)								
	II-1.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②성과지표명						
	II-2.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②성과지표명						
	II-3. 성과목표명	①성과지표명						
		②성과지표명						

※ 하향지표의 경우 비고란에 '하향지표'라고 표기

**붙임1-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성과목표관리체계		예산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과제코드	단위과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총 계							
전략목표 I :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I-1 : 성과목표명							
I-1-①	단위과제명						
I-1-②	단위과제명						
:							
성과목표 I-2 : 성과목표명							
I-2-①	단위과제명						
I-2-②	단위과제명						
:							
전략목표 II.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명							
II-1-①	단위과제명						
II-1-②	단위과제명						
:							
성과목표 II-2 : 성과목표명							
II-2-①	단위과제명						
II-2-②	단위과제명						
: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개요

### 1 개요 및 목적

-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써,
  -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함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 제16조 >(이하, 지방기금법)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2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작성대상: 지방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 작성 및 주요내용(지방기금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총괄보고서(예산부서 작성)와 기금별 운용계획(기금 운용부서 작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기금별 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
    -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같이 성질별 구분(장관항목)
    -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같이,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 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3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 시·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예산담당국장(담당관·과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둘 수 있음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예산부서 작성)마련, 기금 정비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 기타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시책 추진
  - 개별 기금운용관은 차기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기금총괄관리관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연계하여 협의하고,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확정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 시도교육청 통보(8월)</li> </ul>
시도교육청 (기금총괄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li> <li>※ 시도교육청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 및 절차 통보</li> </ul>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8~10월)</li> <li>※ 개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 협의</li> <li>※ 기금총괄관리관은 사전 협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교특예산과 연계하여 협의하고, 유사·중복여부 검토 등 재정건정성 제고</li> <li>※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필요성 여부 판단하여 예산편성 자제</li> </ul>
기금운용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운용계획안 심의(10월)</li> <li>※ 심의를 거친 후 시·도교육감의 결재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안 확정(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관리)</li> </ul>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의회 제출(~11월)</li> <li>※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 제출</li> </ul>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확정(11~12월)</li> <li>※ 지방의회는 시·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li> </ul>

## 2. 2024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

### 1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
-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모든 기금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지출 비효율 차단
-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 기금 성과분석 결과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2 기금의 통합·폐지 노력

-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거나 사업실적 미흡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및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

###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 시·도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되,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23 회계연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 기금운용성과분석 계획(기준) 별도 통보
- 시·도교육감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4 기금 「일몰제도」 준수

- 시·도교육감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
  - ※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기금 존속기한 연장시 위원회 심의 전에 기금총괄관리관(또는 예산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5 기금의 관리·운용 및 수입·지출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 2021년도 법령 개정 사항 】

- 기금 관리·운용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지방기금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지방기금법 시행령」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 시도교육청 기금 관리·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담당 국장(담당관과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둘 수 있음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 수입(징수내역)·지출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점검,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과의 연계성 검토, 기금 성과분석 총괄 및 기타 시도교육청 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 정보시스템(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 단, K-에듀파인시스템 기금회계시스템에 현재 개통되지 않은 분야(계약관리, 자산관리 등) 및 기금업무처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여 처리



## 6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기금 포함 작성
  -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 해당 부분 작성
    - ※ 「지방기금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7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 2017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 행정운영경비사업, 재무활동사업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설정하여 작성

## 8 기금운용계획 변경

-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불요
    -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 의결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변경은 가능)

〈 예시 1 〉 A기금 '24년 정책사업비 10억원

- (1차 변경) 1.5억원 증액 : 15% 증가 → **의결 불요**
-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0억원 대비 2.5억 증액(25% 증가) → 의결 필요**

〈 예시3 : 〉 A기금 '24년 정책사업비 10억원

- (1차 변경) 2.5억원 증액 : 25% 증가 → **의결 필요**
-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2.5억원 대비 1억 증액(8%) → 의결 불요**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변경 하는 경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음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시·도교육감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소요 발생으로 2억 증액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연도말(12월 말) 시점에서 예금이자 추가 발생, 집행 잔액 추가 발생 등 기금운용 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예치금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 1 수입계획 작성기준

-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상계 금지)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하여 순수입액만 계상 금지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작성(장·관·항·목)

##### 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수입내용)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계상금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세출예산금액
- (수입과목)

장	내부거래	관	전입금
항	전입금	목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② 기부금

- (수입내용)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각 기금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 (계상금액) 민간에서 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
- (수입과목)

장	이전수입	관	기타이전수입
항	민간이전수입	목	기부금

##### ③ 용자금 회수

- (수입내용) 기금으로 용자사업을 하는 경우 용자금을 회수한 수입
- (계상금액) 2023년도말 추정 용자잔액 중 2024년도 정기(반기) 회수금액과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을 추계하여 반영

○ (수입과목)

장	기타	관	금융자산회수
항	용자금원금회수	목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 (용자금 이자수입) 용자금 이자수입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2024년도 용자자금별 평균잔액×해당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용자취급기관 수수료율)

장	자체수입	관	이자수입
항	이자수입	목	용자금이자수입

④ 예치금 회수

○ (수입내용)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 (계상금액) 2023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는 전체예치금 중 2024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자금을 계상

※ 동일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 도래시 1회분만 계상

※ 과년도 잉여금은 예치금 회수로 계상

○ (수입과목)

장	기타	관	예치금회수
항	예치금회수	목	예치금회수

⑤ 예수금 수입

○ (수입내용)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서 전입되는 자원

○ (계상금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세출예산금액 또는 타 기금의 지출금액을 계상

※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A기금의 자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 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 부분에 편성

○ (수입과목)

장	내부거래	관	예탁금및예수금
항	예수금수입	목	예수금수입

⑥ 예탁금 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한 방식
- (수입과목)

장	내부거래	관	예탁금및예수금
항	예탁금회수	목	예탁금원금회수수입

⑦ 이자수입

- (수입내용) 여유자금(예치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이자수입
- (예치금 이자수입 계상) 당해 연도에 회수될 시점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산출하되, 금융기관 확인산출이 곤란할시 아래기준 적용

<b>2024년도 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b>
---

- (수입과목)

- 예치금이자수입

장	자체수입	관	이자수입
항	이자수입	목	예금이자수입

- 예탁금이자수입

장	내부거래	관	예탁금및예수금
항	예탁금회수	목	예탁금이자수입

⑧ 기타 기금수입

- 융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 기타 기금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작성

## 2 지출계획 작성기준

-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
-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
- ▶ 기금사업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은 각 기금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설정
-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 예비비 편성 금지
  - 「지방기금법」 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자금이므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 가능
-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12조)
  -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① 비용자성사업비

- 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사업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과 구별하여 편성)
- 기금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금 사업비(810-01목)

### 〈 예시 〉

#### ❖ 통폐합학교 지원사업비

- 통·폐합학교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 통·폐합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도 없이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 지양
  - 기금적립 예치금이 장기간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청 직접 집행 통·폐합학교 시설사업비는 기금조성이 완료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특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집행

※ 단,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집행

❖ 남북교류협력사업비

-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관계부처(통일부)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육감의 선심성, 치적쌓기 공약이행 목적은 지양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금의 사용) 및 사·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에서 정한 용도·절차\*에 따라 집행
  - \* 조례 예) ①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이 교육시설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②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예방, ③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 사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실질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511-02목)을 의미

❖ 재정안정화기금사업비

-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사·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조례」에서 정한 용도가 기본 사업 목적임
  - \*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② 용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용자(대출)형태의 목적사업\*은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 교직원 주택임차료 용자(대출)사업 등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용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수요부진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용자사업은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기금 수입액의 전부가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용자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 ③ 인력운영비

-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검토

$$2024\text{년도 인건비 총액} = 2023\text{년도 인건비 총액} \times (1 + 2024\text{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text{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23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23년도 12개월분 반영
- 기금운용부서 인건비는 교특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기금 계상 불가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기금운용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 계상 가능
  -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업 인부임 등은 계상 가능

### ④ 기본경비

-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를 계상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기관(부서)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기관(부서)운영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기금에는 계상 금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비, 법인 운영경비 등 해당 기금조례에서 정한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용도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상·집행

※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별표5]의 (서식 1-13)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2-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참조

### ⑤ 예탁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교육비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을 예탁금으로 계상

※ 교육비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를 용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 ⑥ 예치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거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으로 계상
-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예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 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⑦ 예수금원리금 상환

- 교육비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지출 사유가 있을 경우 작성

## ⑧ 기타지출

- 상기 항목으로 설정할 수 없는 기타 지출 사유\*가 있을 경우 작성
  - ※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 세입 및 세출과목 적용 범례

구 분		과 목
수입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51102)
	기부금	기부금(16101)
	융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43101), 융자금이자수입(24102)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42101)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52201)
	예수금	예수금수입(52101)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24101), 예탁금이자수입(52202)
	기타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고유 정책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기금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금 전출금(810-01)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320-09)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10-03), 법정부담금(320-05) 등 인력운영경비 항목(정책사업비 내의 인력운영경비 항목 포함)
	기본경비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유형·무형자산 취득비(430, 440) 등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예탁금(830-01)
	예치금	예치금(520-01)
	예수금원리금 상환	예수금원금상환(840-01), 예수금이자상환(840-02)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출 경비

## 4.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1 전자적시스템을 통한 기금 관리

○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K-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수행

\* 기금운용계획, 기금수입관리, 기금지출관리, 기금결산관리 등

※ 단, K-에듀파인시스템 기금회계시스템에 현재 개통되지 않은 분야(계약관리, 자산관리 등) 및 기금업무처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여 처리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및 결과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자체 분석 실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1항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제출)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제출: 2024. 7. 31.까지

※ 2023회계 실적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을 2024. 6. 30.까지 시도교육청에 통보 예정

### 3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통합·폐지 등 정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4항
- (정비책임자) 기금총괄관리관의 총괄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이 통합·폐지 등 정비 실시
- 주요 정비대상 기금
  - 존속기한이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2024년도 이내인 기금
  - 실적이 없거나,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기금
- 기금정비 요령
  - (기금현황 조사) 교육청 소관 기금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총괄 관리
  - (통합·폐지 검토)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계속 존치, 통합, 폐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추진
- 기금 현황 및 정비결과 제출
  - (기금 정비결과) 기금정비(통합·폐지) 완료 후 15일 이내 공문 제출
    - ☞ 아래 기금정비결과 제출서식 활용
  - (기금 현황) 아래 서식에 따라 2024. 3. 31.까지 공문 제출

(단위: 천원)

교육청명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기금보유액

※ 기금보유액은 2023.12.31. 기준, 융자(대출)금의 경우 미회수채권 포함 작성

※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화일로 함께 제출

〈기금정비결과(통합·폐지) 제출 서식〉

교육청명	○○교육청(부서·기관명)		
기금명	○○ 기금		
정비구분	<input type="checkbox"/> 기금 폐지 <input type="checkbox"/> 기금 통합(통합기금: _____ )		
정비일자	0000. 00. 00.		
정비사유	○○ 기금과 통합		
설치근거	○○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배경			
설치일자	0000. 00. 00.	운용개시시기 (기금 최초 조성시기)	0000. 00월
기금관리 부처	직접 관리	부서명: ○○과 담당자: 홍길동(000-000-0000)	
	위탁 관리	기관명: ○○공단 ○○과 담당자: 김철수(000-000-0000)	
기금조성총액 (천원)	기금사용액 (천원)	기금 잔액 (천원)	
기금 잔액 사용 계획	지 출	금 액(천원)	
	통합기금으로 전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수금원리금상환		
	⋮		
	합 계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서식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 .

○○시·도교육청

# 목 차

- I. 기금운용 총괄 .....
  - 1. 기금현황 .....
  -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 3. 기금조성 규모 .....
  
- II. AOOO기금 기금운용계획 .....
  - 1. 기금운용 총칙 .....
    - 가. 기금설치 개요 .....
    -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 1) 기금사업의 목표 .....
      - 2) 2024년 기금사업 개요 .....
      -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
      -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 2. 자금운용 계획 .....
    - 가. 자금수지총괄 .....
    - 나. 수입계획 .....
    - 다. 지출계획 .....
  -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
    - 가. 성평등 목표 .....
    - 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방향 .....
    - 다. 분류별 총괄표 .....
    - 라. 기능별 총괄표 .....
    - 마. 사업별 설명자료 .....
  -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
    -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 나. 예치금 현황 .....

## I. 기금운용 총괄

### 1.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A-B)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합계						

###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용자금 미화수채면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계							



## II. AOOO기금 기금운용계획

### 1. 기금운용 총칙

####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설치년도:

####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재

##### 2) 2024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

#####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가)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 '23년도말 조성액(a): '23년도말 기금결산금액을 추정하여 조성액을 작성

※ 수입계획(b): '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조성계획 총액

※ 지출계획(c): '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집행계획 총액

※ 수입계획(b)과 지출계획(c)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융자금 미회수채권(e): 기금사업 중 융자(자금대출)사업이 있는 경우 '24년도말 기준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채권의 금액을 추정하여 작성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 조성 재원을 종류별로 제시(교특회계전입금, 기부금, 용자금회수 등)

다) 지원대상

※ 각 기금사업별로 2024년도 수혜대상과 조건을 작성(교직원주택임차료 용자사업의 경우 용자대상 교직원,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및 통·폐합 학교지원지원사업의 경우 조건 및 대상학교)

라) 지원 기준 및 계획

※ 각 기금사업별로 2024년도 지원기준과 지원규모 등 계획을 간략히 작성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액	'23년 계획			'24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금융자산								
예치금								
유가증권								
기타								
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기타자산								

※ 재정상태표상의 자산금액을 추정하여 자산별로 '22년말 잔액, 2023~2024년도 계획금액을 작성

※ 금융자산 : 금융기관 예치금(정기예금, 보통예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으로 구분

※ 부동산: 기금회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

○ 기타자산:

※ 기금회계 기타자산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 기재(없는 경우 생략)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액	'23년 계획			'24년 계획안			증감 (b-a)
		발생	상환	잔액(a)	발생	상환	잔액(b)	
합 계								
차입								
항목1								
...								
기타*								

- ※ 재정상태표상 부채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별로 '22년말 잔액, 2023~2024년도 계획금액을 작성
- ※ '22년도 기금결산 결과 재정상태표의 부채금액과 일치해야 함
- ※ 차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종류별로 구분 작성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기타:

- ※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 기재(없는 경우 생략)

## 2. 자금운용 계획

###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증감
합 계				합 계			
교특회계 전 입 금				비용자성 사 업 비			
기 부 금				용 자 성 사 업 비			
용 자 금 회 수				인 력 운 영 비			
예 치 금 회 수				예 치 금			
예 탁 금 원금회수				예 탁 금			
예 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기본경비			
기 타				기 타			

※ 동일연도의 수입계획 합계와 지출계획 합계는 일치하여야 함

※ 수입 및 지출 항목: '3-1. 수입계획 작성기준' 및 '3-2. 지출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 기타수입:

○ 기타지출:

※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 기재(없는 경우 생략)

나. 수입계획(예시)

(단위: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10000 이전수입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기부금 00,000원 = 00,000			
...							
...							
...							
수입합계							

※ 기금 수입과목(장·관·항·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목 따라 설정하며, “Ⅲ-1. 수입계획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다. 지출계획(예시)

[분야] 교육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A-B)
부 문	정 책	단 위	세 부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교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교직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1. 교직원 전세자금 대부								
가 대부료				320명 간이전	00원 × △△명 =			
...								
...								
...								
...								
지출합계								

※ '분야·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별표3]에 따라 설정하고, '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별표4]에 따라 설정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각 기금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 가. 성평등 목표

○

#### 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방향

○

-

#### 다. 분류별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기금운용 계획액(A)	전년도 계획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 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성인지예산 작성방법과 동일(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교특전출사업은 작성 제외)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 사업 기준〉

대상사업	비 고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2. 성별영향평가 사업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3.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4.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 라. 기능별 총괄표(예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기금운용 계획액		전년도 계획액		비교 증감	
	1	2	3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	.	1		%		%		%
유아및초중등교육	1	.	1		%		%		%
교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1	.	1		%		%		%
평생·직업교육	.	.	.		%		%		%
□ □ 사업	.	.	.		%		%		%
교육일반	.	.	.		%		%		%
△△ 사업	.	.	.		%		%		%

※ 상단 표의 사업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작성 대상 항목이 없는 줄은 삭제

마. 사업별 설명자료(예시)

[ 세부사업명 : 교직원 전세자금 용자지원 ]

<b>사 업 명</b>	<b>교직원 전세자금 대부</b>
--------------	--------------------

사업구조	(분 야) 교육	(부 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교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단위사업) 교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정책과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체선정사업

※ 해당되는 칸에 “○”표시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 원 별	계 획 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
교 특 회 계 전 입 금				%
기 부 금				%
용 자 금 회 수				%
예 치 금 회 수				%
이 자 수 입				%
기 타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계획액
계			
여성(비율) (D/B)	( %)	( %)	( %)
남성(비율) (F/B)	( %)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 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 특 전 입 금	기 부 금	응 자 금 회 수	예 수 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b)	비 용 자 성 사 업 비	응 자 성 사 업 비	인 력 애 용 비	기 본 경 비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기 타 지 출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서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2022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23~2024년은 계획액 기준

##### 나.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sup>㉠</sup>	'24년도말 현재액 <sup>㉡</sup>	증 감 (b)- <sup>㉠</sup>	
합계						
예치금	소 계					
	OO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교특회계					
	OO기금					
	△△기금					
	...					

※ 202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 2023~2024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 기준





---

##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 목 차 】

I.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	
가.	평가대상사업 선정 .....	
나.	자체평가 .....	
다.	평가결과 환류 .....	
라.	평가결과 공개 .....	
마.	시행일 .....	
III.	평가추진 일정 .....	
	(참고1)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체평가위원회 평가 추진 체계(예시) .....	
	(참고2) 사업별 자체평가서(예시) .....	
	(참고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세부기준 .....	
	(참고4) 평가결과 보고서(예시) .....	

## I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 가 재정사업 평가의 의의

- (개요) 시·도교육청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 (지자체) '1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 (국가) '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 ※ (평가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평가대상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상대평가 실시
  - 결과환류 :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대외공개 :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

##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 가 평가 대상사업 선정

- (평가대상)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투자사업 : 5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3억원 이상 행사·공연·축제 등

#### 〈 행사성 사업의 범위 〉

- |               |                  |
|---------------|------------------|
| ① 공연·축제·문화행사  | ⑤ 교양 강좌          |
| ② 위로·위문행사     | ⑥ 각종 기념행사        |
| ③ 공청회·설명회·보고회 | ⑦ 시·도교육청 주관 국제행사 |
| ④ 각종 체육대회행사   | ⑧ 기타 교육청 주관 행사   |

□ (평가단위)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기준

※ 시도교육청은 평가단위를 세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 중 선택 평가,  
단, 평가단위는 선택된 단일 기준으로만 평가 수행

□ (평가제외 대상) 성과관리대상 사업 중 타 평가대상 및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 〉

① 성과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3편(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②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대상 회계연도 또는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완료사업
- (03)교육복지 정책사업 중 평가실익이 적은 세부사업\*

\* (01)교육비지원, (04)교육급여지원, (01)교육복지우선지원, (02)급식비지원, (03)정보화지원,  
(04)누리과정지원, (05)교과서지원

- 투자사업 5억원 미만(행사성사업 3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내 일부 내역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업만으로는 평가실익이 없는 경우(나머지 사업이 소액이거나 인건비·기본경비 사업만 남은 경우 등)도 제외

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 (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재정사업 평가 제외

④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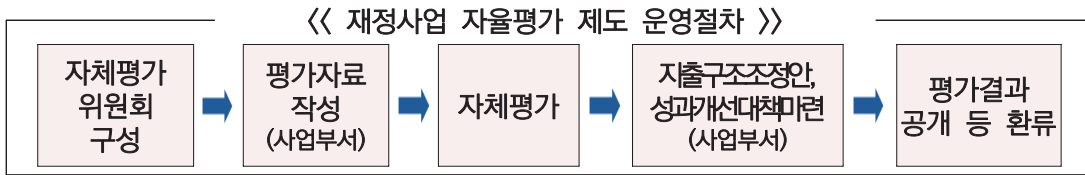
⑤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⑥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 나 자체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도교육청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평가절차) 평가대상 선정, 평가지표 설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수행 → 환류계획 마련



-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
- **(총괄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후 자율 운영
  -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관리
  - \*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되 민간위원 1/20이상 포함 권고
-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분과위원회)** 평가 대상사업을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괄위원회로 제출
- ※ 예시) 교육과정 / 교육복지 / 시설지원 등으로 분과 구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 **(참고 1) 예시 참조**
- **(평가지표)** 계획·관리·성과·환류 단계별 지표 및 가·감점 지표
  - **(지표 및 배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3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50점) 등을 **평가 지표로 설정**

※ 가감점은 전체 배점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 주요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지표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의 환류(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합계			100

※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은 자율 조정 가능

- **(평가결과 산출)** 사업 담당부서별로 작성하는 사업별 평가자료 및 기타 설명·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 지표에 따라 사업별 평가점수 부여 (참고 2), (참고 3)
-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100점 만점)를 종합하여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화
    -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미흡' 이하 사업이 10% 이상 되도록 설정·조정
  - 전체 사업 중 최종등급 산정 시 분과위원회 간 평가점수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제고
    - 분과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총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의 통합적인 평가등급 등 최종평가 결과 조정·확인
    - 총괄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조정·확인

- (지출구조조정방안 마련) 사업 담당부서별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 마련(※불가피한 경우 보통사업 포함) ⇨ (참고 4)
  - ①‘미흡’ 등급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②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자체 마련
    - \* 다만,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미흡’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등을 고려
      - \*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미흡’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등급’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조정

〈 지출구조조정계획 마련시 주의사항 〉

- 지출구조조정계획은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및 사업별 구조조정 규모 제시
-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저소득층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성과개선대책 마련) 사업 담당부서별로 미흡사업에 대해 ①미흡원인 분석, ②개선방안 도출, ③개선안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개선대책 수립 ⇨ (참고 4)

## 다 평가결과 환류

-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 마련
  - 예산 편성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
  - 지출구조조정과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미흡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참고 4)
- 3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 원칙적 폐지

## 라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평가기준·절차·결과를 모두 공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rk>) 홈페이지 게재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대상 리스트, 평가기준(평가지표), 대상 사업별 평가결과, 환류계획

## 마 시행일

- 본 기준은 2024년도 중 실시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부터 적용
  - ※ 2024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2023회계년도 추진 사업에 대하여 실시

## III 평가추진 일정

-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정
  - ※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일정 자율 조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평가준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계획 수립(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가 대상사업 선정</li> <li>② 평가 추진체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li> <li>③ 자체평가 방법</li> <li>④ 평가환류 계획</li> <li>⑤ 환류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확인·점검</li> <li>⑥ 추진일정 등</li> </ul> </li> </ul>	예산부서
평가자료 작성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부서별로 평가자료 작성·제출</li> </ul>	사업부서
자율평가	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 개최</li> <li>▪ 분과위원회 자체평가 실시</li> <li>▪ 총괄위원회 평가결과 조정·확정</li> </ul>	예산부서
평가결과 환류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 마련</li> <li>▪ 평가결과 예산 반영</li> </ul>	사업부서 예산부서
평가결과 공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공개(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li> </ul>	예산부서

**참고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추진 체계(안)**

※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자율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
-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관리

〈 총괄위원회 구성 〉

구분	위원	소속	비고
내부	000		총괄위원장
	000		총괄위원
외부	000		분과위원회 대표위원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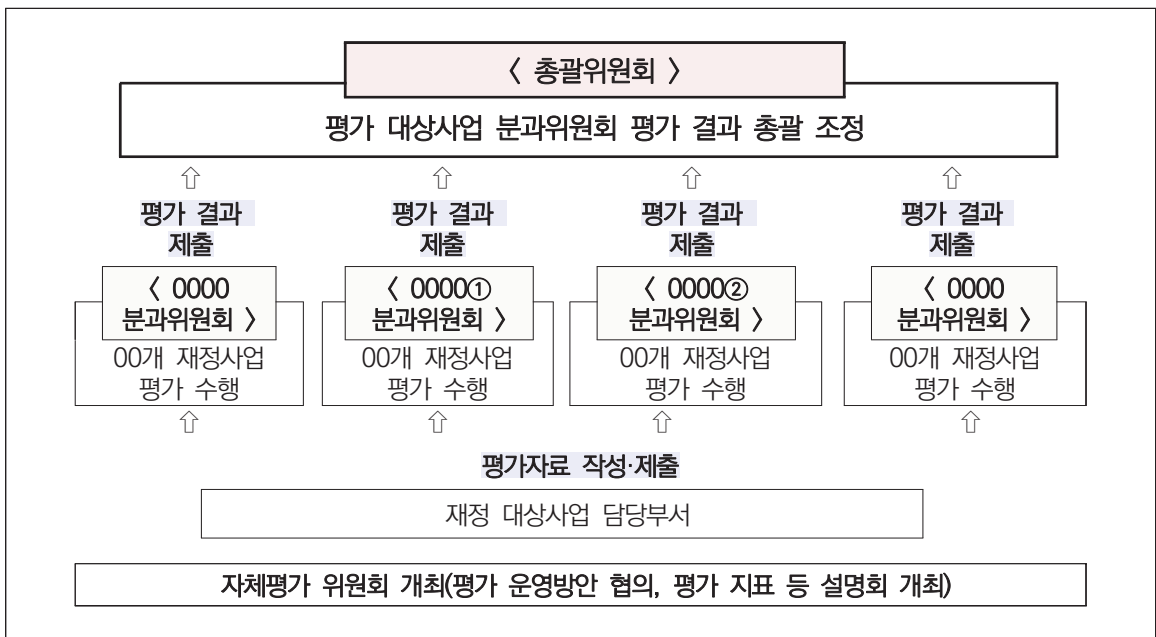
- (분과위원회) 평가 대상사업(00개)을 0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면 및 대면)하고, 평가 결과를 총괄위원회로 제출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	위원	소속	비고
			분과대표(총괄위원회 위원)
			분과대표(총괄위원회 위원)
			분과대표(총괄위원회 위원)
			분과대표(총괄위원회 위원)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① (자체평가위원회 개시회의 개최) '0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방안 협의, 자체평가위원 대상 자율평가 계획 설명 등
- ② (분과위원회 개최 및 평가 실시) 00개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에 대해 분과별로 주관 평가위원 지정, 평가 대상 사업 서면 검토 후 대면평가\* 실시  
\* 분과별로 대면평가 실시(사업 담당자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 ③ (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부여 및 평가위원 재평가 실시, 평가결과 조정 후 총괄위원회 제출  
※ 사업별 평가결과(안) 국·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타당성 인정시 재평가 실시(서면평가)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최종 결과 총괄위원회 제출
- ④ (총괄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등급\* 조정·확정  
\*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상대평가



※ (예산담당) 시·도교육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괄

## 참고 2

### 사업별 자체평가서 (예시)

- ※ 전체 평가대상사업 작성, 사업별 자체평가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참고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점수 자체기입·제출

사업번호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명

\* 담당자 : 000과장(0000), 000사무관(0000)/000주무관(0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이메일 주소)

#### 1.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성과목표	•																														
성과지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A 지표(단위)</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r> </thead> <tbody> <tr> <td>▪ 계획</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달성</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 B 지표(단위)</th> <th></th> <th></th> <th></th> <th></th> </tr> <tr> <td>▪ 계획</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달성</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p>	○ A 지표(단위)	'20	'21	'22	'23	▪ 계획					▪ 달성					○ B 지표(단위)					▪ 계획					▪ 달성				
○ A 지표(단위)	'20	'21	'22	'23																											
▪ 계획																															
▪ 달성																															
○ B 지표(단위)																															
▪ 계획																															
▪ 달성																															
사업목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	• 주요 내역사업 내용 등 작성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및 집행 현황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44 368 529 442" rowspan="2">전전년도(결산)</th> <th data-bbox="529 368 711 442" rowspan="2">전년도(결산)</th> <th colspan="3" data-bbox="711 368 1258 403">해당연도</th> </tr> <tr> <th data-bbox="711 403 896 442">예산액</th> <th data-bbox="896 403 1076 442">집행액</th> <th data-bbox="1076 403 1258 442">집행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442 529 511"></td> <td data-bbox="529 442 711 511"></td> <td data-bbox="711 442 896 511"></td> <td data-bbox="896 442 1076 511"></td> <td data-bbox="1076 442 1258 511"></td> </tr> </tbody> </table> <p>※ 해당연도는 평가 회계연도(예, '24년도에 '23회계연도 평가일 경우 '23년도 예산 작성)</p>	전전년도(결산)	전년도(결산)	해당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전전년도(결산)	전년도(결산)			해당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사업추진 체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급적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li> </ul>													
예산체계 및 예산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세부사업* (코드명도 기재) 교육비특별회계-교수학습활동지원-학력신장및평가-학력평가관리-0000000000 (02-02-03-00) * 평가단위를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할 경우 세세부사업 작성</li> </ul>													

## 2. 평가 결과

### ① 평가종합

구분	계 획 (a)	관 리 (b)	성과/환류 (c)	총 합 (d=a+b+c)	등급
평가점수					

### ② 평가결과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합 계			100	



③ 지표별 세부 평가서

<b>1.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b>	<b>점수</b> <b>00점</b>	
<b>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00점 / 2점)</b>		
<b>① 배점기준</b>		
<b>2점</b>	<b>1점</b>	<b>0점</b>
모두 '예'인 경우	1~3항 중 '아니오'가 1~2개 있는 경우	모두 '아니오'인 경우
<b>② 세부판단기준</b>		
<b>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b>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이 법령 등에 부합하고,</li> <li>◦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한 경우</li> </ul>	
◆ 판단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목적		
■ 사업대상자		
■ 이해관계자	(없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인정)	
■ 사업수요		
※ 사업목적의 명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		
<b>2. 사업목적과 성과목표가 연계성이 있는가?</b>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li> </ul>	
◆ 판단근거		
■ 성과목표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 및 내역사업 등 구성요소 간의 연계성 설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b>3.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b>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li> <li>① 교육서비스 미공급 시, 문제(혜택 소외 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②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왼쪽 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1개라도 있는 경우</li> </ul>	

##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0점 / 3점)

※ 부서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화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감점처리

### 1] 배점기준

3점	2점	1점	0점
1항이 '예'인 경우	1항은 '아니오'이나 2,3항이 모두 '예'인 경우	1항이 '아니오'이고, 2항 또는 3항이 '예'인 경우	모두 '아니오'인 경우

### 2] 세부판단기준

#### 1. 사업목적의 유사성은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목적 사업이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목적 사업이 있는 경우</li> </ul>

※ 사업부서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등에서 유사중복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의 일부가 '아니오'인 경우 '아니오' 처리

#### 2. (유사목적 사업이 있는 경우) 수혜대상의 중복성은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은 유사하지만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li> <li>※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li> </ul>

○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경우 : (유사중복 사업명 기재)

#### 3. 유사사업 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사업 간 협력·조정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경우</li> <li>※ 협력·조정 노력이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사업 간 통합추진 노력이 없는 경우</li> </ul>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00점 / 5점)

1] 배점기준

5점	3점	2점	0점
모두 '예'인 경우	2~3개 항목이 '예'인 경우	1개 항목이 '예'인 경우	모두 '아니오'인 경우

※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또는 내·외부 기관 평가 및 감사결과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성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 『모두 '아니오』(0점)로 판단

2] 세부판단기준

1. 사업내용의 적정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개별사업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개별사업이 있는 경우</li> </ul>

◆ 판단근거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사업규모는 구체적인 수치 등으로 작성 / 단위 : 백만원)
■ 사업추진 주체 / 방식	(직접수행, 민간시행 등)
■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2. 자원분담의 적정성(자원분담 가능성 검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분담이 불가능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분담이 가능한 경우</li> </ul>

3. 사업운영방식의 적정성(추진주체, 지원조건, 수혜대상 등 검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변경 필요성이 있거나 변경 가능한 경우</li> </ul>

4. 수요예측의 적정성(사업 타당성 등 사전검토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검토 및 검증을 시행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검토 및 검증 미시행</li> </ul>

2. 성과계획의 적정성 (10점)		점수 00점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00점 / 5점)			
① 배점기준			
5점		3점	
모두 '예'인 경우		'예'인 항목이 2개인 경우	
2점		0점	
'예'인 항목이 1개인 경우		모두 '아니오'인 경우	
② 세부판단기준			
1.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대표·포괄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내용 및 수혜 대상 범위를 포괄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한 경우</li> <li>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li> </ul>	
2. 성과지표로 사업목적의 최종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가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로 설정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가 투입 또는 과정지표로 설정된 경우</li> </ul>	
3.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산식이 명확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산식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li> <li>측정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li> </ul>	
* 성과지표가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			
* 만족도 등은 측정산식이 명확하다라도, 조사주체, 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의 합리성 등 정성적 검토 대상			
◆ 1~3번 판단근거			
■ 성과지표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체적 지표)		
■ 지표의 포괄성	(성과지표가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지 설명)		
■ 결과지표 설정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지, 연계성 설명)		
■ 측정값의 명확성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설명)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00점 / 5점)

1 배점기준

5점	3점	2점	0점
모두 '예'인 경우	1항이 '예'이고, 2항 또는 3항이 '아니오'인 경우	1항이 '예'이고, 2항과 3항 모두 '아니오'인 경우	1항이 '아니오'인 경우

※ (2-1) 지표가 '0점'일 경우, (2-2) 지표도 '0점' 처리

(성과지표가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없는 경우는 부적정)

2 세부판단기준

1. 성과목표 설정이 합리적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세치 등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li> <li>사업시행 이후 목표치를 임의 변경한 경우</li> </ul>

2. 성과목표치 설정에 노력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력을 통해 성과목표치 달성여부가 달라지도록 설정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li> <li>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li> </ul>

※ 사업특성에 따라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판단

3. 사업개선노력이 반영되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방식개선 등 개선노력을 지표에 반영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추진상 미흡점을 개선하지 않고 동일 목표치(또는 이하)를 설정한 경우</li> </ul>

※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별로 배점 후 가중치 환산 점수 합산 합계 = (A지표 점수 × 가중치) + (B지표 점수 × 가중치)

예) A지표(점수3점, 가중치30%), B지표(점수5점, 가중치70%)

⇒ A지표 3점×30% = 0.9점

B지표 5점×70% = 3.5점 ⇒ **최종점수 4.4점**

<b>3. 사업관리의 적정성 (30점)</b>	<b>점수</b> <b>00점</b>				
<b>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00점 / 15점)</b>					
<b>1 배점기준</b>					
<b>3-1-a. 집행율이 적정한가? (15점)</b>					
※ 집행율 산출식(%)=집행액/예산현액×10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b>15점</b>	<b>12점</b>	<b>9점</b>	<b>6점</b>	<b>3점</b>	<b>0점</b>
90%이상	80~89%	70~79%	60~69%	50~59%	50%미만
<b>3-1-b.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 (감점 -2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등 내외부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 경우</li> <li>* 예산전용 등 목적 외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감점 면제</li> </ul>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b>3-1-c. 집행율 제고 및 예산절감 노력 (가점 +2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율 90%미만 사업 중 집행율 제고 노력을 통한 개선 실적이 증빙되는 경우</li> <li>◦ 집행율 90%미만 사업 중 아래 목록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점 부여</li> <li>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li> </ul> </li> <li>※ 감사원, 중앙부처, 의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은 불인정</li> <li>②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li> <li>③ 공신력 있는 타기관에서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li> </ul>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00점 / 5점)

1. 배점기준

〈 모니터링 개념 〉

- 집행실적, 진도점검, 운영상 문제점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1년 1회 이상 운영하는 정기적인 활동체계를 말하며 성과분석 및 문제점 발굴 등 환류시스템을 포함하는 의미

5점	4점	3점	0점
◦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부정기적 또는 비계획적 운영	◦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미운영	◦ 모니터링 체계 미구축

2. 세부판단기준

- 여러 개의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부정기적 운영'으로 판단
- 용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용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00점 / 10점)

1. 배점기준

10점	8점	5점	0점
1~2항이 모두 '예'인 경우 또는 문제점이 없는 경우	'예'인 항목이 1개인 경우	1~2항이 '예'인 경우 대응노력이 있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모두 '아니오'인 경우

※ 추진상 문제점이 없다고 답한 경우, 확인·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0점' 처리

2. 세부판단기준

1.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민원, 갈등, 환경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적절히 대응하여 해결한 경우	◦ 대응노력이 없거나, 미해결

※ 개선방안, 해결실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되, 분량이 많을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2. 내·외부 기관의 지적사항(감사 또는 업무평가)과 문제제기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적절히 대응하여 해결한 경우	◦ 대응노력이 없거나, 미해결

※ 개선방안, 해결실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되, 분량이 많을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b>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50점)</b>	<b>점수</b> <b>00점</b>
-----------------------------------	-------------------------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00점 / 30점)**

**1 배점기준**

<b>30점</b>	<b>25점</b>	<b>20점</b>	<b>15점</b>	<b>10점</b>	<b>0점</b>
100%이상	90~99%	80~89%	70~79%	60~69%	60%미만

① **달성도 산식 = (최종달성결과값 / 성과지표값) × 100%**

예1)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93%이고, 최종결과 만족도 결과 92%인 경우  
 $(92 / 93) \times 100\% = \text{달성도 } 98.9\%$

예2) 성과지표 (석면개선건수) 50건이고, 최종결과 60건 인 경우  
 $(60 / 50) \times 100\% = \text{달성도 } 120\%$

② **2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에 따라 점수 합산**  
**달성도 = (A지표 달성도 × 가중치) + (B지표 달성도 × 가중치)**

예) A지표(달성도 95%, 가중치 60%), B지표(달성도 90%, 가중치 40%)

⇒ A지표 달성도 95% × 60% = 57%  
 B지표 달성도 90% × 40% = 36%  
**최종달성도 93%**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00점 / 10점)**

**1 배점기준**

※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모니터링 개념과 구분)

<b>10점</b>	<b>5점</b>	<b>0점</b>
◦ 종합적 객관적 평가 실시하고, 사업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주체 또는 평가방법의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 또는 사업 효과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 평가 미실시

**2 세부판단기준**

-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입증되었는지 여부
- 미완료사업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적용불가 (4점)’** 처리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00점 / 10점)

1 배점기준

1. 사업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해 환류하였는가? (10점)

10점	5점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모두 환류한 경우</li> <li>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방식 개선, 제도보완, 법령·지침개정 등 일부 환류 실적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사항 또는 문제점 환류 실적이 없는 경우</li> </ul>

◆ 판단근거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확정절차
제도개선 실적	

- ※ 내·외부 기관 및 자체 재정평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제도개선 내용, 추진일정, 제도개선 확정 절차 (보고결재 등)'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
- ※ 사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 문제점이 제시되었음에도 누락시킨 경우 감점처리(-3점)
- ※ (4-2) 지표에서 '적용불가'로 처리된 경우 또는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재정사업 평가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부여(4점)(사유 필히 기재)

### 참고 3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조정](#)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2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p> <p>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p> <p>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p> <p style="margin-left: 40px;">①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p> <p style="margin-left: 40px;">②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교육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p> <p style="margin-left: 40px;">③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p>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불명확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사업목적이 사업내용 및 범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함</p> <p>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p> <p>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p> <p>※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요' 처리</p>
평가근거/ 자료	<input type="checkbox"/>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p>평가지표</p>	<p>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3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별로 모두 검토)</p>
<p>측정기준</p>	<p>①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p> <p>가.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경우</p> <p>나.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별도로 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p> <p>다.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평가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한 구체적 실적을 제시해야 함</p>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사업목적,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p> <p>나.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p> <p>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사업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부서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경우 3점 추가 감점</p> <p style="padding-left: 20px;">※ 평가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중 일부가 ‘아니요’ 인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p>

<p>평가지표</p>	<p>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확인(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p>
<p>측정기준</p>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사업을 구성하는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p> <p>* 개별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의 목적이 평가대상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p> <p>나.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는 사업방식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검토해 볼 때,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 경우          &lt;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b>재원분담</b> 가능성/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과의 재원분담 가능성 검토</li> </ul> <p>② <b>사업방식/조건</b>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업방식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li> <li>예) 직접사업 → 민간시행사업</li> <li>- 수혜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등 사업운영 방식의 적정성 검토</li> <li>* 투·융자심사 등 사전 타당성, 적합성 검토 여부</li> <li>* 시설장비구매 사업의 경우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이행 여부 검토</li> </ul> <p>③ <b>사업추진주체</b>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사업추진주체의 적정성 및 변경 필요 여부 검토</li> </ul> <p>④ <b>수요 예측</b>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규모 고려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li> <li>* 출자·출연 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li> </ul> </div> <p>※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검증, 여건검토,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p> <p>※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파악, IT신기술도입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p>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경우</p> <p>나.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p> <p>※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 ‘아니요’처리</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p> <p>*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p>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li> </ul> <p>나.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또는 완공전 사업은 결과지표와 과정지표(공정률 등)를 병행설정</li> <li>* 공정률 지표의 측정산식은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설정함</li> <li>*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 대체 가능</li> </ul> <p>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p> <p>다.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li> <li>*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li> </ul>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p> <p>나.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p> <p>다.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물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p> <p>라.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p> <p>마. 산출물의 질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지 않고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만을 제시한 경우</p>
평가근거/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 <input type="checkbox"/> 만족도 조사 지표의 경우 만족도조사 설문지 제출

<p>평가지표</p>	<p>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p>
<p>측정기준</p>	<p>①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p> <p>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수정평가에 한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는 사전 설정한 것으로 간주</li> </ul> <p>나.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li> <li>*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li> </ul> <p>다.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li> </ul> <p>②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임의변경 설정한 경우</p> <p>나.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li> </ul> <p>다.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li> </ul> <p>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p>

	<p>▪ 2-1이 '아니요'일 경우, 2-2도 '아니요' 처리</p> <p>※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점수 = ('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5</p> </div>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p> <p><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p>



(3) 사업관리의 적정성

<p>평가지표</p>	<p>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15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단계별 점수부여          &lt; 4단계 배점 방법(예시) &gt;</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d>15</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5	10	1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5	10	15							
<p>측정기준</p>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li> <li>*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 집행으로 간주</li> </ul> <p><b>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p> <p>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p> <p><b>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p> <p>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p> <p>다.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내·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처리</li> </ul>										

	<p><b>4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p> <p>다.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p> <p>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 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K-에듀파인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p> <p><input type="checkbox"/>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p>

<p>평가지표</p>	<p>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5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 3단계 배점 방법(예시)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left;">답변</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어느 정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2.5	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2.5	5						
<p>측정기준</p>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경우</p> <p>*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 실시</li> <li>②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li> <li>③ 당해 사업연도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li> </ol> <p>※ 용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용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p> <p><b>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사업부서 또는 사업시행자 중 일방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은 양호하나, 나머지 사업주체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부실(부정기적)할 경우</p> <p>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나, 비중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p> <p><b>③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p> <p>나. 사업 성과 제고와 관련이 높은 핵심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p>								

<p>평가지표</p>	<p>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0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변화, 예기치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 3단계 배점 방법(예시)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답변</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어느 정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p>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p>측정기준</p>	<p><b>① ‘예’ 판단 기준 (모두 해당해야 ‘예’ 처리)</b></p> <p>가.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시·도, 감사원, 외부기관 업무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li> </ul> <p>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 대응 또는 해결 실적</li> <li>*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실적</li> </ul> <p><b>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외부 지적, 집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중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이 미흡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지적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모두 적절히 대응·해결 하였으나, 3-2가 ‘아니요’로 판명되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li> </ul> <p><b>③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실적이 부적절하여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감사원·중앙부처·시도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 대응실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을 경우</li> </ul>								

	<p>나.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였으나, 해당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없을 경우</p> <p>※ 다음 사업 유형의 경우 예시와 같은 문제점 해결 실적을 필히 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출자 사업은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점검실적, 융자사업은 융자 및 자금회수계획에 대응한 실적, 투자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실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 노력 판단기준</b>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부여)</p> <p>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p> <p>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p> <p>* 효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어야 함</p> <p>*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기관 및 지방의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p> <p>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p> <p>다. 공신력 있는 타기관에서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p> </div>
<p>평가근거/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li> <li>□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li> <li>□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li> <li>□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li> </ul>

####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b>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30점)</b>										
측정방법	<p><input type="checkbox"/>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점수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 4단계 배점 방법(예시) 〉</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감점</p>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10	20	3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10	20	30							
측정기준	<p><b>① ‘예’ 판단 기준</b></p> <p>가.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p> <p><b>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b></p> <p>가.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한 경우</p> <p>나.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li> <li>▪ 사업추진과정의 불가피한 문제로 당해 정상집행이 안된 경우</li> <li>▪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li> </ul> <p>다. 2-2에서 ‘예’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li> </ul> <p>라. 2-2에서 ‘아니요’이나, 사업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p>										

	<p><b>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경우</p> <p>나.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li> <li>▪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li> </ul> <p>다. 2-2에서 ‘아니요’이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 달성한 경우</p> <p><b>④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그 밖의 모든 경우</p> <p>나.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p> <p>※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점수 = ① + ② + ③</p> <p>① (‘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30</p> <p>②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20</p> <p>③ (‘어느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10</p> </div>
<p>평가근거/ 자료</p>	<p>□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p>

<p>평가지표</p>	<p>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10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단계별로 점수 부여          &lt; 3단계 배점 방법(예시) &gt;</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p>측정기준</p>	<p>① ‘예’ 판단 기준</p> <p>가.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주체에 의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입증한 경우</p> <p>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p> <p>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 여부를 입증하였으나 사업평가 주체의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p> <p>나. 객관적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사업평가 방법론이 부적절하여 사업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p> <p>* 객관적 평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사실상 사업 운영 측면의 우수성만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p> <p>다. 객관적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 사업이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이 누락되어 실시된 경우</p> <p>③ ‘아니요’ 판단 기준</p> <p>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나.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침이 요구하는 객관성, 방법론, 종합성의 적절성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경우</p> <p>※ 소액사업(10억 이하), 신규사업, 미완료사업(시설물 건립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적용불가’ 처리</p>								
<p>평가근거/자료</p>	<p><input type="checkbox"/>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p>								



### 〈 참고 1 〉 예산집행실적 기준

$$\textcircled{1} \text{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집행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

\* 자체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 (실)집행실적은 K-에듀파인시스템 집계 금액
- 사업특성에 따라 자치단체 외로 이전(출연금 등)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는 실집행액을 집행실적에 반영하여 평가

### 〈 참고 2 〉 성과달성도 배점 기준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예	100% 이상
상당한 정도	90 ~ 100%
어느 정도	80 ~ 90%
아니요	80%미만

\* 확인·점검 과정에서 부서의 업무 및 사업특성(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성과달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p>평가지표</p>	<p>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점수부여          &lt; 3단계 배점 방법(예시) &gt;</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0</td> <td>5</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p>측정기준</p>	<p><b>①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을 모두 충족)</b></p> <p>가. 자체평가 및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나. 자체 재정평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다.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외부에서 지적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p> <p><b>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b></p> <p>가. ‘예’ 판단 기준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실적을 마련한 경우</p> <p><b>③ ‘아니요’ 판단 기준</b></p> <p>가. ‘예’ 판단 기준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개선 실적이 없는 경우</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p>								

참고 4

평가결과 보고서(예시)

#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4. .

0 0 0 교육청

## 목 차

I.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요약 .....	
II. 환류계획 .....	
별첨. 사업별 평가자료 .....	

**I**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요약

**가** 평가결과 총괄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개)			평가대상사업 '23년 예산 규모(백만원)				
	계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이상)	계	우수	보통	미흡 (5%이상)
평가기준	29	5	19	5	1,000,000	-	-	50,000 이상
평가결과		6 (20.7%)	20 (69.0%)	3 (10.3%)		0	185,000	658,000

**나** 사업별 평가결과

※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평가 사업명*	예산**(백만원)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23년	'24년			
〈합 계〉			1,000,000	1,800,000			
1	특별회계	○○○○○	4,500	28,200	80.0	우수	
2	특별회계	△△△△△	4,100	6,000	71.0	보통	
3	특별회계	○○○○○	59,000	60,100	62.5	보통	
4	특별회계	□□□□□	1,900	2,500	55.0	미흡	지출구조조정 △4.3
5	특별회계	◇◇◇◇◇	12,000	24,800	52.5	미흡	성과관리 개선계획
		:					
29	특별회계	○○○○○	137,400	123,700	12.5	미흡	지출구조조정 △5.1

\* 시도교육청 평가단위에 따라 세세부사업명 또는 세부사업명 기재

\*\*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내 일부 내역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액을 제외하고 작성

## II 환류계획

### 가 지출구조조정 총괄

#### < 지출구조조정 목표 >

※단위주의 (단위 : 천원)

평가대상 총금액(A)	지출구조조정 제외대상 금액(B) <sup>1)</sup>	지출구조조정 대상 금액(A-B)	지출구조조정 목표금액 <sup>2)</sup>
1,580,000,000	300,000,000	1,280,000,000	△12,800,000

※ '23년 예산 기준

- 1) 지출구조조정 제외 대상(B) : 의무지출 사업 및 '25년 완료 사업(2.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 현황표 참조)
- 2) 지출구조조정 목표 : 지출구조조정 대상 금액(A-B)의 1%

#### < 지출구조조정 계획 >

※단위주의 (단위 : 천원)

연번	예산	평가사업명	평가 결과	'24년 예산 (A)	'25년 요구계획 (B)	지출구조조정계획 <sup>1)</sup>	
						감액 (B-A)	예산 변동 내역(증액 및 감액)
〈지출구조조정사업 합계〉				27,300,000	14,850,000	△12,450,000	
1		□□□□□	미흡	1,000,000	1,000,000	0	
2		○○○○○	미흡	1,500,000	1,350,000	△150,000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200)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50)
3		◇◇◇◇◇	미흡	12,800,000	6,500,000	△6,300,000	·사업대상축소 및 보조비율 하향
4		△△△△△	미흡	12,000,000	6,000,000	△6,000,000	·사업규모축소

\* 지출구조조정계획은 평가기준인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1) 지출구조조정계획 : 지출구조조정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 예산삭감 계획('24년 대비 '25년 계획)

- 감액(B-A) : 예산 변동내역 상 순감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자연 감소예정 사업 중에서 집행률 부진 등을 감안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4년 예산과 '25년 요구계획의 차액이 아닌 지출구조조정 계획 금액으로 작성(예산변동 내역에 관련 내용 기재)

- 예산 변동 내역 : 순감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내 변동내역(증액, 감액)을 모두 작성하고 각각에 대해 금액 표기

**나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산	평가사업명	평가 결과	예산(천원)		비 고
				'23년	'24년	
〈합 계〉				300,000,000	300,000,000	
〈소계〉				200,000,000	200,000,000	
1	특별회계	△△△△△	보통	80,000,000	80,000,000	의무지출
2	특별회계	○○○○○	보통	35,000,000	35,000,000	'23년 종료
		:				

\* 지출구조조정 모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무지출 예산 및 '23년 완료사업)을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다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평가사업명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24년 예산(A')	구조조정 금액(B')	감액 비율 (B'/A')	비고 <sup>1)</sup>
1	□□□□□	2,500,000	150,000	6%	주요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이나, 경직성 경비(인건비) 삭감시 사업추진 곤란
2	◇◇◇◇◇	24,800,000	12,300,000	49.6%	
3	△△△△△	115,000,000	-	-	의무지출 및 '24년 종료 (성과관리개선계획)
	:				
〈계〉					

1) 비고 :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이거나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 감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사유 작성

## 라 사업별 지출구조조정안

담당자(작성자) : ○○○과 ○○○주무관 (전화번호 : 000-000-0000)

부서명	○○○	평가사업명	□□□□□	평가결과	미흡
지출구조조정 사유	<p>※ 작성요령 : 사업우선순위 조정, 외부지적, 연례적 예산미집행 등의 지출구조조정 사유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치 부적정) ○○○ 이용자만족도, ○○○ 건수 2개의 지표 모두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를 설정</li> <li>○ (집행률 부진 및 부적정 집행) ○○○ 사업은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집행률 제고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23년 64%로 부진하며, 00000 감사결과 위탁기관의 부적정 집행이 지적되어 조치된 사실이 있음</li> <li>○ (모니터링 실시 미흡)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 및 체계가 미흡</li> <li>○ 연례적 집행률 부진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li> </ul>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p>※ 작성요령 : 사업비 삭감 대상(세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에 대한 일괄 삭감 혹은 일부 내역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 삭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구조조정 대상) 본 세세부사업(또는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사업(○○○사업, △△△사업) 중 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정할 계획</li> <li>○ (지출구조조정 금액) ○○○ 조사의 25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24년 예산(15억) 대비 10%를 삭감한 13.5억으로 편성할 계획</li> </ul>				



## 마 성과관리 개선계획

### ※ 미흡등급 사업만 해당

사업수행부서 담당자(작성자) : ○○○부서 ○○과 ○○○주무관 (전화번호 : 000-000-0000)

부서명	○○○	평가 사업명	▽▽▽▽▽	평가결과	미흡
주요 미흡 사유	※ <b>평가항목별 성과부진 원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아래는 작성 예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률 부진) 제한적 지원요건 등에 따른 수요 부족, 신규사업으로 정책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 등의 신청 부진, 사전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로 집행 부진</li> <li>○ (성과목표 미달) 경제성장 둔화 및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지원금으로 인한 고용효과 제한적</li> <li>○ (사업 우수성 및 인지도 부족) 정책홍보 부족으로 인지도 미흡, 동일 목적 또는 유사사업 대비 외부기관(국회 등) 평가가 부정적</li> <li>○ (성과지표 및 목표치 부적절) 성과지표 포괄성 부족, 목표치 보수적 설정 등</li> <li>○ (사업내용 및 구조 타당성 미흡) 사업목적 감안시 지원대상 부적절, 사회환경 변화로 지원내용 타당성 부족 등</li> </ul>				
성과관리 개선계획 주요내용	※ <b>실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조 재설계) 수요요건 완화(참여경로 확대, 대상충족기준 완화 등)를 통해 집행률 제고 추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국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원내용 재설정</li> <li>○ (환경대응)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li> <li>○ (정책홍보) 대학가 직접홍보·SNS활용 등을 통해 정책홍보 강화</li> <li>○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재설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사업목적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재설정, 3개년 평균 실적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설정하고 성과계획서 반영</li> </ul>				
주요 추진일정	1분기	○ '00. 2 : 000 지침 개정			
	2분기	○ '00. 5. : 사업구조 재설계 방안 및 정책홍보 강화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3분기	○ '00. 8. : 현장조사 실시, 성과계획서 반영			
	4분기	○ '00. 11. : TF운영, 시스템 구축 등 :			
비고					





---

## 예산 편성 참고 자료

---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1. 예산 일반

### 1 예산의 개념

-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 2 예산의 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3 예산의 분류

### 1.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2조)

### 2.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지방자치법」 제142조)

### 3. 성립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 4.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 4

## 예산 편성 절차

## 교특 예산편성 기준 시달

[「지방재정법」 제38조]

- 교육부 → 교육청
- 예산 편성기준, 보통교부금 예정액, 국고보조 사업 및 지방채 발행 통지



## 예산 편성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방침 수립/시달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 사정 및 예산안 작성
  -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 반영
  - ※ 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회 심의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예산의 의견 수렴)
  -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법정전입금 협의)
  - ※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 예산 의결/확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9조]

- 의회 제출/의결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11월 11일까지)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12월 16일까지)
- 예산 확정 이송
  - 의결 후 3일 이내 이송(12월 19일까지)
- 교육부 예산 확정 보고 및 예산확정 고시

## 5 예산의 원칙

### 1. 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50조) 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하여 ①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②재무제표 ③채권 관리 현황 ④기금운용 현황 ⑤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지역통합 재정통계 ⑦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⑧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⑨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40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 3.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이 있음

###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 6.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 7.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9. 예산 용어해설

### 1 일반예산 용어

용 어	설 명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반회계 예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인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별회계 예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정예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무부담행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용 어	설 명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 세목, 원가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 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회계법」 제24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년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37조)

## 2 사업예산 용어

용 어	설 명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산구조	중장기 관점에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자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용 어	설 명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의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세목	통계 목적을 위하여 각 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원가통계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세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투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용 어	설 명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예 산 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